



ARTISTREE

I. 서 문

1. 연중 자산운용평잔 요약표	3
2. 기금의 개황 및 자산운용상 특이사항	4
3. 기금의 자산운용 총평	9

II. 자산운용평가

1. 자산운용정책 (계획)

① 자산운용 체계의 적정성	15
② 자금운용 계획의 적정성	39
③ 자산배분의 적정성	55

2. 자산운용관리 (집행)

① 자산운용 관리의 효율성	73
②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91
③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101

3. 자산운용실적 (성과)

① 단기자산 운용수익률과 적정유동성	113
② 중장기자산의 운용수익률	113
③ 위험자산의 성과지표	113
④ 운용기관 및 상품집중도	113
⑤ 수익률 개선노력도	113
⑥ 공공성 확보노력도	113

4. 조정

① 자산운용 개선노력과 성과	117
② 자산운용 비용절감 노력	117



ARTISTREE



I. 서문

1. 연중 자산운용평잔 요약표
2. 기금의 개황 및 자산운용상 특이사항
3. 기금의 자산운용 총평



ARTISTREE

1 연중 자산운용평잔 요약표 <표2>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연중 단기자산 운용평잔			연중 중장기자산 운용평잔(공자기금 위탁평잔 제외)(B)	연중 전체자산 운용평잔(A+B)
	현금성자금	유동성자금	총계(A)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액(C) (투자풀포함)	9,327	8,191	17,518	221,390	238,908
비중			W=7.33%	1-W=92.67%	100.0%
투자풀 위탁금액(D)	3,686	-	3,686	128,661	132,347
투자풀 위탁비중 (D/C)	39.52%	-	21.04%	58.12%	55.40%

주: 1. 지표별 가중치에서 W는 연중 단기자산 운용평잔 비중으로서 연중 단기자산 운용평잔을 연중 전체자산(단기자산 + 중장기자산) 운용평잔으로 나눈 값임. (A/(A+B))

단기자산이란 통상 1년 미만의 투자기한으로 운용되는 자산임(투자풀 포함). 중장기자산이란 기금자산 중 단기자산과 공자기금위탁자금을 제외한 기금의 여타 모든 자산(투자풀 및 수익률 산정이 가능한 수익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포함)을 총칭함.

2. ELS 등 연계 파생상품은 수익률이 실현된 시점에 상관없이 최초 계약시의 만기를 기간으로 산정함.
3. 운용평잔=상품별 운용금액×(만기별 운용일수/365일)
4. 투자풀 위탁금액은 단기자산(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과 중장기자산으로 나누어 평잔금액을 기재
5. 중장기자산 운용평잔에서는 공자기금의 위탁평잔은 제외함.

2 기금의 개황 및 자산운용상 특이사항


1 기금의 개황

기관개요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26-1)
이사회(위원회)	● 위원장(권영빈) ● 위원(상임 1명, 비상임 12명)
기관장	● 권영빈 (2012. 3 ~ 2015. 3)
설립일	● 1973년 3월 30일
설립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주요업무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보존,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교류 사업지원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조직현황	● 3본부 10부
정원현황	● 임원 2명 ● 사무처장 1명 ● 직원 91명 ● 합계 94명
기금총액	● 2,522억원(적립금 예치액 기준)

연혁

연도	주요내용
1972. 8. 14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법률 제2337호)
1973. 3. 30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법인설립
1973. 7. 11	●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개시
1973. 10. 11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2004. 1. 1	●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폐지 (근거: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2003.12월)
2005. 1. 27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공포(법률 제7364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2005. 6. 1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법률 제7415호)
2005. 7. 28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령 시행
2005. 8. 2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1기 위원회 출범)
2007. 4.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2008. 9. 19	● 2기 위원회 출범
2010. 11. 4	● 3기 위원회 출범
2012. 12. 5	● 4기 위원회 출범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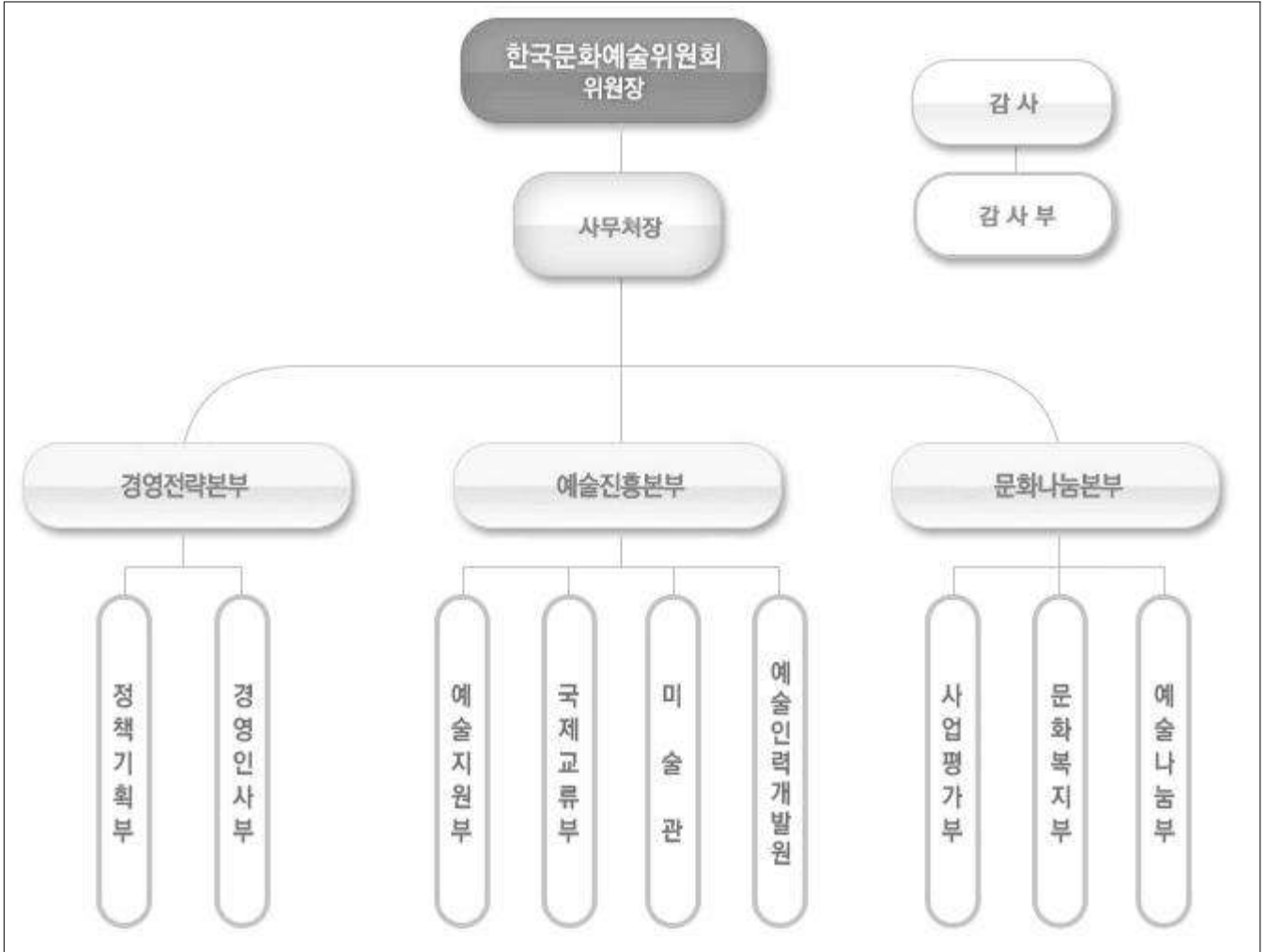
구 분	근거법규	내 용
설립목적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20조)
기금설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기금용도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동법 제18조)

 **주요기능**

임무	<p>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p> <p>(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2조)</p>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운영 <p>(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4조)</p>

구 분	주 요 내 용
<p>①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의 창작 표현 활동(공모) 지원 ● 예술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각 장르별 전용공간과 연습공간 확보 및 운영 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집단창작 프로젝트 지원 및 글로벌 콘텐츠 거래 지원 ● 신진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AYAF) 프로그램 시행 ● 예술단체(인)가 참여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국제교류활동(공모) 및 남북 및 재외 동포 문화예술교류활동(공모) 지원 ● 해외민간문화단체 교류 활성화 : IFACCA(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연합) 회원 기관 및 아시아, 유럽 권역 주요문화예술기관 교류
<p>② 문화예술 공간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주요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장 중에 하나인 아르코미술관의 전시장, 자료실 유지 및 자체 기획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및 재교육 기관인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교육 시설 유지 및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p>③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순회 방문을 통한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제공 ●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문학도서 보급,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 또는 전액 보조 등 ● 문화예술동호회 등 소외지역의 자생적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p>④ 지역 문화예술 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문화 진흥기금 배분 ● 지역문화예술 지원단체 연합인 지역문화협의체의 활동 지원
<p>⑤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홍보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예술현장 기초자료 축적 및 문화예술 인식 제고 ● 기초예술분야에 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 및 공유·전파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문화예술분야 나눔과 기부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가치 제고 및 민간영역으로부터의 기부금 유입 확대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 상임 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12명의 합의제 기구 ● 사무처 : 3본부 10부(부,관,원)
-----	--



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 상임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 12명 ● 사무처 : 정원 94명
-----	--

구 분	계	임 원	사무 처장	일반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94	2	1	91	2	5	9	22	25	17	11
현원	93	2	1	90	-	5	10	24	14	36	1

※ 2012.12.31 기준

② 자산운용상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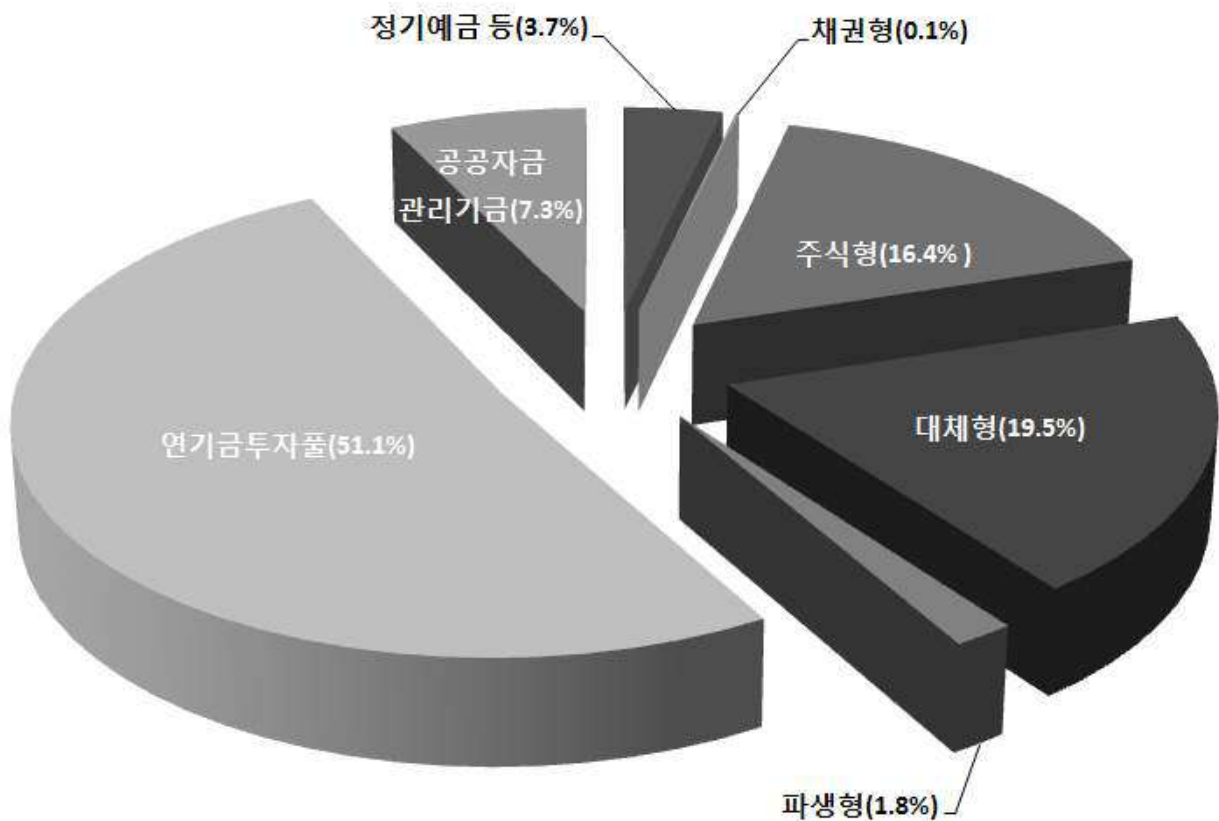
ARTISTREE 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도	2011년도	증감액	증감율(%)
총자산	252,247	263,072	△10,825	△4.11

※ 연말 예치액 기준

ARTISTREE 자산구성비



※ 2012년 말 예치액 기준

ARTISTREE 자산운용 특이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보존,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음. 본 기금의 2012년 말 총자산 규모는 2,722억원으로 주식형, 및 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 금액 중 성과평가 대상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제외한 2,522억원이 평가 대상 금융자산임. 금융자산 가운데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의 2012년도 연평균 운용잔액은 각각 93억원, 2,214억원이며, 2012년 중 중장기 자산의 대체투자형 2개상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96억원)

3 기금의 자산운용 총평

문예진흥기금의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1항에, ① 정부의 출연금 ②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 1항은 위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에 대해 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폭넓은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 방법 중 하나인 모금제도는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금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는데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기금 모금을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기금 모금이 폐지되었다.

2012년 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이후 2007년도까지, 모금 총액은 4,186억원이고, 공익자금, 국고출연금, 복권기금 등 전체 2조 1,046억원을 조성하여 1조 8,524억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였고, 총 2,522억원(2012년 12월 말 기준)을 적립하였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국고 출연금 1,847억원, 공익자금 1,673억원, 복권기금 3,680억원 등의 다양한 재원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하였다. 공익자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며, 복권기금 전입금은 2004년 1월 1일 모금폐지 이후, 2004.4.1부터 발효된 「복권및복권기금관리법」에 따라 복권기금(로또복권)의 수익금 중 일부가 문화예술 분야로 유입되어 2004년 폐지된 모금을 대체하는 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중장기적으로 문화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수준으로 적립금을 누적하여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증식기반 마련은 기금운용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2012년말 현재 문예진흥기금 적립액은 2,522억원이다. 적립 자원별로는 자체적립이 575억원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가 1,247억원으로 49.4%, 공익자금이 700억원으로 27.7%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적립 비중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모금수입, 이자수입 등 기금 자체수입이 매년 문화예술진흥 지원 사업비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재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총 적립금액의 22.8%이며 타 재원은 77.1%이다. 1996년까지는 자체 자원 적립보다 타 자원 적립 비율이 높았으나 1997년부터는 적립 재원의 대부분이 자체 적립금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 중단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2004년 이후에는 모금 폐지에 따른 부담금 수입의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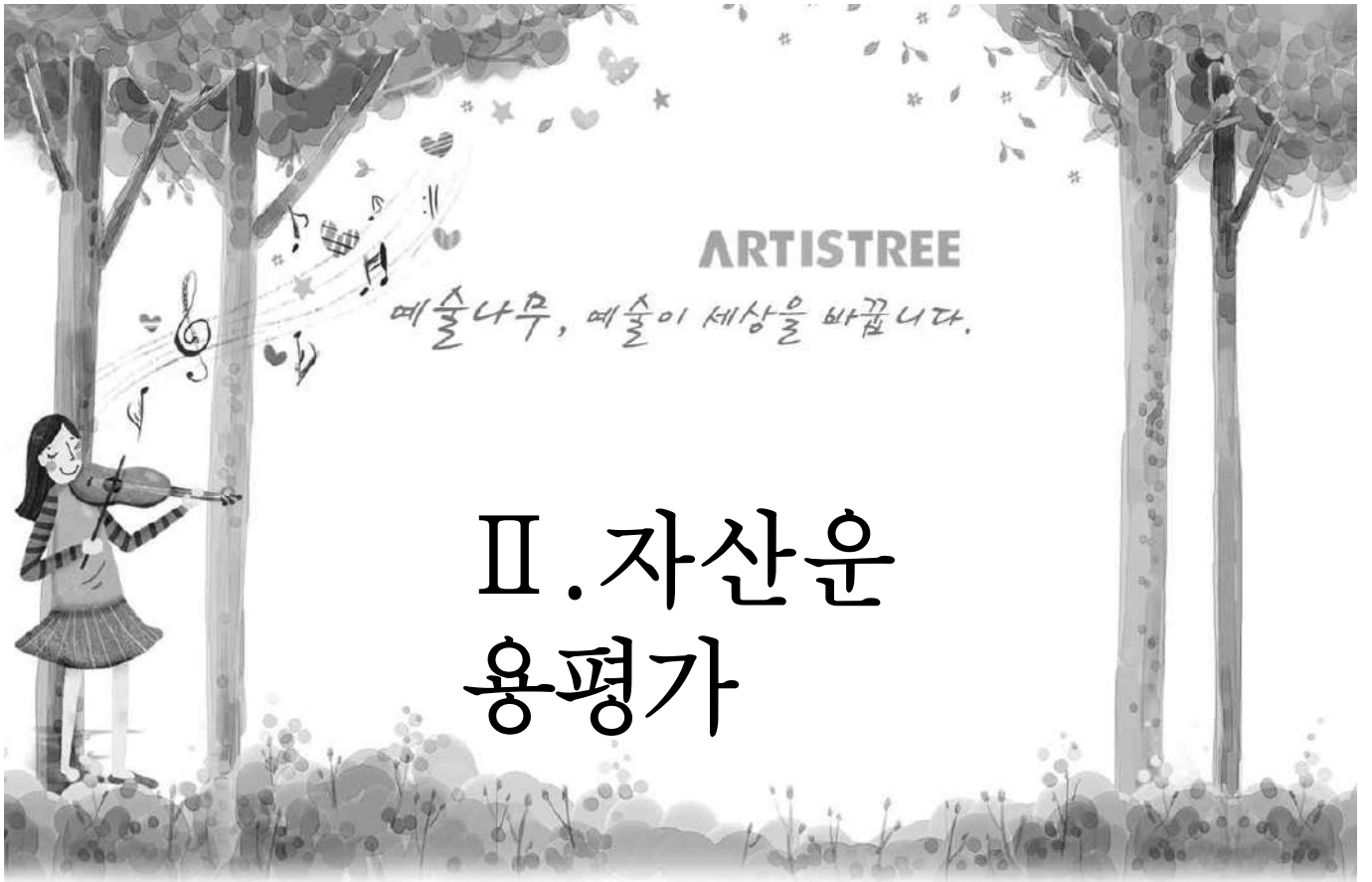
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4년도에 처음 전입된 복권기금 수익금 전입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연간 지출예산 1천억원을 돌파했는데, 이후 2005년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후에도 이러한 예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립금을 인출해서 사업비로 집행하면서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유일하게 부담금 징수가 없고 적립금이 가장 낮은 가운데 2009년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해 경륜경정수익금의 일부(24.5%)가 전입되면서 적립금 감소 추이는 완화되고 있으나 유일한 문화예술 공공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 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04년 이후 지속되는 적립금 사용에 따른 기금 재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출연금(기부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법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재원 유입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인 뉴서울골프장 매각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적립금 연평균 증가율은 9.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은 2012년 한해 기금운용의 방향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제고에 두었다. 그러나 적립금의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 및 배당수입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KOSPI가 2,000p의 위업을 달성했던 2007년 말 설정되었던 실적배당형 상품들은 2011년~2012년에서야 비로소 겨우 제자리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으로 구조화 되어 설계된 일부 대체상품들은 여전히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금 내·외부에서 인지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의 초석을 마련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부실자산을 건전자산으로 전환시키고, 향후 이러한 부실자산이 확대 재생산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외부 전문컨설팅을 통해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체제 개선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부실자산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진행되었던 전문로펌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추진,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연기금투자펀드의 예치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연기금 운영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전년 대비 39.39%p 증가) 전문인력의 추가채용을 통하여 인적 인프라의 취약점도 보완하였다.

2013년에도 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건전한 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금의 건전한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적자금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1. 자산운용정책 (계획)
2. 자산운용관리 (집행)
3. 자산운용실적 (성과)



ARTISTREE

지표명

1. 자산운용정책(계획)

가중치 : 25점

 세부평가내용

평가내용 1. 자산운용체계의 적정성

- 자산운용관련 의사결정체계의 구축
- 자산운용관련 업무의 분리와 견제
- 외부위탁운용체계의 적정성

평가내용 2.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

- 적정유동성 규모 및 자산배분 추정
- 현금성 자금의 최소화 노력
-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의 적정성

평가내용 3. 자산배분의 적정성

- 자산운용상품 선정의 적정성
- 중장기자산 자산배분의 합리성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운용자산 선정의 적정성



ARTISTREE

1

자산운용체계의 적정성

운용시스템 및 위험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여유자금 운용의 관리효율성 극대화

- 연기금 투자폴 예치비중 확대로 자산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 전년도 예치비중 대비 39.4%p 증가, 목표비중 대비 5.4%p 증가
- 전사리스크 관리(ERM) 구축계획 수립 및 매뉴얼 배포
 - ↳ 리스크의 인식평가, 핵심 리스크 선정 및 매뉴얼 작성을 통해 효율적 리스크 대응체계 수립
 - ↳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한 리스크 관리체계 및 위기대응 프로세스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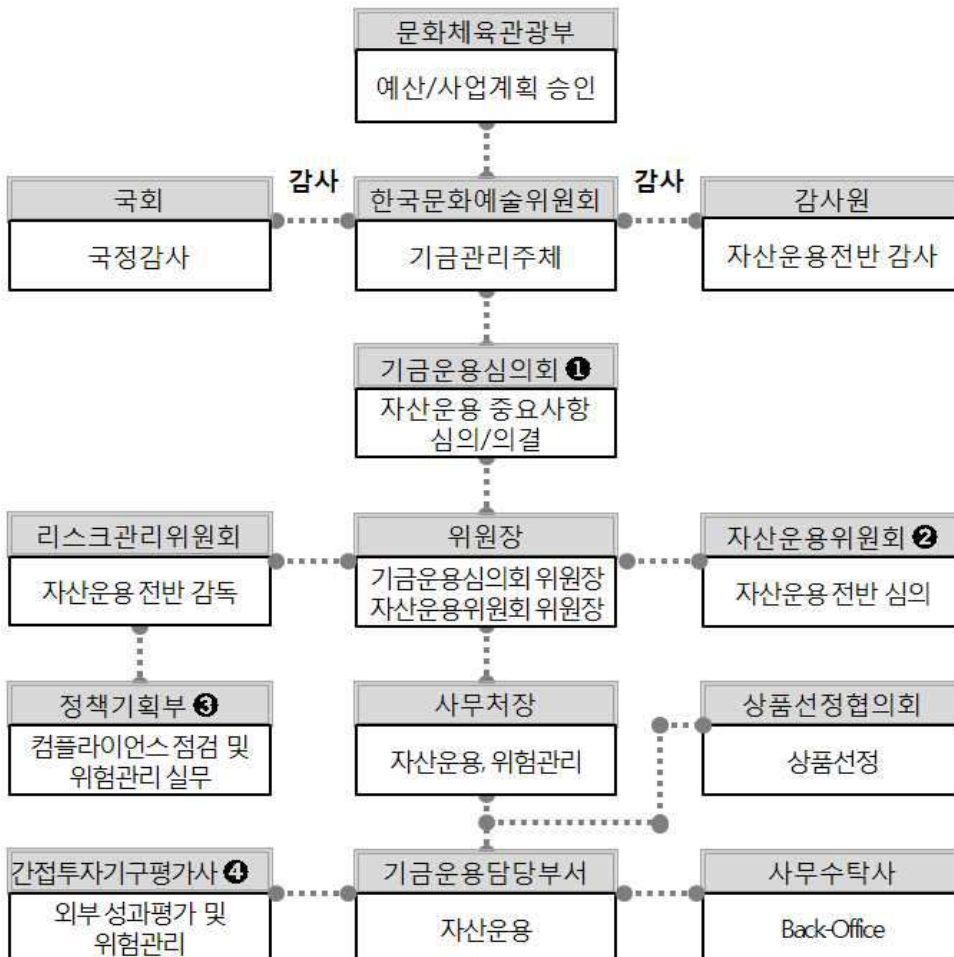
1 ① 자산운용관련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1-①-1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전담조직 등의 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 및 보고체계에 관한 규정

■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 자산운용 조직도



1 기금운용심의회

국가재정법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위원회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전전 회계연도 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책기획부

2012년 전사리스크 관리계획에 따라 자산운용의 전반적 리스크관리는 정책기획부가 독립적으로 역할 수행

4 간접투자기구평가사

-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 전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간접투자기구 평가사
 - KBP펀드평가

[1] 자산운용정책 (계획)

1 자산운용 제규정



2 2012년 전략적자산배분(안)

구분	비중(%)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6.28
	유동성자금 10.63
단기자금 계 16.91	
중자기 자금	주식형 6.75
	채권형 67.29
	대체형 9.05
중장기자금 계 83.09	
전체 100.00	

3 Daily Check 시스템



4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기본체계

구분	내용	비고
자산운용관련 제규정	자산운용지침(IPS), 자산운용 제규정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등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연간투자규모, 자산군별, 상품별 투자규모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월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월간 수입/지출 규모, 자산군별/상품별 투자규모	운용실무협의회의 자문
자산운용	전략적(전술적)자산배분에 근거하여 운용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시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성과평가	일간/월간/연간 성과평가	외부 성과평가기관에 의뢰

● 자산운용 투자의사결정 흐름도

구분	업무	주요내용
Front-Office	자금운용계획 수립 (연간, 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수지 내역 파악 경제동향 자료 분석 전체 금융자산 투자방향 및 배분 ※ 자산운용위원회(분기별), 운용실무협의회의(월별) 자문 주식, 채권 등 유형별 세부 투자방향 설정
	세부 투자방향 논의 (일별, 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자산배분②에 근거하여 세부 투자방향 수립 및 논의(전술적 자산배분)
	금융자산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대상상품 선정(상품선정협의회의) 및 운용 ※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시 외부투자자문위원회 심의
Back-Office	자금집행	자금집행 및 전산등록 의뢰
Middle-Office	운용결과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 운용결과 보고③ 운용상 특이사항 보고 및 점검
	규정준수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준수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④ - 신용등급, 종목보유한도 등 - 손실한도 위반여부(손절매 등)
	성과분석 보고 (월, 반기,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유형별, 상품별 운용성과 보고 - BM대비, 동일유형 대비 성과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자산별 투자자산별 리스크점검 - 월별 VaR 측정 및 관리 - 위험지표 산출 및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

■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책임과 권한

● 기금운용심의회

구분	세부내용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74조① (기금운용심의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②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③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반에 대해 위원회와 분리되어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가짐 										
심의/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IPS)의 제정 및 개정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구성 <table border="1" data-bbox="308 882 1082 130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구성인원</td> <td>■ 위원장(기금관리주체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td> </tr> <tr> <td>구성방법</td> <td>■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④</td> </tr> <tr> <td>임기</td> <td>■ 2년 (당연직은 당해직 재직기간)</td> </tr> <tr> <td>위원자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인사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구성인원	■ 위원장(기금관리주체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구성방법	■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④	임기	■ 2년 (당연직은 당해직 재직기간)	위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인사
	구분	세부내용									
	구성인원	■ 위원장(기금관리주체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구성방법	■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④									
	임기	■ 2년 (당연직은 당해직 재직기간)									
위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인사 										
구성인원	■ 위원장(기금관리주체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구성방법	■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④										
임기	■ 2년 (당연직은 당해직 재직기간)										
위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인사 										

참고 2012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⑤

소속	직위	성명	임명(위촉)권자	비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국가재정법	당연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영산	위원장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김종규	위원장	위촉직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신일수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대표	강훈	위원장	
한미회계법인	대표	김성규	위원장	

① 국가재정법 제74조

국가재정법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산운용지침 제8조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① 기금운용심의회
 1.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서 기금전반에 대해 위원회와 분리되어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2. 심의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재정법 제74조

국가재정법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회



[1] 자산운용정책 (계획)

① 국가재정법 제76조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전전 회계연도 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산운용지침 제8조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②자산운용위원회
 1. 기금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에 관한 전반사항들을 심의한다.

④ 자산운용위원회



● 자산운용위원회

구분	세부내용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①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②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③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과 관련한 사전 심의 ■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위원 구성	<p>■ 위원구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구성인원</td> <td>■ 위원장(기금관리주체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td> </tr> <tr> <td>구성방법</td> <td>■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td> </tr> <tr> <td>임기</td> <td>■ 2년 (당연직은 당해직 재직기간)</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구성인원	■ 위원장(기금관리주체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구성방법	■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임기	■ 2년 (당연직은 당해직 재직기간)
	구분	세부내용							
	구성인원	■ 위원장(기금관리주체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구성방법	■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임기	■ 2년 (당연직은 당해직 재직기간)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참고 2012년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명단④

소속	직위	성명	임명(위촉)권자	비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국가재정법	당연직
미래에셋 투자전략연구소	소장	김경록	위원장	위촉직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재조	위원장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형원	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극렬	위원장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이태호	위원장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허희영	위원장	



● 운용실무협의회

구분	세부내용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① - ⑥ 운용실무협의회①
설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시장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기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분석 ■ 월별 예치상품에 대한 방향 결정 ■ 타 기관 자금흐름 동향 파악
개최주기 및 위원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중순(월 1회) ■ 임기 : 1년
위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사, 운용사, 펀드평가사 각 1인 및 기금운용담당 직원

① 자산운용지침 제8조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⑥ 운용실무협의회
 운용실무협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시장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사, 운용사, 평가사 각 1인 및 기금운용 담당인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참고 2012년 운용실무협의회 위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 부장	김재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역	정구빈
산은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최준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영업본부 팀장	김우식
(주)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신인식

● 상품선정협의회

구분	세부내용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 ⑦ 상품선정협의회②
설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장상황 및 이슈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상품을 선정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제안서 심사 최종의결 ■ 2차 구술심사 및 상품 최종선정
개최주기 및 위원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만기자금 도래 상품 재투자시 ■ 임기 : 1년
위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기금운용담당 부장 및 기금운용 경험이 있는 내부위원 1인

② 자산운용지침 제8조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⑦ 상품선정협의회
 1. 시장상황 및 이슈, 내부 자금 상황 등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상품을 선정하는 기구로서, 기금의 내부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2. 위험이 내재된 투자상품의 투자 의사결정시 상품선정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상품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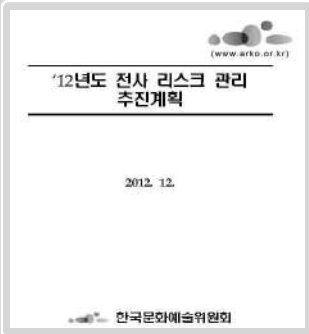
참고 2012년 상품선정협의회 위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 본부장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부 부장	양경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 부장	김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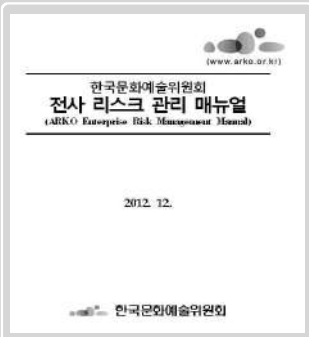
1-①-2

위험관리 관련 위원회, 위험관리 전담조직 등의 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 및 보고체계에 관한 규정

1 전사리스크 관리 구축계획



2 리스크관리 매뉴얼



3 리스크분야 및 유형분류



2 전사리스크 관리(ERM) 구축계획 수립 및 매뉴얼 배포('12.12월)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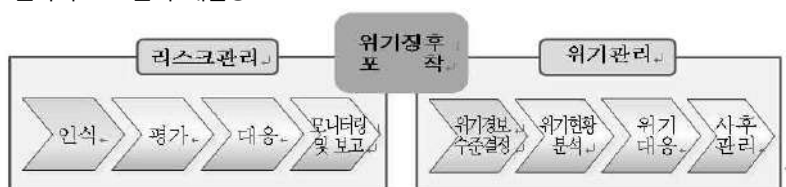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	------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의 인식평가, 핵심 리스크 선정 및 매뉴얼 작성을 통해 효율적 리스크 대응체계 수립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대응체계 수립을 통해 리스크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한 리스크 관리체계 및 위기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11년도 최초 도입한 ERM 시스템 안착
------	---

'12년도 중점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R&R 정립을 위해 전사 리스크를 경영, 사업, 기금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소위원회 운영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도 운영해오던 '리스크관리위원회' 를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리스크 관리체계 간소화 전사 리스크 관리와 감사 차원의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을 연계하여 리스크 관리 및 내부감사 업무의 실효성 극대화
---------------	--

리스크 분야 및 유형 분류	리스크 분야 및 유형 분류③		
	유형	세분류	세부내용
정책 리스크	전략	재무	■ 의사결정의 오류로 인해 적절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경영환경	■ 거시환경, 정부정책 등의 변화로 조직의 경영성과, 및 영속성이 위협받을 상황
	인력	■ 업무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중대한 피해 등이 발생할 상황	
운영 리스크	정보기술	■ 직원들의 부주의/고의로 중대한 피해, 오류, 부정, 비효율이 발생할 상황	
	자연재해	■ 전산시스템 오류, 내부정보망 파괴, 전산바이러스 감염, 정보 유출 등	
재난 리스크	인위재난	■ 풍수해, 지진, 기타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기관 운영 마비	
	인위재난	■ 화재, 폭발, 정전, 테러, 기타 인위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기관 운영 마비	
소통 리스크	쟁점화	■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부정적 여론과 평판이 형성되는 상황	
	위기화	■ 이미지/신뢰 실추, 조직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	

4 전사리스크 관리 개념



구분	세부내용
----	------

■ 전사리스크 관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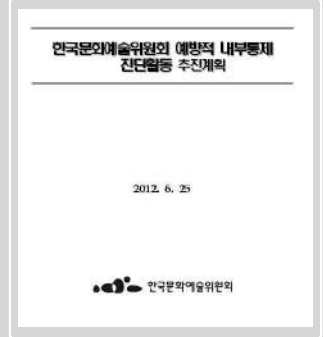
- 각 소위원회는 선임부서(볼드체)가 간사 역할 수행
- 감사부의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은 기획재정부 관련유형 분류 원칙에 근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 추진 계획' ('12.6.25)에 의거 추진①,②

■ 조직별 역할 분담

구분	구성	역할
CRO (Chief Risk Officer) 전사리스크 관리위원회 (ARKO Risk Management Committee)	사무처장 위원장 및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책본부 및 총괄조직 관장 ■ 전사리스크관리업무 총괄, 조정 및 보고
경영리스크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 : 경영인사부장(간사), 정책기획부장, 아르코 미술관장, 인력개발원장 ■ 역할 : 경영관련 위기 관리 및 위기발생 시 대응책 수립 및 집행
사업리스크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예술진흥본부장 ■ 위원 : 예술지원부장(간사), 국제교류부장, 아르코 미술관장, 인력개발원장, 사업평가부장, 문화복지부장, 예술나눔부장 ■ 역할 : 사업관련 위기 관리 및 위기발생 시 대응책 수립 및 집행
기금리스크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사무처장 ■ 위원 : 외부 위원(위촉), 정책기획부장(간사) ■ 역할 :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 수행③
총괄부서	정책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리스크관리업무 기획, 조정 및 총괄 ■ 전사리스크관리업무 관련 경영진 및 위원회 보좌 ■ 리스크관리체계 운영 및 활동실태 정기 평가 ■ 평가 결과 개선보완대책 수립 및 경영진 제시

관리체계

1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



2 기획재정부 유형분류

방만경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예산낭비 ■ 임직원 집단이기주의 ■ 도덕적 해이 ■ 허술한 통제
경영지침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혁신 ■ 통합공시 ■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 인사운영지침 ■ 기관장·감사 보수체계 ■ 대졸초임 조정권고 ■ 임원 직무정렬 계약지침 ■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실태)

3 자산운용지침 제8조

③ 리스크관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개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장리스크 관련 허용위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검토
- 그 밖에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감사자문위원회

- 운영목적
 - 감사 운영·전략 목표 방향 설정에 따른 다양한 자문을 통한 감사업무 선진화 추구
 - 현행 업무 위험(risk) 파악 및 향후 과제 도출을 통한 선도적 감사업무 수행
 - 부동산PF 등 부실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문

■ '12년도 위원회 위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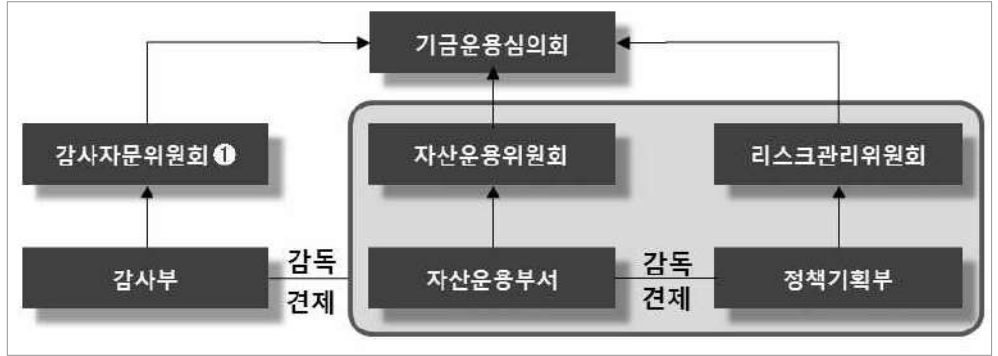
성명	현직
김흥률	-감사교육원 교수 -시스템감사, 내부통제와 감사, 평가 감사자문
추부금	-안전회계법인 이사(CIA) -내부감사 품질평가
장영민	-신용보증기금 리스크 관리팀 전문위원 -부동산PF 등 부실자산 관리자문
전승광	-한국수자원공사 감사팀장 -상임감사 직무평가 및 부패방지 평가자문

② 신종증권 등

- 금리, 신용, 주가(지수를 포함한다)상품 및 통화 등의 준거 자산 가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되는 국내 및 해외의 증권과 예금(연계신종증권)
- 파생상품이 내재된 국내 및 해외의 증권과 예금(구조화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 대상

■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 보고체계 및 조직별 기능

-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위험관리 독립성 확보 및 자산운용의 건전한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독립·운영 중이던 감사부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정책기획부로 이관하여 독립성 강화
 - 감사부는 자산운용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총괄적으로 감독
- 위험관리 보고체계



- 위험의 사전적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리스크관리매뉴얼 마련
 - 전사리스크 관리(ERM) 구축계획('12.12월)에 따라 리스크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산운용 부서에 대한 위험관리 부서의 감독과 견제기능 강화
 - 자산운용부서 VS 위험관리 부서(리스크관리매뉴얼)

항목	점검 및 보고사항	
	자산운용부서	위험관리 부서
제6조의2 (신종증권 등②의 투자에 대한 사전 위험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해당 상품의 수익 및 Payoff 구조, 제반 위험 사항 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증권 등의 내재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되, 위험노출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조언을 활용
제7조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의 부도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 유가증권 또는 자산의 신용상태 등 위험요인 분석 및 부실징후시 처리방안 -위탁운용 자산의 부실채권 보유내역 및 처리방안 -그 밖에 신용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 심의 ■ 신용위험 관리 대상의 자산에 대해 매월 신용등급별 또는 신용등급 변화추이, 부도율 및 예상손실 금액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매 익월에 위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기금운용 담당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 ■ 신용등급과 만기의 편중으로 인한 집중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 담당부서장에게 집중도 위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항목	점검 및 보고사항	
	자산운용부서	위험관리 부서
제8조 (시장위험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가, 이자율, 환율의 변동에 의한 자산의 평가손익 점검 -주가, 이자율, 환율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시장 전망 -그 밖에 시장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능성이 높음을 업무수행 중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운용담당 부서장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위험한도 설정기준, 측정방법, 관리 절차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수시로 위험한도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 각종 위험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기준수익률 대비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괴리도 매월 점검
제8조의 2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운용계획에서 제시한 허용위험범위에 따라 자금운용에 관한 총 허용위험한도를 검토하고, 이를 자산군별로 배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자금운용환경이나 전략의 변경, 자산운용성과, 위험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검토
제8조의 3 (사후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R 모델의 정확도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사후검증 실시 사후검증 결과 전일의 1일 VaR가 가상(또는 실제)의 순손실을 상당 횟수 초과 하는 경우 VaR 모델의 전제조건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운용담당부서에 요청
제10조 (자금운용분석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및 월별 자금운용 상황을 분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중인 자금의 안전성을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운용담당 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제12조 (위험발생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위험관리 담당부서장의 요구시 운용상황과 관련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상의 규정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 운용담당 부서의 투자내역을 통보 받아 투자에 따른 자금운용계획 범위내 운용, 종목별 투자한도 등 제반 투자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평가
제15조의2 (대체투자자산 위험관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투자는 투자에 관한 사항 등 자산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험관리 담당부서에 사전에 통보하고 이에 대해 협의 자산운용위원회의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투자 건에 한하여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포함한 심의안건을 자산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자금이 집행되어 관리중인 자산에 대해 상시 위험요인을 점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담당 부서가 통보한 투자사항 등에 대해 위험 관련 사항 등을 평가하여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운용담당 부서에 통보 기 투자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성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용담당 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1 자산운용현황 월별 모니터링



2 VaR 관리시스템

종류	종목코드	종목명	종류명	종류부	종류상	VaR	비율
국채	KF001000000	한국수입신용보증증권	국채	0.90	41.70	30	0.00076
채권	KF001000000	한국수입신용보증증권	채권	0.00	0.70	1	0.00013
공채	KF001000000	한국수입신용보증증권	공채	0.00	0.70	1	0.00007
주식	KF001000000	한국수입신용보증증권	주식	0.00	0.00	0	0.00000
외국채	KF001000000	한국수입신용보증증권	외국채	0.00	0.00	0	0.00000
외국주	KF001000000	한국수입신용보증증권	외국주	0.00	0.00	0	0.00000
합계				0.90	42.40	31	0.00086

3 컴플라이언스 검사시스템



4 자산운용지침 제8조

3 리스크관리위원회
 1. 기금은 자산운용상 발생가능한 리스크의 관리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감독 및 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운용에 환류토록 한다.
 2.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정책기획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전사위험관리의 총괄책임자(CRO)인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3.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 조직 역할 및 기능

항목	역할 및 기능	기능적 역할 강화 내용
자산운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IPS 제정 및 개정 자산운용 전략 수립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사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투자상품 선정시 사전심의 -사전적 리스크관리 역할 시장상황에 따른 전술적자산배분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배분 비율 조정 주관부서 : 예술나눔부
리스크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심의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허용위험한도 심의 적립금운용의 성과평가 심의 연간기금운용계획의 이행점검 적립금운용상의 위법 및 위규여부에 대한 시정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자산운용현황 월별점검① -운용계획 이행점검 -시장흐름에 따른 월별 허용위험한도 조정 점검 반기별 성과점검을 통한 정책제언 주관부서 : 정책기획부
정책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배당상품 월간 점검 월별 허용위험한도 초과여부 점검②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한 시정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배당상품의 월별 성과모니터링 실시 - 운용부서의 월간보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용상품에 대한 실시간 점검③

■ 위험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구분	세부내용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제5조 (리스크관리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①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상 주요사항에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전반을 총괄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장리스크 관련 허용위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검토 그 밖에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회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위원 구성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은 사무처장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 -당해 금융기관의 현 임·직원 또는 공무원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임기 : 2년

참고 2012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진	당연직
위원	KBP펀드평가	대표이사	신동승	위촉직
위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윤남	
위원	법무법인 지안	변호사	이상훈	
위원	서울대 발전기금	발전본부장	이석원	



1-1-3

성과평가 수행 전담인력 또는 조직 등의 구성, 권한 및 책임, 업무분장체계 및 보고체계에 관한 규정

■ 성과평가 전담조직의 전문성

● 성과평가 전담조직

- 자산운용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성과평가 기관에 성과평가 업무 위탁(자산운용지침 제25조(성과평가 원칙)①,②)
- 위탁기관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주) KBP펀드평가

● 성과평가 수행체계

구분	세부내용
성과평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 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고려하여 평가 ■ 외부 시장위험 요인 고려 ■ 정량평가 외에 정성적 요인도 고려하여 운용체계 개선에 활용
성과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및 반기, 연간 단위로 평가 실시 ■ 최근 3년의 실적을 반영한 장기평가 병행 ■ 연간평가는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내외에 공시③ - http://www.arko.or.kr (경영공시/예산, 재무, 기금현황/자산운용현황)
성과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산출방법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원칙으로 함 -시가수익률은 현금흐름에 대하여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도 평가 ■ 기준수익률 설정 -자산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준수익률의 설정원칙인 대표성, 적정성, 측정성을 고려하여 설정④ -기금전체의 기준수익률은 [외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투자자산별 투자 비중]으로 측정

● 성과평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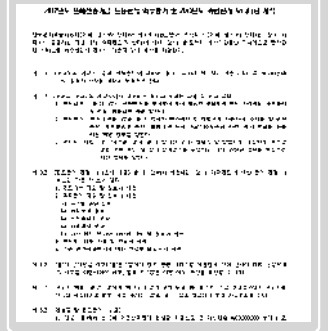
구분	관리대상	권한 및 책임
운용담당부서 (예술키움부)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실현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 ■ 연간운용수익률 산출 및 검증기관 데이터 제공
외부평가기관 (KBP펀드평가)	운용성과 산출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용수익률 산출 및 평가
위험관리 담당부서 (정책기획부)	리스크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 성과평가 심의 ■ 평가결과 보고 및 개선사항 권고
운용담당부서 (예술키움부)	자산운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 결과심의 및 개선사항 검토 ■ 차기운용 환류

1 자산운용지침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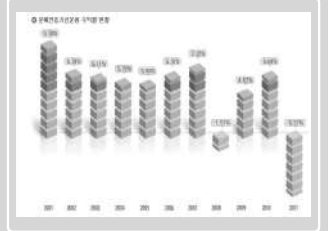
제25조(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 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성과평가 업무위탁 계약서



3 성과평가 결과 공시



4 기준수익률 설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대표성	투자자산별 시장대표 수익률 선정 및 운용전략, 투자상품 등을 반영
적정성	운용전략, 투자상품 등을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설정
측정성	객관성 확보 및 기준수익률로서의 명확한 비교기준 제시

1 ② 자산운용관련 업무의 분리와 견제

1 위원구성 개선내용('11년)

소속	직위	비고
내부	사무처장	당연직
내부	감사부장	당연직
내부	경영인사부장	당연직
외부	5인	위촉직

소속	직위	비고
내부	사무처장	당연직
내부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내부	정책기획부장	당연직
외부	5인	위촉직

2 2011년 자체종합 감사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11. 10.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부

3 위원구성 개선내용('12년)

소속	직위	비고
내부	사무처장	당연직
내부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내부	정책기획부장	당연직
외부	5인	위촉직

소속	직위	비고
내부	사무처장	당연직
외부	4인	위촉직

4 사무처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조 (경영전략본부)
③정책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2.24>
18.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및 기관 리스크관리 총괄 <신설 2011.10.25>

1-2-1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담당부서나 인력의 분리여부 및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담당부서의 독립적 분리

●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

연도	현황 및 문제제기	개선사항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 담당부서에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를 모두 담당 운용과 감독기능의 상호 견제 미작동으로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부를 리스크전담 부서로 독립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개선</th> </tr> </thead> <tbody> <tr> <td>위원장</td> <td>사무처장</td> <td>상임감사</td> </tr> <tr> <td>운영주체</td> <td>운용담당부서</td> <td>감사부</td> </tr> <tr> <td>위원구성 ①</td> <td>내외부 인사로 구성</td> <td>내외부 인사로 구성</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개선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감사	운영주체	운용담당부서	감사부	위원구성 ①	내외부 인사로 구성	내외부 인사로 구성
구분	기존	개선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감사												
운영주체	운용담당부서	감사부												
위원구성 ①	내외부 인사로 구성	내외부 인사로 구성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 감사와 리스크관리는 엄연히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 기능을 운용부서에서 분리하되 감사부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관장할 것을 권고 2010년 내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② - 자산운용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라는 상시 업무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할 감사의 기능과 맞지 않는 문제점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관리 업무를 정책기획부로 이관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개선</th> </tr> </thead> <tbody> <tr> <td>위원장</td> <td>상임감사</td> <td>사무처장</td> </tr> <tr> <td>운영주체</td> <td>감사부</td> <td>정책기획부</td> </tr> <tr> <td>위원구성 ③</td> <td>내외부 인사로 구성</td> <td>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하고 외부인 사만으로 구성</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개선	위원장	상임감사	사무처장	운영주체	감사부	정책기획부	위원구성 ③	내외부 인사로 구성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하고 외부인 사만으로 구성
구분	기존	개선												
위원장	상임감사	사무처장												
운영주체	감사부	정책기획부												
위원구성 ③	내외부 인사로 구성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하고 외부인 사만으로 구성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사리스크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별 소위원회 운영에 따라 역할의 중복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도 운영해오던 '리스크관리위원회' 를 전사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리스크 관리체계 간소화
-------	--	---

●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업무분장 현황 ④

항목	자산운용부서(예술나눔부)	위험관리부서(정책기획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계획 수립 운용대상기관 평가 및 선정 운용대상상품 평가 및 선정 자금요구에 대한 자금배분 실적배당상품의 운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배당상품의 월간 점검 허용위험한도의 초과여부 점검 금융기관 및 상품의 사후관리 자금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등 정기 점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처장



1-2-2

자산운용과 성과평가 담당부서나 인력의 분리여부 및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성과평가 전담조직의 전문성

● 성과평가 전담조직

-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운용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성과평가 기관에 업무 위탁

● 성과평가 원칙 및 수행체계

구분	세부내용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자산운용의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25조 (성과평가 원칙)②, 제27조 (성과평가 기준) -성과평가의 외부전문기관 수행 -BM대비 초과수익률 및 위험대비 성과 등 						
성과평가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P펀드평가(주) 						
성과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산출방법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원칙으로 함 -시가수익률은 현금흐름에 대하여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도 평가 ■ 기준수익률 설정 -자산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준수익률의 설정원칙인 대표성, 적정성, 측정성을 고려하여 설정 -기금전체의 기준수익률은 [Σ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투자자산별 투자 비중]으로 측정 						
성과평가 수행절차	<table border="1"> <tr> <td> 성과평가 기초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년도 자금수지 계획 ■ 기금운용 현황 ■ 상품 유형별 BM설정현황 </td> <td> 기초통계량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산출 ■ 유형별 운용명잔 산출 ■ 위험지표/위험조정지표 산출 </td> <td> BM대비 상대통계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대비 수익률 산출 ■ 상대위험지표/상대위험조정지표 산출 </td> </tr> <tr> <td>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확정 및 대내외 공시 ■ 정책제언을 토대로 차기 운용계획 반영 </td> <td>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검증 및 원인분석 ■ 차기운용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td> <td> 기금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익률 현황 및 성과평가(반기,연간) ■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td> </tr> </table>	성과평가 기초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년도 자금수지 계획 ■ 기금운용 현황 ■ 상품 유형별 BM설정현황 	기초통계량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산출 ■ 유형별 운용명잔 산출 ■ 위험지표/위험조정지표 산출 	BM대비 상대통계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대비 수익률 산출 ■ 상대위험지표/상대위험조정지표 산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확정 및 대내외 공시 ■ 정책제언을 토대로 차기 운용계획 반영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검증 및 원인분석 ■ 차기운용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기금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익률 현황 및 성과평가(반기,연간) ■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성과평가 기초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년도 자금수지 계획 ■ 기금운용 현황 ■ 상품 유형별 BM설정현황 	기초통계량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산출 ■ 유형별 운용명잔 산출 ■ 위험지표/위험조정지표 산출 	BM대비 상대통계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대비 수익률 산출 ■ 상대위험지표/상대위험조정지표 산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확정 및 대내외 공시 ■ 정책제언을 토대로 차기 운용계획 반영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검증 및 원인분석 ■ 차기운용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기금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익률 현황 및 성과평가(반기,연간) ■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① 국가재정법 제77조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 ②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지침 제25조

제25조 (성과평가 원칙)

- ① **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이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고려하여 평가한다.

참고 운용성과 보고서의 제공범위

구분	세부내용
기초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개요(펀드유형, 운용사, 매니저), 펀드의 투자운용대상, 투자전략 등 약관주요정보, 펀드의 각종 보수율, 설정액 현황 및 추이
수익률 관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누적수익률,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률, 동일유형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업계평균, 최대/최소 수익률, 기준가 추이, 유형내 순위
위험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통계량(표준편차, 베타, R2, 샤프지수, 쟈센지수, 트레이너지수)
컴플라이언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별 편입비 한도체크, 등급별 한도 체크, 잔존만기 한도 체크

1 ③ 외부 위탁운용 체계의 적정성

1 내/외부 운용정책

자산운용지침 제2조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① 기금은 내부 전문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직접투자)과 외부 전문운용사 및 기획재정부 주관의 연기금 투자자를 통한 외부 운용(위탁투자)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내부운용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외부운용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③-1

외부운용정책[위탁금액 배분기준, 외부위탁 투자기관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 등 관리체계 포함] 관련자료

1 외부위탁운용 정책 ①

1 내/외부 위탁운용 개요

구분	세부내용
위탁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금리 기조 하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기금의 지속적 감소 등 불리한 기금여건이 지속되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요구 투자대상의 다양화,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상품의 내재위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요구 주식, 대체투자 등의 경우 내부운용시 전산시스템 및 전문인력 확충 등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
목적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외부전문운용기관에 의한 체계적 위험관리 효과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여건에 맞는 투자상품 유형별 적정 가이드라인 설정② 위탁운용사에 대한 관리 철저 적정 가이드라인 하에서 위탁운용사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구분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사항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고수익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금성격에 부합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성/장기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및 신성장동력 펀드 등으로의 투자 시행
내부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 채용 및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 역량 및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규모 대비 인적/물적 인프라 취약으로 리서치, 투자 전략부분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인력 및 선진화된 자산운용시스템 활용 → 연기금투자자 예치비중 적극적 확대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부서 및 위험관리 부서의 상호 견제를 위하여 담당부서 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보직에 따른 내부직원의 위험관리 경험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펀드평가사, 수탁사 및 운용기관의 시스템 적극 활용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투자 자금액에 따른 수수료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운용에 비해 변동비성 비용 발생 유형별 상이한 보수 체계로 인한 보수 산정의 기준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정보습득 등 외부위탁효과에 대한 정보비용으로 간주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규모의 경제효과) 연기금투자자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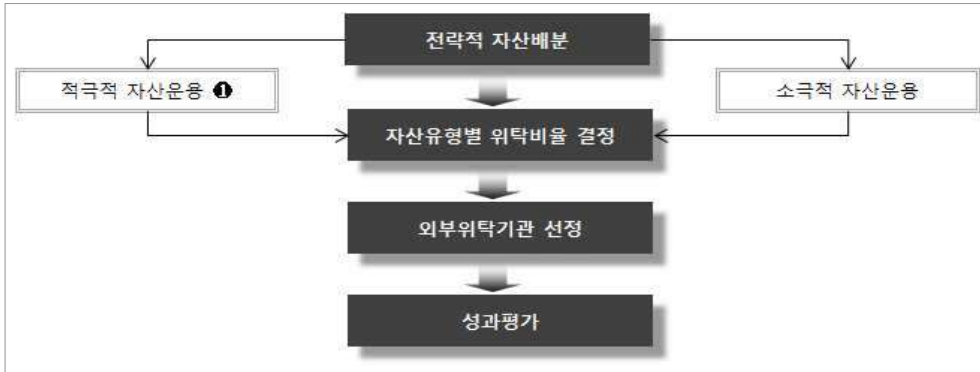
내/외부 선택시 고려요소



외부위탁운용 프로세스

- 운용자금의 성공적인 외부위탁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 자산배분전략을 명확히 구성하고, 자산집단별로 전문성이 높은 운용기관 선정
- 운용기관들은 주어진 자기에 대하여 기금의 자산배분전략 차원에 BM을 초과하기 위한 증권선택(Security Selection)활동만을 수행
 -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예측, 운용자산의 안정성, 기금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 등은 모두 기금차원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사항

[외부 위탁운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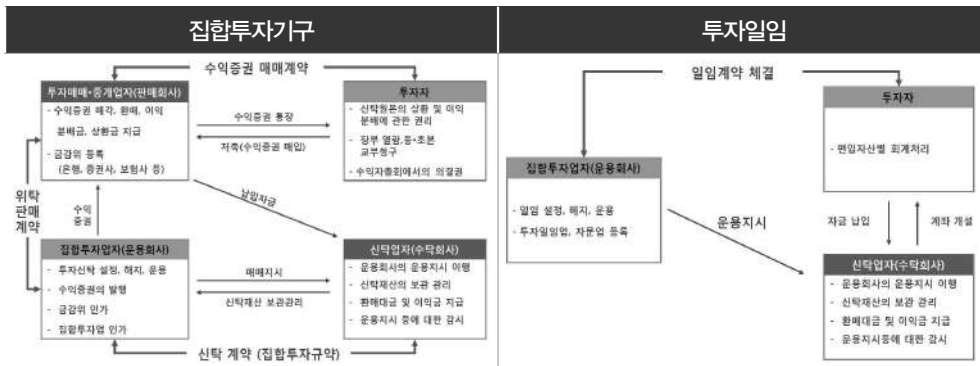
1 적극적VS소극적 자산운용

- 적극적운용
 -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운용자의 역량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지수의 자산구성비와 다르게 자산을 구성하는 적극적 방식
- 소극적운용
 -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는 방식

2 집합투자지구VS 투자일임/자문

-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취득, 처분 및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
- 소극적운용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소극적운용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참고 펀드(집합투자지구) VS 투자일임 업무 흐름도②



위탁금액 배분 기준 및 체계

- 내/외부 운용방식의 선택기준 매트릭스

구분	투자상품별		
	확정금리상품	실적배당상품	
자금유형별	단기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 유동성 확보 상품운용 : 정기예금 등 위험 : 없음 운용방식 : 소극적 운용 (내부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 유동성 확보 상품운용 : 단기채권형 등 위험 : 낮음 운용방식 : 소극적 운용 (외부운용)
	중장기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 수익성 추구 상품운용 : 정기예금 등 위험 : 없음 운용방식 : 소극적 운용 (내부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 고수익추구 상품운용 : 주식형 수익증권 등 위험 : 높음 운용방식 : 적극적 운용 (외부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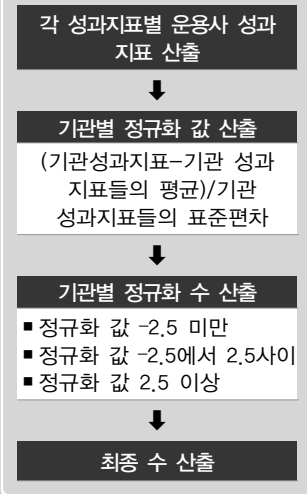


[1] 자산운용정책 (계획)

1 국내신용등급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의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적용

2 표준화 기법



3 영업용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증권사의 BIS비율로 불려지며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 쓰여짐.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금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하면 부실증권사로 조치를 받게 됨

4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됐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 계산됨. [총자산순이익률(ROA)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100] ROA는 자산운용을 많이 하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짐

외부위탁 투자기관 선정기준

- 장기적으로 위탁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운용능력이 검증된 우수 금융기관 중심 배분¹
- 금융기관별 자금배분은 운용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배분하되, 운용성과 등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운용집중 방지를 위해 개별 운용사별 운용한도 설정운영
- 금융기관별 선정기준

[은행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감독원에 등록 및 신고의 의무가 있고 평가자료가 공시되고 있는 국내/외 시중은행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 평가 → 평가순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내신용등급¹</td> <td>AAA(25), AA(20), A(15)</td> <td rowspan="5">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td> </tr> <tr> <td>BIS자기자본비율</td> <td>25</td> </tr> <tr> <td>총자산규모</td> <td>20</td> </tr> <tr> <td>무수익여신비율</td> <td>15</td> </tr> <tr> <td>총자산이익률</td> <td>15</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국내신용등급 ¹	AAA(25), AA(20), A(15)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BIS자기자본비율	25	총자산규모	20	무수익여신비율	15	총자산이익률	15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국내신용등급 ¹	AAA(25), AA(20), A(15)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BIS자기자본비율	25													
	총자산규모	20													
무수익여신비율	15														
총자산이익률	15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별 배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구간별로 점수 부여 항목별 배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표준화 점수법을 사용하여 배점² 														

[투자중개업자(판매사)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고 집합투자증권 등 간접투자기구를 위탁판매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증권사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 평가 → 평가순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영업용순자본비율³</td> <td>20</td> <td rowspan="6">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td> </tr> <tr> <td>자기자본비율</td> <td>20</td> </tr> <tr> <td>총자산이익률⁴</td> <td>15</td> </tr> <tr> <td>부채비율</td> <td>15</td> </tr> <tr> <td>총자산규모</td> <td>15</td> </tr> <tr> <td>수익증권 판매실적</td> <td>15</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영업용순자본비율 ³	20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자기자본비율	20	총자산이익률 ⁴	15	부채비율	15	총자산규모	15	수익증권 판매실적	15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영업용순자본비율 ³	20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자기자본비율	20															
	총자산이익률 ⁴	15															
	부채비율	15															
총자산규모	15																
수익증권 판매실적	15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별 배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구간별로 점수 부여 항목별 배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표준화 점수법을 사용하여 배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대상기관	■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자산운용회사 중 집합투자증권 및 MMF 자금을 운용하고 3년 이상 운용성과가 있는 국내/외 자산운용사			
평가절차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에서 제공하는 운용성과 자료를 활용 → 평가순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구분		배점비율	비고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재무안전성 (35)	자기자본비율	5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자기자본이익률	5	
		최근3년간 순이익	10	
		부채비율	5	
		총 수탁고	10	
	운용성과 (45)	BM대비 초과수익률	15	
		RRAR(유형평균)①	15	
과거 기금운용실적		15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20)	운용전문 인력수	5		
	전문인력 평균경력	10		
	1인당 펀드수	5		
평가방법	■ 항목별 배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구간별로 점수 부여 ■ 항목별 배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표준화 점수법을 사용하여 배점			

① RRAR(Relative Risk Adjusted Return)

- 펀드 전체의 위험이나 수익률 만큼의 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위험의 부담으로 달성한 수익률에 대한 보상을 평가하는 척도
- 샤프지수가 절대적인 위험수준인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

참고 자산운용사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내용	
재무건 안전성 (35)	자기자본비율	5	■ 300% 이상(5), 200% 이상(4), 100% 이상(3), 100% 미만(1)
	자기자본이익률	5	■ 20% 이상(5), 10% 이상(3), 5% 이상(2), 5% 미만(1)
	최근 3년간 순이익	10	■ 최근3년 흑자(10), 최근2년 흑자(8), 최근1년 흑자(6), 기타(4)
	부채비율	5	■ 50% 미만(5), 100% 미만(4), 150% 미만(3), 150% 이상(1)
	총 수탁고	10	■ 혼합형, 주식형 - 5,000억이상(10), 3,000억이상(8), 4,000억이상(6), 2,000억미만(4) ■ 채권형 - 1조 이상(10), 7,000억이상(8), 4,000억이상(6), 2,000억미만(4)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20)	운용전문 인력수	5	■ 10명이상(5), 7명이상(3), 5명이상(1), 기타(0)
	업계평균경력	10	■ 표준화 점수법 사용
	1인당 운용규모	5	■ 표준화 점수법 사용
과거 운용성과 (45)	BM대비 초과수익률	15	■ 표준화 점수법 사용
	RRAR(유형평균)	15	■ 표준화 점수법 사용
	과거 기금운용실적	15	■ 탁월(15), 양호(10), 보통(5), 미흡(0), 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5점 부여

※ BM대비초과 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은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성과를 적용, 해당 구간 성과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별 최소값 적용

※ 과거 기금운용실적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펀드들의 설정이후 성과를 토대로 평가

1 기본수수료 체계

유형	기본수수료
주식형	연간 150bp이내
채권형	연간 50bp이내
혼합형	연간 150bp이내

2 투자원금별 초과수익액

투자원금별 초과수익액
= 투자원금X초과수익률

3 지급한도

유형	지급한도
주식형	투자원금의 연 1.2% (인덱스형은 0.6%)
채권형	투자원금의 0.2%

4 유형별 목표수익률

유형	지급한도
주식형	MAX(기준수익률+ 연4%, 연10%) (인덱스형은 0.6%)
채권형	기준수익률+50bp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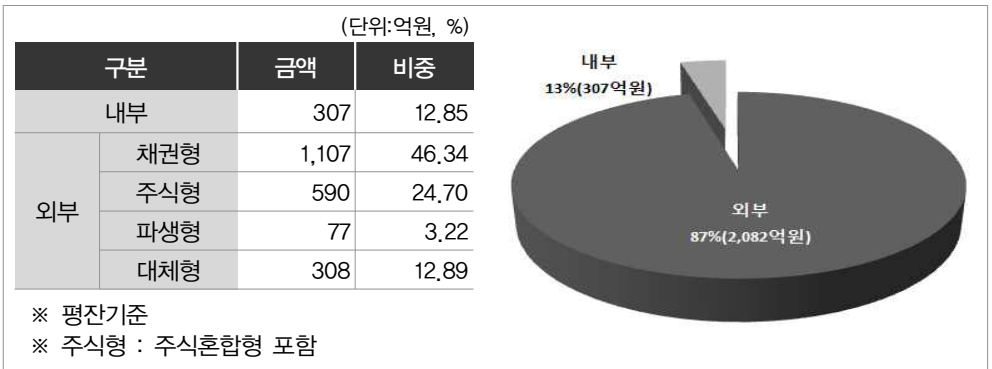
외부위탁금액 현황, 계약조건 및 자산운용기관 등 투명성 확보 관련자료

외부위탁 금액 및 비중 현황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내부 운용 및 외부위탁금액 현황

- 내부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내부 운용은 정기예금 등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확정금리상품에 한하고 나머지 유형의 상품(실적배당상품)은 모두 외부위탁
- 2012년도 외부 위탁비중은 약 87%로 내부위탁 비중이 전년대비(78%) 증가

[2012년 내/외부 위탁현황]



외부위탁 기관 계약조건

구분	세부내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운용시 펀드별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계약기간, 기준수익률, 위험관리 등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해 명시하여 관리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의 성격(현금성, 유동성, 중장기) 및 유형별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만기도래 전 재투자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중도해지 가능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자산의 특성 및 투자자금의 성격 등을 고려 기준수익률의 설정원칙(대표성, 적정성, 측정성)에 입각하여 설정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운용지침상에 투자제한 자산 및 손절매 기준 등을 명시하여 리스크 최소화 						
수수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는 운용보수, 판매보수(평가보수), 수탁보수 등으로 책정 기본 수수료는 위탁자산의 NAV 기준으로 산정 성과수수료는 매년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에 대해 계약 종료시 지급 						
성과수수료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수수료 대비 성과보수 비중이 과다할 경우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위해 공격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위험에 과다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탁유형별 성과수수료 상한폭 설정①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수수료 지급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유형</th> <th>계산식</th> </tr> </thead> <tbody> <tr> <td>주식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Σ MIN(투자원금별 초과수익액②) × 12%, 지급한도③) </td> </tr> <tr> <td>채권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수수료 계산기간의 투자원금 × [운용수익률 - Max(목표수익률④, 국고3년 평균수익률)] × 11% </td> </tr> </tbody> </table>	상품유형	계산식	주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Σ MIN(투자원금별 초과수익액②) × 12%, 지급한도③) 	채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수수료 계산기간의 투자원금 × [운용수익률 - Max(목표수익률④, 국고3년 평균수익률)] × 11%
상품유형	계산식						
주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Σ MIN(투자원금별 초과수익액②) × 12%, 지급한도③) 						
채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수수료 계산기간의 투자원금 × [운용수익률 - Max(목표수익률④, 국고3년 평균수익률)] × 11% 						

외부운용기관 등급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

- 장기적으로 위탁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운용능력이 검증된 우수 금융기관 중심 배분
- 금융기관별 자금배분은 운용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배분하되, 운용 성과 등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운용집중 방지를 위해 개별 운용사별 운용한도 설정운영

[등급별/개별기관별 투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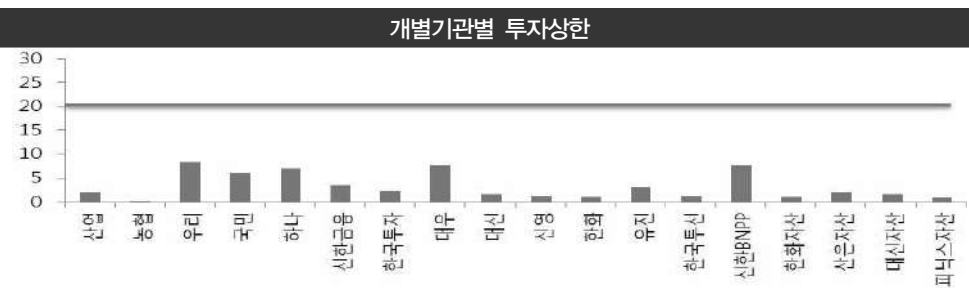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투자한도	
		등급별한도	개별기관별 한도
A	평가순위 30% 이내	총 투자액의 40% 이상	총 투자액의 20% 이내
B	평가순위 30%~70% 이내	총 투자액의 60% 이내	총 투자액의 15% 이내
C	평가순위 70% 초과	예탁배제	

위탁운용 적격여부 점검

구분	금융기관	투자비중 (%)	평가등급	금융기관 투자 적격여부	배분한도 적격여부	조치사항
은행	산업은행	2.09	A	적격	적격	-
	농협	0.07	A	적격	적격	-
	우리은행	8.33	A	적격	적격	-
	국민은행	6.11	B	적격	적격	-
	하나은행	6.85	B	적격	적격	-
증권사	신한금융투자	3.47	A	적격	적격	-
	한국투자증권	2.26	A	적격	적격	-
	대우증권	7.54	A	적격	적격	-
	대신증권	1.46	B	적격	적격	-
	신영증권	1.12	B	적격	적격	-
	한화투자증권	1.01	B	적격	적격	-
운용사	유진투자증권	3.02	B	적격	적격	-
	한국투자신용	1.12	A	적격	적격	-
	신한BNPP	7.54	A	적격	적격	-
	한화자산운용	1.01	A	적격	적격	-
	산은자산운용	2.09	B	적격	적격	-
	대신자산운용	1.46	C	부적격	-	운용계획서 징구, 신규투자금지
	피닉스자산운용	0.87	C	부적격	-	자금회수 ①~③

- ※ 투자비중은 평잔기준
- ※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 제외

[개별기관별 투자한도 준수 여부]



1 환매청구(1차)



2 환매청구(2차)



3 환매청구(3차)



1-3-3

외부위탁 투자기관 사후 관리체계 관련자료

■ 외부위탁 투자기관 사후관리 관련규정

● 외부위탁기관 사후 관리체계 관련 근거 규정

구분	세부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IPS)	<p>■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24조 (투자자산의 재투자 및 중도회수 기준)</p> <p>① 운용상품의 만기와는 별도로 해당 상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또는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교체투자가 수익률제고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상품 중도에 해지/회수조치 가능</p> <p>②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상 위탁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수준 등 운용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용수익률 저조 펀드 등에 대하여 관련 기준에 의한 ‘주의관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p> <p>③ 운용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기간 연장 또는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수급에 따른 적정 투자기간 2. 포트폴리오의 자산별·만기별 가중 3. 허용위험한도 4.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5. 운용상품의 수익률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p>■ 제10조 (위험관리)</p> <p>- 정기적인 운용자산의 안정성 점검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위탁규모 제한</p> <p>-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통제</p>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p>■ 별표4. 운용성과 평가기준 및 등급①</p> <p>- 평가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평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BM대비 초과수익률</td> <td> <p>■ 평가주기 : 매 분기말</p> <p>■ 평가방법 : (㉑ × 50%) + (㉒ × 50%)</p> <p>㉑ 평가일 기준 최근 2년 BM초과수익률</p> <p>㉒ 평가일 기준 최근 1개월 BM초과수익률</p> <p>※ 단, 해당 기간 운용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일 이후 BM초과 수익률로 반영</p> <p>■ 평가대상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펀드</p> <p>※ 단, 동일 운용유형 내 평가대상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설정시기별 운용성과를 합산하여 평가</p> <p>※ "BM 초과수익률"은 측정기간 누적수익률을 사용하고,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p> </td> </tr> </tbody> </table> <p>- 운공사 평가등급 및 조치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운용성과</th> <th>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S</td> <td>BM 상회+%랭킹② 상위 20% 이내</td> <td rowspan="2">추가예탁 우선 순위</td> </tr> <tr> <td>A</td> <td>BM 상회+%랭킹 상위 21%~50%</td> </tr> <tr> <td>B</td> <td>BM 상회+%랭킹 상위 51% 이상</td> <td>위탁자금 유지</td> </tr> <tr> <td>C</td> <td>BM 하회</td> <td>운용실적 개선계획서 제출 위탁자금 50%이내 회수가능</td> </tr> <tr> <td>D</td> <td>2분기 연속 D 등급</td> <td>운용실적 개선계획서 제출 위탁자금 전액 회수가능</td> </tr> </tbody> </table> <p>※자금위탁 및 자금회수는 분기별 평가등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시장상황,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이익실현, 위탁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조치 가능</p>	평가항목	평가기준	BM대비 초과수익률	<p>■ 평가주기 : 매 분기말</p> <p>■ 평가방법 : (㉑ × 50%) + (㉒ × 50%)</p> <p>㉑ 평가일 기준 최근 2년 BM초과수익률</p> <p>㉒ 평가일 기준 최근 1개월 BM초과수익률</p> <p>※ 단, 해당 기간 운용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일 이후 BM초과 수익률로 반영</p> <p>■ 평가대상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펀드</p> <p>※ 단, 동일 운용유형 내 평가대상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설정시기별 운용성과를 합산하여 평가</p> <p>※ "BM 초과수익률"은 측정기간 누적수익률을 사용하고,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p>	등급	운용성과	조치사항	S	BM 상회+%랭킹② 상위 20% 이내	추가예탁 우선 순위	A	BM 상회+%랭킹 상위 21%~50%	B	BM 상회+%랭킹 상위 51% 이상	위탁자금 유지	C	BM 하회	운용실적 개선계획서 제출 위탁자금 50%이내 회수가능	D	2분기 연속 D 등급	운용실적 개선계획서 제출 위탁자금 전액 회수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BM대비 초과수익률	<p>■ 평가주기 : 매 분기말</p> <p>■ 평가방법 : (㉑ × 50%) + (㉒ × 50%)</p> <p>㉑ 평가일 기준 최근 2년 BM초과수익률</p> <p>㉒ 평가일 기준 최근 1개월 BM초과수익률</p> <p>※ 단, 해당 기간 운용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일 이후 BM초과 수익률로 반영</p> <p>■ 평가대상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펀드</p> <p>※ 단, 동일 운용유형 내 평가대상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설정시기별 운용성과를 합산하여 평가</p> <p>※ "BM 초과수익률"은 측정기간 누적수익률을 사용하고,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p>																					
등급	운용성과	조치사항																				
S	BM 상회+%랭킹② 상위 20% 이내	추가예탁 우선 순위																				
A	BM 상회+%랭킹 상위 21%~50%																					
B	BM 상회+%랭킹 상위 51% 이상	위탁자금 유지																				
C	BM 하회	운용실적 개선계획서 제출 위탁자금 50%이내 회수가능																				
D	2분기 연속 D 등급	운용실적 개선계획서 제출 위탁자금 전액 회수가능																				

① 운용성과 평가기준 및 등급

운용성과 평가를 통한 자금회수 등의 조치는 단기/중장기 자금에 모두 적용되나, 단기자금이 유동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 상품에 주로 투자되는 을 감안해 볼 때 단기자금에 대한 운용성과 평가는 큰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여 주로 중장기 실적배당상품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음

② 투자원금별 초과수익액

%랭킹(백분율 순위)은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 없이 특정 펀드의 성과에 대해 상대적 순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

외부위탁운용 위험관리 방안

투자지침에 의한 관리

- 자금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한 운용의 일관성 및 적절한 위험통제를 위해 운용스타일별 운용대상, 허용손실폭 제한, 벤치마크 등을 투자지침으로 사전에 제한

구분	세부내용								
운용자산에 대한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투자대상자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산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KOSDAQ시장 등록주식 ■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 옵션 </td> </tr> <tr> <td>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td> </tr> <tr> <td>유동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MMDA, RP 등 ■ CD, CP, 정기예금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자산의 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KOSDAQ시장 등록주식 ■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 옵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MMDA, RP 등 ■ CD, CP, 정기예금 등
	구분	자산의 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KOSDAQ시장 등록주식 ■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 옵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MMDA, RP 등 ■ CD, CP, 정기예금 등 								
집중투자에 대한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투자제한 자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산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종목 ■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종목 ■ 관리종목, 화의 또는 워크아웃 대상종목 ■ 타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td> </tr> <tr> <td>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인 채권 ■ 신용평가등급 A2- 미만인 CP ■ 기타 기금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td> </tr> </tbody> </table>	구분	자산의 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종목 ■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종목 ■ 관리종목, 화의 또는 워크아웃 대상종목 ■ 타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인 채권 ■ 신용평가등급 A2- 미만인 CP ■ 기타 기금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구분	자산의 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종목 ■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종목 ■ 관리종목, 화의 또는 워크아웃 대상종목 ■ 타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인 채권 ■ 신용평가등급 A2- 미만인 CP ■ 기타 기금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집중투자에 대한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종목별 투자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산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td> </tr> <tr> <td>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기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td> </tr> </tbody> </table>	구분	자산의 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기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구분	자산의 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기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위탁펀드에 대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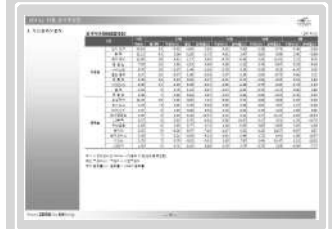
- 투자에 대한 실시간 자산운용 적정여부 감시 및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자산운용 Feedback 체계 운영

주기	세부내용
일별 또는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별 운용현황 및 운용내역 확인① ■ 평가회사, 사무수탁사에서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및 운용내역 모니터링② : 허용위험한도,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운용상품 수익률 등
월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운용사로부터 전월 운용내역 및 당월 운용계획 보고③

1 Daily Check System



2 운용내역 모니터링(평가사)



3 운용내역 모니터링(운용사)



1 외부감사 및 평가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사업성 여유자금 운용실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물에 위탁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

2011년 경영평가

연기금투자물의 예치비중 확대 등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증대방안이 요구

2011년 기금운용평가

상당부분의 중장기 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가능성 상존

2 연기금투자물 조정평 산식

지표평+(해당지표배-지표평)X투자물비중

3 연기금투자물 운용구조(FOF)



4 연기금투자물 수수료 구조

(단위 :bp)

구분	MMF	채권형	주식형
주간운용사		6.5	
하위운용사	8	13	16
사무수탁사		0.3	
사무관리사		0.3	
펀드평가사		0.35	
계	15.45	22.45	25.45

1-3-4 연기금투자물에 대한 자산배분 기준 및 운용내역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연기금투자물 확대 필요성 인식 및 비용-효익 분석 실시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연기금투자물 적극적 활용 필요성 인식

외부지적사항 반영①

- 2010년 감사원 감사 및 2011년 국정감사
- 2011년 경영평가 및 기금운용평가

외부 평가 및 가점

- 연기금투자물 예치비중에 따른 비계량 점수폭 확대②

환경변화 대처

관리효율성 강화 요구 증대

- 개별투자상품에 대한 성과모니터링 한계
-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필요

수익성 및 투명성 제고

- 기금감소에 따른 수익성 제고
- 상품 및 운용기관 선정관련 투명성 제고

연기금투자물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특징 및 기대효과
제도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의 투명성, 수익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운용시스템③ 운용사 직판개념 도입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④
투자자금 운용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사 및 투자상품 선정 위탁대행으로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전문화된 리스크관리 시스템 활용으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기금투자물 비용-효익 분석 실행('12.9월)

비용분석(보수)						효익분석(수익률)																																																				
<p>[공모펀드 평균보수] (단위 : bp)</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유형</th> <th>운용사</th> <th>판매사</th> <th>수탁사</th> <th>사무관리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MMF</td> <td>9.1</td> <td>21.4</td> <td>0.7</td> <td>2.2</td> <td>33.5</td> </tr> <tr> <td>채권형</td> <td>23.1</td> <td>39.3</td> <td>0.9</td> <td>3.3</td> <td>66.7</td> </tr> <tr> <td>주식형</td> <td>73.1</td> <td>100.2</td> <td>1.8</td> <td>4.5</td> <td>179.6</td> </tr> </tbody> </table>						상품유형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계	MMF	9.1	21.4	0.7	2.2	33.5	채권형	23.1	39.3	0.9	3.3	66.7	주식형	73.1	100.2	1.8	4.5	179.6	<p>[연기금투자물 수익률] (단위 : %)</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유형</th> <th>2009</th> <th>2010</th> <th>2011</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MMF</td> <td>2.99</td> <td>2.75</td> <td>3.31</td> <td>3.02</td> </tr> <tr> <td>채권형</td> <td>3.65</td> <td>5.89</td> <td>4.21</td> <td>4.58</td> </tr> <tr> <td>주식형</td> <td>57.45</td> <td>24.38</td> <td>-9.37</td> <td>24.15</td> </tr> </tbody> </table>					상품유형	2009	2010	2011	평균	MMF	2.99	2.75	3.31	3.02	채권형	3.65	5.89	4.21	4.58	주식형	57.45	24.38	-9.37	24.15				
상품유형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계																																																					
MMF	9.1	21.4	0.7	2.2	33.5																																																					
채권형	23.1	39.3	0.9	3.3	66.7																																																					
주식형	73.1	100.2	1.8	4.5	179.6																																																					
상품유형	2009	2010	2011	평균																																																						
MMF	2.99	2.75	3.31	3.02																																																						
채권형	3.65	5.89	4.21	4.58																																																						
주식형	57.45	24.38	-9.37	24.15																																																						
<p>[문예진흥기금 평균보수] (단위 : bp)</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유형</th> <th>운용사</th> <th>판매사</th> <th>수탁사</th> <th>사무관리사</th> <th>펀드평가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MMF</td> <td>7.1</td> <td>15.2</td> <td>1.9</td> <td>1.0</td> <td>-</td> <td>26.0</td> </tr> <tr> <td>채권형</td> <td>19.1</td> <td>22.7</td> <td>2.3</td> <td>1.5</td> <td>1.0</td> <td>39.0</td> </tr> <tr> <td>주식형</td> <td>68.2</td> <td>87.2</td> <td>3.8</td> <td>2.0</td> <td>3.0</td> <td>162.0</td> </tr> </tbody> </table>						상품유형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펀드평가사	계	MMF	7.1	15.2	1.9	1.0	-	26.0	채권형	19.1	22.7	2.3	1.5	1.0	39.0	주식형	68.2	87.2	3.8	2.0	3.0	162.0	<p>[문예진흥기금 수익률] (단위 : %)</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유형</th> <th>2009</th> <th>2010</th> <th>2011</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MMF</td> <td>2.98</td> <td>2.71</td> <td>2.95</td> <td>2.88</td> </tr> <tr> <td>채권형</td> <td>5.56</td> <td>0.20</td> <td>2.23</td> <td>2.66</td> </tr> <tr> <td>주식형</td> <td>31.71</td> <td>10.21</td> <td>-10.56</td> <td>10.45</td> </tr> </tbody> </table>					상품유형	2009	2010	2011	평균	MMF	2.98	2.71	2.95	2.88	채권형	5.56	0.20	2.23	2.66	주식형	31.71	10.21	-10.56	10.45
상품유형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펀드평가사	계																																																				
MMF	7.1	15.2	1.9	1.0	-	26.0																																																				
채권형	19.1	22.7	2.3	1.5	1.0	39.0																																																				
주식형	68.2	87.2	3.8	2.0	3.0	162.0																																																				
상품유형	2009	2010	2011	평균																																																						
MMF	2.98	2.71	2.95	2.88																																																						
채권형	5.56	0.20	2.23	2.66																																																						
주식형	31.71	10.21	-10.56	10.45																																																						

연기금투자물 활용근거 및 배분기준

구분	세부내용
활용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제3조 (적립금운용의 기본방향) -⑥ 국가재정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기관이 운용하는 연기금투자물에 기금의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을 위탁할 수 있다. 자산운용지침 제21조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① 기금은 내부 전문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직접투자)과 외부 전문운용사 및 기획재정부 주관의 연기금 투자물을 통한 외부운용(위탁투자)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배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안) 내에서 전술적으로 배분 비율 설정

연기금투자물 예치비중 확대현황 및 투자물 내 상품 유형다변화

절대적 비중확대	투자상품 유형다변화
----------	------------

- 2012년 연기금투자물 예치비중 확대목표에 따라 연중 만기도래 상품 전액을 연기금투자물로 예치
 - '12년 전체 운용평잔 대비 연기금투자물 예치평잔 55.4% 달성
 - 전년도 예치비중(16.01%) 대비 39.4%p 증가, 목표비중(50%) 대비 5.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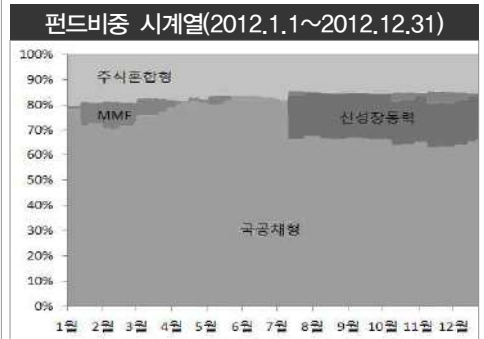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p)

구분	2009	2010	2011	2012
운용평잔	3,876	3,339	2,684	2,389
투자물평잔	219	412	430	1,323
예치비중	5.7	12.4	16.1	55.4
증가율	-	117.5	29.0	244.1

- 2012.5월 신성장동력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연기금투자물내 신성장동력 펀드(채권형)를 추가 투자함으로써 유형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①

- 연기금투자물 내 채권형의 비중이 전체 투자물 투자비중 대비 95.3%를 차지하여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성②,③



(단위 : 억원, %)

구분	MMF	국공채형	혼합형	신성장동력
예치액	51	870	220	250
예치비중	3.7	65.5	15.8	18.0
유형	채권형	채권형	주식·채권	채권형

※ 혼합형의 자산구성은 주식:채권 비율이 3:7임

연기금투자물 관리현황 및 활용계획

성과평가 및 관리

- 연기금투자물에서 정한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통해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등 위탁펀드의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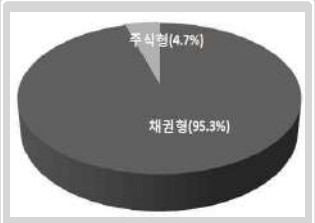
연기금투자물 활용계획

- 연기금투자물 등의 예치비중 적극적 확대를 통한 내부운용규모 축소 지속 추진
- 중장기 여유자금 운용계획(2011년~2013년) 수립⑤을 통하여 즉시환매를 통한 손실 증가 예상 투자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산을 연기금투자물에 위탁운용

1 신성장동력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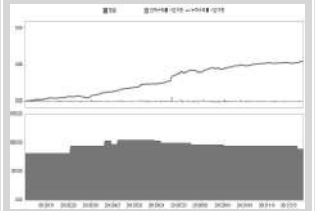
- 정부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굴한 17개 산업의 주식(유가증권시장)과 채권(A-등급 이상)에 투자자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2012년도 기금운용평가편람 신설지표인 '공공성확보 노력도' 만점(2) 획득

2 투자물내 안전자산 투자비중



3 국공채형 운용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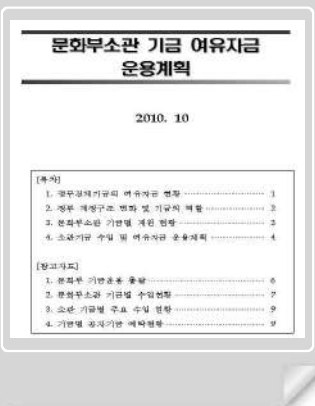
- 국공채형 안전자산의 투자평잔을 꾸준히 유지하여 연중 안정적 성과 유지



4 성과보고서



5 중장기 여유자금 운용계획





ARTISTREE

2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

효율적인 유동성관리로 여유자금 운용의 기회비용 감소노력 지속

- 적정유동성 산출 모델 개선을 통한 유동성관리의 효율성 제고
 - ↳ 실적의 표준편차 → 계획대비 실적치의 오차 반영
- 외부 컨설팅 실시를 통한 자산유형별 목표수익률 설정근거 개선
 - ↳ 단기자산 :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 α (가감금리)”
 - ↳ 중장기자산 :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α (가감금리)” +대체투자 상각부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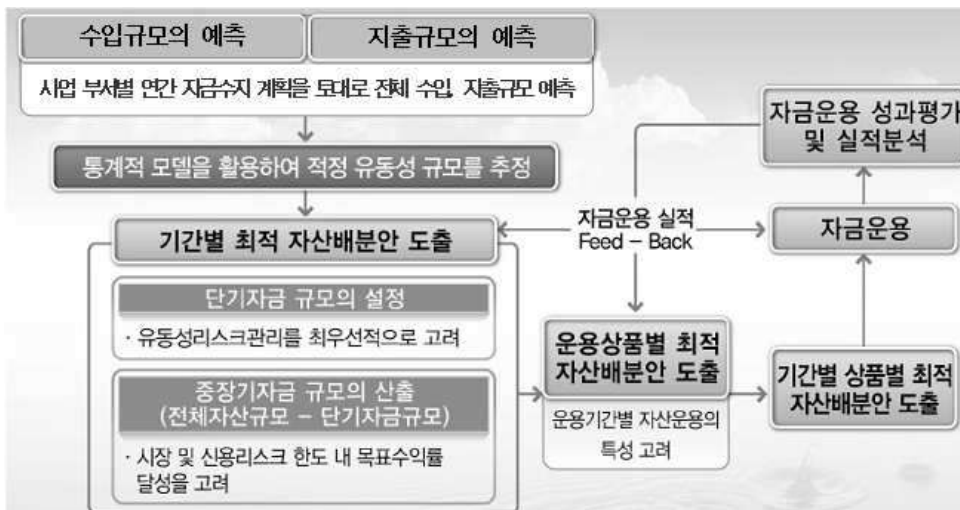
② ① 적성유동성 규모 및 자산배분 추정

②-①-1 현금성자금 적정규모산정 기준, 일자 및 추정절차가 포함된 관련 자료 및 IPS 에의 반영 근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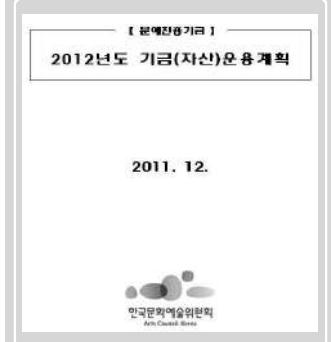
■ 2012년 자산운용의 기본방향①

- 자금수급 조정과 유동성관리 강화 초점
 -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성액 점진적 감소
 - 합리적 자금운용시스템 정착 → 자산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
 - 자산배분(안)에 따른 체계적 자산운용, 자산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투자상품의 간접투자원칙 준수,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합리적인 유동성관리
 - 각 부서별 자금수지예측을 통해 전체 자금규모를 예측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적정 유동성 규모 추정
 - 유동성 추정모델을 활용한 산출결과를 토대로 12개월간의 필요자금을 단기자산②으로, 수익성을 위해 잉여자금을 중장기자산으로 배분

■ 유동성관리 프로세스



① 2012년 기금(자산) 운용계획



② 단기자산

현금성자금(1개월 이하)

- 사업준비금 및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최소규모로 운용
- MMDA, MMF 등 수시 입출금 상품 운용

유동성자금(1년 미만)

- 은행권 금융기관의 확정금리형 상품 및 증권사 특정 금전신탁 등 운용
- 간접투자상품 운용시 단기매칭형 상품운용

1 2012년도 수치총괄표

구분	2011년 실적	2012년 계획	2012년 실적	2012년 실적	2012년 실적	2012년 실적
	액(천원)	액(천원)	액(천원)	액(천원)	액(천원)	액(천원)
1. 수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 지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3. 순지출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2 Target Level 설정

계획과 실적 각각의 순지출 산출 시 자금유입금액이 자금유출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월의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순지출 금액을 0으로 계산함. 또한 계획 순지출에 대한 자금계획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계획 순지출금액보다 실적 순지출금액이 작은 경우 순지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따라서, 해당월의 계획과 실적 순지출 오차 금액을 0으로 계산함

3 유동성위험 관리목표수준

- 90% 수준 = 1,28
- 95% 수준 = 1,65
- 99% 수준 = 2,33

적정 유동성규모 추정 절차

- 1. 자금 유출입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자금수지 항목을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구분
- 2. 수입과 지출 각 항목별 규모, 시기, 속성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에서 유출액의 규모와 시기 산정

단계	추정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자금수지 예측(기금운용계획 반영) ① 과거 자금의 유출입 및 지출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유출입 특성 반영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수준의 Target Level 설정 최근 4개년(2008년~2011년) 계획순지출 - 실제순지출의 오차 산출 ② 신뢰 목표수준 95% 하에서의 현금성 및 유동성 Buffer 산출 ※ 자산운용 제규정 및 자산운용지침상 안정성 및 유동성을 수익성보다 우선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위험 통제수준 설정(위험수준 5% 미만 적용) ③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별 적정 유동성규모 산출 계획과 실제 순지출에 근거하여 95%의 확률로 향후 T개월간의 자금 추정 ※ T개월 누적자금 = 1.65 × 오차의 변동성 × √T 현금성 및 유동성 Buffer를 고려하여 순지출이 가장 큰 월을 기준으로 설정

적정 유동성규모 추정결과 및 활용(자산운용지침 제13조 (적정유동성 규모 산정))

- 1. 기금이 설정한 목표수준인 95% 하에서의 단기자금 규모는 약 439억원으로 추정
 - 현금성자금 163억원, 유동성자금 276억원
- 2. 추정된 적정유동성 규모를 토대로 자산별 배분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 기금(자산)운용계획 및 자산운용지침(IPS)에 반영

[적정 유동성규모 추정결과(95% 신뢰수준)]

(단위 : 억원)

구분	수입	지출	수지차	현금성버퍼	유동성버퍼	현금성자금	유동성자금
1월	14	70	-56	-77	-191	-133	-247
2월	15	72	-56	-77	-191	-133	-247
3월	175	92	83	-77	-191	0	-108
4월	215	160	55	-77	-191	-22	-136
5월	383	246	137	-77	-191	0	-54
6월	107	193	-86	-77	-191	-163	-276
7월	166	238	-72	-77	-191	-150	-263
8월	23	108	-84	-77	-191	-162	-275
9월	36	58	-22	-77	-191	-100	-213
10월	21	49	-28	-77	-191	-105	-219
11월	23	41	-19	-77	-191	-96	-209
12월	213	27	186	-77	-191	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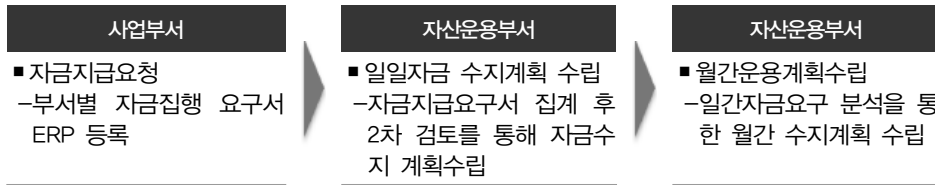


②-①-2 월별 현금성 자금운용계획 및 실적[연초기준]

■ 현금성자금 운용계획 수립

- 연초 월간 자금유출입 파악을 통해 적정유동성 및 현금성 규모를 산출하고 월별 현금성자금 운용계획 수립
- 연초 적정유동성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현금성자금을 대한 월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월간 자금수지 파악을 통해 현금성자금의 운용계획 조정

[현금성자금 운용계획 수립과정]



[표3. 월별 현금성자금 운용계획 및 실적현황]

(단위 : 백만원)

월(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기초잔고	계획	13,300	13,300	-	2,200	-	16,300	15,000	16,200	10,000	15,000	9,600	-	110,900	9,242
	실적(A)	1,225	12,737	8,737	3,737	1,737	737	37	249	49	49	2,049	6,699	38,042	3,170
수입	계획	1,423	1,548	17,471	21,479	38,300	10,746	16,618	2,331	3,603	2,132	2,268	21,282	139,201	11,600
	실적(B)	632	3,900	14,318	50,212	12,198	10,382	5,580	2,552	3,394	1,860	2,823	8,833	116,684	9,724
당좌차월 혹은 만기전 환매액		-	-	-	-	-	-	-	-	-	-	-	-	-	-
지출	계획	7,012	7,153	9,160	15,979	24,642	19,331	23,845	10,753	5,832	4,936	4,120	2,693	135,456	11,288
	실적(D)	658	4,518	18,751	28,425	23,954	16,080	11,137	4,707	6,568	3,830	5,420	11,735	135,783	11,315
기말잔고	계획	13,300	-	2,200	-	16,300	15,000	16,200	10,000	15,000	9,600	-	-	97,600	8,133
	실적(F)	12,737	8,737	3,737	1,737	737	37	249	49	49	2,049	6,699	5,099	41,916	3,493
월평균{(A+F)/2}		6,981	10,737	6,237	2,737	1,237	387	143	149	49	1,049	4,374	5,899	39,979	3,332
월별순지출(D-B)		26	618	4,433	21,787	11,756	5,698	5,557	2,155	3,174	1,970	2,597	2,902	19,099	1,592



②-①-4 자금배분계획에 따른 자산별, 상품별 허용제한범위 및 IPS 반영 근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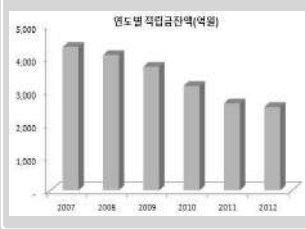
■ 전술적 허용범위 설정 (자산운용지침 제16조 (자산배분안))

- 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 후 전술적 허용범위 설정
 - 유형별 전술적 투자비중 변경 허용범위는 자산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 배분의 ±5% 이내로 제한
- 자산배분 조정
 - 전술적 허용범위를 초과할 만한 시장한 급격한 변동 사유 발생 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위원장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자산배분 조정 가능
- 2012년 자산배분(안)

구분	목표비중	허용범위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6.28%	±5%p
	유동성자금	10.63%	±5%p
단기자금 소계		16.91%	±5%p
	주식형	6.75%	±5%p
	채권형	67.29%	±5%p
	대체형	9.05%	±5%p
중장기자금 소계		83.09%	±5%p
총계		100%	

2 ② 현금성 자금의 최소화 노력

1 적립금 감소추이 현황



2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규정

제7조 (기금의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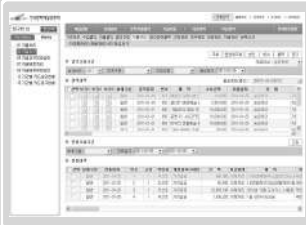
⑤ 운용기금은 자금의 수요가 있을 때에 즉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현금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지침 제6조

제6조 (자산운용 원칙)

④ 예상치 못한 사업 지출 및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적정 유동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자산운용 계획에 반영한다. (유동성 원칙)

4 자금지급요청 시스템



2-2-1

현금성 자금 발생원인 및 규모 파악 근거자료

현금성자금 관리목적 및 운용원칙

구분	세부내용																								
관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말 모금수입이 중단된 이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① 기금의 현금성자금은 향후 예상치 못한 사업지출 및 수입감소에 대비하여 초단기로 운용 																								
운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예측성 긴급 자금수요 및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험 방지 투자자산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발생 및 과도한 현금성자금 보유로 인한 기금전체 수익률 저하 방지 현금성을 고려하여 입출이 용이한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상품(MMDA, MMT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며 수익성의 제고를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MMF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②,③} 																								
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현금성자금은 연기금투자플^④의 MMF 및 시중은행 MMDA로만 운용하여 현금성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최소화 노력 경주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 현금성자금 운용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구분</th> <th>상품종류</th> <th>운용회사</th> <th>'12년 예치평잔</th> <th>비중</th> <th>수익률(연)^⑤</th> </tr> </thead> <tbody> <tr> <td>연기금투자플</td> <td>MMF</td> <td>삼성자산운용</td> <td>37억원</td> <td>1.54%</td> <td>3.29%</td> </tr> <tr> <td>수시입출식</td> <td>MMDA</td> <td>국민은행</td> <td>56억원</td> <td>2.35%</td> <td>4.32%</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93</td> <td>3.90%</td> <td>3.50%</td> </tr> </tbody> </table>	상품구분	상품종류	운용회사	'12년 예치평잔	비중	수익률(연) ^⑤	연기금투자플	MMF	삼성자산운용	37억원	1.54%	3.29%	수시입출식	MMDA	국민은행	56억원	2.35%	4.32%	계			93	3.90%	3.50%
상품구분	상품종류	운용회사	'12년 예치평잔	비중	수익률(연) ^⑤																				
연기금투자플	MMF	삼성자산운용	37억원	1.54%	3.29%																				
수시입출식	MMDA	국민은행	56억원	2.35%	4.32%																				
계			93	3.90%	3.50%																				

현금성자금 발생원인 및 규모

현금성자금 발생원인

- '96년까지는 자체 재원 적립보다 타 재원 적립비율이 높았으나 '97년 이후 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이 중단되면서 적립 재원의 대부분이 자체 적립금으로 구성
- '04년 모금이 폐지되면서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금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04년도부터 500억원 규모의 복권기금이 전입되어 연간 예산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후 위원회 체제로 전환('05. 8. 26)한 이후에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적립금을 인출하여 집행한 데 원인이 있음
- 또한 각종 사업비 지급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예측불허의 소요자금으로 인해 현금성 자금이 불가피하게 발생

[재원부족에 따른 적립금 인출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적립금인출	△212	△245	△356	△751	△357	△109
적립금잔액	4,336	4,091	3,739	2,988	2,631	2,522

2 ③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의 적정성

1 제도개선 용역 결과보고서



2 '11년도 기금평가단 지적사항

목표수익률은 사전에 설정되었으나 설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자산에 대한 허용위험한도는 설정되지 않음

3 2012년도 기준금리 전망조사

구분	실현치	목표치	변동폭
12월 말 기준	2.50%	2.50%	0.00%
1월 말	2.50%	2.50%	0.00%
2월 말	2.50%	2.50%	0.00%
3월 말	2.50%	2.50%	0.00%
4월 말	2.50%	2.50%	0.00%
5월 말	2.50%	2.50%	0.00%
6월 말	2.50%	2.50%	0.00%
7월 말	2.50%	2.50%	0.00%
8월 말	2.50%	2.50%	0.00%
9월 말	2.50%	2.50%	0.00%
10월 말	2.50%	2.50%	0.00%
11월 말	2.50%	2.50%	0.00%
12월 말	2.50%	2.50%	0.00%
연평균	2.50%	2.50%	0.00%

2-3-1

전체자산, 단기자산, 중장기자산별 목표수익률 산출기준 및 IPS 등에의 반영 근거자료

■ 목표수익률 정의 및 설정원칙

● 목표수익률의 정의

-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서 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가치 보존 이상의 수익률
-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Return Objectives)로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이며 전략적자산배분이 사전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로 정의

● 목표수익률 설정원칙

-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가치 보존 이상의 수익률로 설정
-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최소요구수익률로 설정하고, 목표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이상일 경우 목표수익률로 설정

■ 자산유형별 목표수익률 설정근거 개선

● 목표수익률 설정근거 개선을 위하여 외부 컨설팅 실시①

- '11년 기금운용실적평가 기금평가단의 목표수익률 근거미흡에 대한 지적사항② 개선 및 전반적인 기금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외부컨설팅 실시
- 컨설팅 기간 : 2012년 6월~2012년 9월(3개월 간)
- 컨설팅 수행기관 : KBP펀드평가(주)

● 목표수익률 설정근거 개선 내용

자산유형	기존(2011년도)	개선(2012년도)
단기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운용자산의 평균만기가 6개월 미만임을 감안하여 정기예금 6개월~1년 평균 수신금리로 설정 ■ 시장 금리수준을 고려하고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 (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2012년도 기준금리 전망 조사③ ■ 과거 기준금리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의 Spread 추이를 분석하여 α(가감금리) 추정 ■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 α(가감금리)” 값을 단기자산의 목표수익률로 설정
중장기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 및 증식을 위해 물가상승률이 감안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원화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성장률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2012년도 기준금리 전망 조사 ■ 과거 기준금리와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의 Spread 추이를 분석하여 α(가감금리) 추정 ■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α(가감금리)” 값에 기금의 특성(대체투자 상각부분)을 감안한 수치와 예상물가상승률 중 높은 값을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로 설정



■ 2012년도 단기자산 목표수익률 설정

단계	세부내용
시장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2012년도 기준금리 전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 3.23% 시장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의 평균치
가산금리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기준금리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의 Spread 추이를 분석하여 α(가산금리) 추정 : 0.62%p 과거 기준금리 평균 : 3.10% 과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 평균 : 3.72% α(가산금리) : 0.62%p (3.72% - 3.10%)
단기자산 목표수익률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 기준금리 전망 + α(가산금리)" 값을 단기자금의 목표수익률로 설정 : 3.85% 기준금리(3.23%) + α(0.62%p)

■ 2012년도 중장기자산 목표수익률 설정

단계	세부내용
시장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2012년도 기준금리 전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 3.23% 시장의 컨센서를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의 평균치
가산금리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기준금리와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의 Spread 추이를 분석하여 부실자산 할인율 조정 후 적정 α(가산금리) 추정 : 0.53%p 과거 기준금리 평균 : 3.10% 과거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 평균 : 4.15% α(가산금리) : 0.62%p (3.72% - 3.10%) α(가산금리) : 1.05%p (4.15% - 3.10%) 부실 자산에 대한 상각율 조정(50%) 수정 α(가산금리) * (100%-50%): 1.05%p * 0.5 = 0.53%
중장기자산 목표수익률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물가 상승률과 예상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추정한 값을 더한 값 중 높은 값으로 설정 한국은행 예상 물가 상승률 : 3.00% 예상기준금리 + α (가산금리) : 3.76% Max(예상기준금리+α[가산금리], 예상물가 상승률) : 3.76%

■ 2012년도 유형별 목표수익률 설정치 IPS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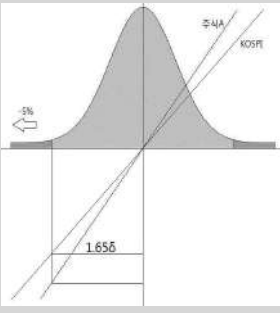
IPS반영	세부내용
자산운용지침 제9조 (목표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은 단기자금의 평균 투자 기간을 대표하는 한국은행 6개월 ~ 1년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기대수익률로 설정 : 3.85% 중장기자금은 한국은행 1년 ~ 2년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기대수익률에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수치와 예상 물가 상승률 중 높은 값으로 설정 : 3.76% 기금전체 목표수익률 : 3.76%

① VaR(Value at Risk)

- 주어진 기간에 어느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잠재적으로 특정 금액 이상으로 잃게 될 확률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후 보기 편하게 가격화한 위험분석 방법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확률을 측정하며,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에는 'Delta-normal Valuation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등이 있음

② Delta-normal VaR의 가정

- 수익의 변화가 선형
- 수익의 변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참고> VaR기법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리스크량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리스크 요소간 비교가 쉬움
 -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량 산출에 있어 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 요소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를 반영
 - "최대손실" 개념을 이용하므로 자원의 배분 기준으로 활용 가능
- 단점
 -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미래의 리스크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
 -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나, 실제로는 가정과는 다른 분포일 가능성 (Fat Tail)
 -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최대 손실액을 의미하므로 금융위기 등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2-3-2

전체자산, 단기자산, 중장기자산별 허용위험도 산출기준 및 IPS 등에의 반영 근거자료

■ 허용위험도 산출

● 허용위험도 산출 기준

- 투자 상품의 과거 시장 변동성을 추정하고 추정기간의 합리성과 상품별로 동일한 추정기간을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변동성을 사용
-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허용위험한도는 기금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자산운용 정책수행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
- 자본 적적성 유지
 - 기금운용에 따르는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다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자산운용과 관련된 시장리스크의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운용자금의 적정성 유지

● 허용위험도 산출 기준

구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및 리스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시장위험의 측정을 위해 VaR(Value at Risk)① 값 산정 						
운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상품의 상관계수를 고려한 기대수익률과 95% 신뢰수준의 VaR를 적용하여 기금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손실한도 결정 ▪ VaR 모형 적용을 위한 기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에 적용할 가격변동은 과거의 History를 고려 - 실적배당상품인 펀드의 편입자산의 경우 각 종목별로 가격 History를 구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표수익률(국고채3년물, KOSPI, CD91 일물 지수)의 변동 History를 구하여 모형에 적용 ▪ VaR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률과 통계적 모델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분포를 예측하여 VaR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Delta-normal method②를 사용 - 연간허용위험한도(VaR) = ▪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대상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인 주식, 채권 관련 금융상품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정기예금 등 VaR 산출의 의미가 없는 상품은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관리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채권, 직접투자 및 주식, 채권 편입상품 ▪ 수익증권과 같이 주식,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의 주식, 채권 평가금액 </td> </tr> <tr> <td>제외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Call, CD, 표지어음 등의 주식, 채권 비편입 상품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관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채권, 직접투자 및 주식, 채권 편입상품 ▪ 수익증권과 같이 주식,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의 주식, 채권 평가금액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Call, CD, 표지어음 등의 주식, 채권 비편입 상품
구분	내용						
관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채권, 직접투자 및 주식, 채권 편입상품 ▪ 수익증권과 같이 주식,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의 주식, 채권 평가금액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Call, CD, 표지어음 등의 주식, 채권 비편입 상품 						
2012년도 허용위험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상품의 상관계수를 고려한 기대수익률과 95%신뢰수준의 VaR를 적용하여 기금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손실한도를 산출 ▪ 기금의 2012년도 허용위험한도는 단기자금의 경우 12억원(0.5%), 중장기 자금 125억원(6.08%)으로 설정 						

■ 2012년도 허용위험도 산출 및 IPS 반영

● 자산운용지침 제10조 (허용위험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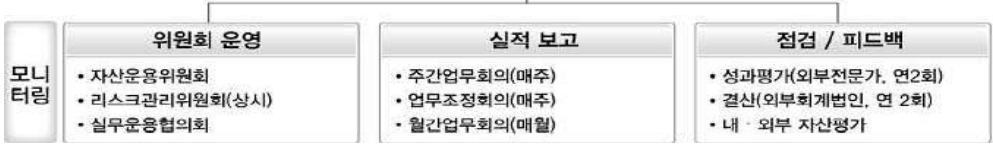
- 단기자금의 경우 12억원(0.5%), 중장기 자금 125억원(6.08%)으로 설정

2-3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에 관한 정의 및 허용손실폭 등 위험관리 체계 및 IPS 등에의 반영 근거자료

위험의 종류별 측정 및 관리체계

자산운용관련 위험관리 체계도

위험 유형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험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월별수지 분석 및 일일 자금계획에 의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상태 고려, 금융기관선정 입정기준 미달 채권 및 주식펀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월별, 분기별(측정/통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입점검 등 내부 통제 시스템 월별 수지 분석 및 일일 자금계획에 의한 운용
위험 관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수지분석을 통한 적정단기자금 규모 추정 자금수지예측을 통한 자금 보유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운용사별 예탁 한도 설정 은행 선정기준에 신용 등급 반영 채권·주식 편입종목 제한 금융시장 수시 모니터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VaR값의 한도 설정 및 관리 간접투자상품운용기준을 통한 수익률 제고방안 요구 등 수익증권 수익률 관리 체계적인 시장위험 관리를 위한 연기금투자자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조직 및 평가와 통제 조직을 분리 각 조직은 주요 의사결정 시 외부위원이 일정부분 이상 포함된 위원회 의견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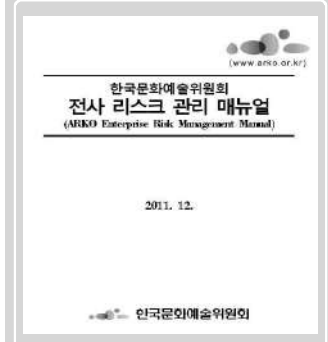
위험의 종류별 측정 및 관리방안

구분	세부내용								
시장위험 (Market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위험은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으로서 Value at Risk(VaR)로 측정/관리 투자자산별 허용위험수준의 설정 및 관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 설정</td> </tr> <tr> <td>금리</td> <td>■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 듀레이션¹⁾, 총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td> </tr> <tr> <td>환율</td> <td>■ 투자목적별 총 한도를 설정</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주식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 설정	금리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 듀레이션 ¹⁾ , 총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	환율	■ 투자목적별 총 한도를 설정
	구분	내용							
	주식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 설정							
금리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 듀레이션 ¹⁾ , 총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								
환율	■ 투자목적별 총 한도를 설정								
신용위험 (Credit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서 발행기관의 신용위험 및 거래기관의 신용위험은 거래대상 제한 및 총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해 관리 투자자산별 허용위험수준의 설정 및 관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채권</td> <td>■ 신용등급 BBB+ 이상 (담보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 이상)</td> </tr> <tr> <td>CP</td> <td>■ 신용등급 A2-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채권	■ 신용등급 BBB+ 이상 (담보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 이상)	CP	■ 신용등급 A2- 이상		
	구분	내용							
채권	■ 신용등급 BBB+ 이상 (담보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 이상)								
CP	■ 신용등급 A2- 이상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으로 기간별 자금수급의 예측을 통한 적정성 유동성 산출을 통해 관리 								
운영리스크 (Operation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험은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하여 운용조직과 Back office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담당자의 규정 준수여부 및 실물, 위탁자산 점검 등을 위험관리 전담조직인 정책기획부에서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2),3)} 								

1 듀레이션(Duration)

-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각각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현재가치화한 합을 채권의 가격으로 나눈 값
- 채권에 투자된 원금의 평균회수기간

2 전사리스크 관리매뉴얼



3 운영리스크의 정의

리스크 종류	정의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중대한 피해, 오류, 비효율이 발생할 상황
인력	직원의 부주의/고의로 중대한 피해, 오류, 부정, 비효율이 발생할 상황
정보기술	전산시스템 오류, 내부정보망 파괴, 전산바이러스 감염, 정보 유출 등

1 특수채

-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 통안채

-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은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국은행이 시장실세금리로 할 인발행하고 있는 채권으로, 3저 호황을 누리던 1987년부터 발행
- 통안증권은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해외부문 통화증발 등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된 정부기관채

3 전환사채

-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

4 FRN(변동금리부 채권)

- 지급이자율이 시중의 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5 ABS(자산유동화 증권)

-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되는 증권(Securities)

6 MBS(주택담보부증권)

-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한다.

위험의 종류별 관리 세부기준

시장리스크(Market Risk) 관리 세부기준

구분	세부내용																									
자산군분류	■ 자산군 분류 및 기준지수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자산</th> <th>관리방안</th> <th>기준지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주식(KOSPI, KOSDAQ)</td> <td>종합주가지수(KOSPI)</td> </tr> <tr> <td>국고채 1년이하</td> <td>■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①, 통안채②, 국고채 선물</td> <td>국고채지수(3개월~1년)</td> </tr> <tr> <td>국고채 1년이상</td> <td>■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td> <td>국고채지수(1년~2년)</td> </tr> <tr> <td>회사채 1년이하</td> <td>■ 회사채, 전환사채③,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채, CP, FRN④, ABS⑤, MBS⑥, CD선물</td> <td>회사채지수(3개월~1년)</td> </tr> <tr> <td>회사채 1년이상</td> <td>■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채, FRN, ABS, MBS, CD선물</td> <td>회사채지수(1년~2년)</td> </tr> </tbody> </table>		투자자산	관리방안	기준지수	주식	■ 주식(KOSPI, KOSDAQ)	종합주가지수(KOSPI)	국고채 1년이하	■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①, 통안채②, 국고채 선물	국고채지수(3개월~1년)	국고채 1년이상	■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국고채지수(1년~2년)	회사채 1년이하	■ 회사채, 전환사채③,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채, CP, FRN④, ABS⑤, MBS⑥, CD선물	회사채지수(3개월~1년)	회사채 1년이상	■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채, FRN, ABS, MBS, CD선물	회사채지수(1년~2년)						
	투자자산	관리방안	기준지수																							
	주식	■ 주식(KOSPI, KOSDAQ)	종합주가지수(KOSPI)																							
	국고채 1년이하	■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①, 통안채②, 국고채 선물	국고채지수(3개월~1년)																							
	국고채 1년이상	■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국고채지수(1년~2년)																							
	회사채 1년이하	■ 회사채, 전환사채③,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채, CP, FRN④, ABS⑤, MBS⑥, CD선물	회사채지수(3개월~1년)																							
회사채 1년이상	■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채, FRN, ABS, MBS, CD선물	회사채지수(1년~2년)																								
익스포저	■ 금융상품별 익스포저 산출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관리방안</th> <th>기준지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식</td> <td>■ Σ (보유주수 X 주가)</td> <td>(+)</td> </tr> <tr> <td>■ Σ (선물가 X 계약수 X 50만원)</td> <td>매수시(+), 매도시(-)</td> </tr> <tr> <td rowspan="2">국고채 1년이하</td> <td>■ Σ (종목별 시가평가액)</td> <td>(+)</td> </tr> <tr> <td>■ Σ (선물가/100 X 계약수 X 1억원)</td> <td>매수시(+), 매도시(-)</td> </tr> <tr> <td>국고채 1년이상</td> <td>■ Σ (종목별 시가평가액)</td> <td>(+)</td> </tr> <tr> <td rowspan="2">회사채 1년이하</td> <td>■ Σ (종목별 시가평가액)</td> <td>(+)</td> </tr> <tr> <td>■ Σ {계약수 X 5억원 X (100-유동수익률)/100}</td> <td>매수시(+), 매도시(-)</td> </tr> <tr> <td>회사채 1년이상</td> <td>■ Σ (종목별 시가평가액)</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관리방안	기준지수	주식	■ Σ (보유주수 X 주가)	(+)	■ Σ (선물가 X 계약수 X 50만원)	매수시(+), 매도시(-)	국고채 1년이하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 Σ (선물가/100 X 계약수 X 1억원)	매수시(+), 매도시(-)	국고채 1년이상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회사채 1년이하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 Σ {계약수 X 5억원 X (100-유동수익률)/100}	매수시(+), 매도시(-)	회사채 1년이상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구분	관리방안	기준지수																							
	주식	■ Σ (보유주수 X 주가)	(+)																							
		■ Σ (선물가 X 계약수 X 50만원)	매수시(+), 매도시(-)																							
	국고채 1년이하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 Σ (선물가/100 X 계약수 X 1억원)	매수시(+), 매도시(-)																							
	국고채 1년이상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회사채 1년이하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 Σ {계약수 X 5억원 X (100-유동수익률)/100}	매수시(+), 매도시(-)																								
회사채 1년이상	■ Σ (종목별 시가평가액)	(+)																								
변동성측정	■ 금융상품별 익스포저 산출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측정산식</th> </tr> </thead> <tbody> <tr> <td>일간변동성 (표준편차)</td> <td>■ 일간변동성(표준편차) = $\sqrt{\frac{\sum (\text{일간수익률} - \text{평균일간수익률})^2}{n}}$</td> </tr> <tr> <td>자산군 일간 VaR</td> <td>■ 일간VaR = 익스포저 × 일간변동성(표준편차) × 1.65</td> </tr> <tr> <td>포트폴리오 일간 VaR</td> <td>■ 포트폴리오 일간VaR = $VaR(VaR_{p_{day}}) = \sqrt{\sum_i \sum_j (VaR_i \times VaR_j \times \rho_{i,j})}$</td> </tr> <tr> <td>포트폴리오 연간 VaR</td> <td>■ 포트폴리오 연간VaR($VaR_{p_{day}}$) = $VaR_{p_{day}} \times \sqrt{250}$</td> </tr> <tr> <td>연간 허용위험한도</td> <td>■ 연간허용위험한도(VaR) = {$VaR_{p_{day}}$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평균치) + (연간VaR변동성(금액) × 1.65)} × 운용자금예상증가율</td> </tr> </tbody> </table>		구분	측정산식	일간변동성 (표준편차)	■ 일간변동성(표준편차) = $\sqrt{\frac{\sum (\text{일간수익률} - \text{평균일간수익률})^2}{n}}$	자산군 일간 VaR	■ 일간VaR = 익스포저 × 일간변동성(표준편차) × 1.65	포트폴리오 일간 VaR	■ 포트폴리오 일간VaR = $VaR(VaR_{p_{day}}) = \sqrt{\sum_i \sum_j (VaR_i \times VaR_j \times \rho_{i,j})}$	포트폴리오 연간 VaR	■ 포트폴리오 연간VaR($VaR_{p_{day}}$) = $VaR_{p_{day}} \times \sqrt{250}$	연간 허용위험한도	■ 연간허용위험한도(VaR) = { $VaR_{p_{day}}$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평균치) + (연간VaR변동성(금액) × 1.65)} × 운용자금예상증가율												
	구분	측정산식																								
	일간변동성 (표준편차)	■ 일간변동성(표준편차) = $\sqrt{\frac{\sum (\text{일간수익률} - \text{평균일간수익률})^2}{n}}$																								
	자산군 일간 VaR	■ 일간VaR = 익스포저 × 일간변동성(표준편차) × 1.65																								
	포트폴리오 일간 VaR	■ 포트폴리오 일간VaR = $VaR(VaR_{p_{day}}) = \sqrt{\sum_i \sum_j (VaR_i \times VaR_j \times \rho_{i,j})}$																								
	포트폴리오 연간 VaR	■ 포트폴리오 연간VaR($VaR_{p_{day}}$) = $VaR_{p_{day}} \times \sqrt{250}$																								
연간 허용위험한도	■ 연간허용위험한도(VaR) = { $VaR_{p_{day}}$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평균치) + (연간VaR변동성(금액) × 1.65)} × 운용자금예상증가율																									



- 신용리스크(Credit Risk) 관리 세부기준
 - 금융기관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투자한도 적용

구분	세부내용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금융기관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투자자산	관리방안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25), BIS자기자본비율(25), 총자산규모(20), 무수익여신비율(15), 총자산이익률(15) 등 5개 항목 	
	증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순자본비율(20), 자기자본비율(20), 총자산이익률(15), 부채비율(15), 총자산규모(15), 수익증권판매실적(15) 등 6개 항목 	
자산운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 5개항목의 재무안정성(35), BM대비 초과이익률 등 3개 항목의 운용성과(45), 운용전문인력수 등의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20) 		
등급별/개별기관별 투자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로 금융기관 신용위험 관리 ■ 개별기관 투자한도 관리로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제거 - 등급별 투자한도 		
	투자자산	등급별 투자한도	개별기관별 투자한도
	A	전체 운용금액의 40%이상	전체 운용금액의 20%이내
	B	전체 운용금액의 60%이내	전체 운용금액의 15%이내
	C	예탁 배제	예탁 배제

- 운용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

구분	세부내용	
운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상 주식 및 채권 등 모든 자산에 대해 직접운용 할 수 있으나, 운용인력 및 운용시스템 등의 기금여건 상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를 원칙으로 운용 → 관리의 효율성 추구 	
등급별·개별기관별 투자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시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시 연간자산운용계획에 간접투자 목표, 투자계획, 자금배분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시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손실한도, 성과측정 등이 명시된 운용 지침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투자대상자산	투자자산	개별상품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KOSDAQ시장 등록주식 ■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 옵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MMDA, RP 등 ■ CD, CP, 정기예금 등
투자제한자산	투자자산	개별상품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종목 ■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종목 ■ 관리종목, 화의 또는 워크아웃대상종목 ■ 기타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인 채권 ■ 신용평가등급 A2- 미만인 CP ■ 기타 기금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 집중투자에 대한 제한

구분	세부내용						
자산별 투자한도	<p>■ 자산별 투자한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 white;">투자자산</th> <th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 white;">투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채권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코스닥 투자한도 : 주식투자 가능 위탁자금 NAV의 30%이내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채권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td> </tr> </tbody> </table>	투자자산	투자한도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채권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코스닥 투자한도 : 주식투자 가능 위탁자금 NAV의 30%이내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채권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투자자산	투자한도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채권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코스닥 투자한도 : 주식투자 가능 위탁자금 NAV의 30%이내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채권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종목별 투자한도	<p>■ 종목별 투자한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 white;">투자자산</th> <th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 white;">투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 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 발행기관 자기 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가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td> </tr> </tbody> </table>	투자자산	투자한도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 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 발행기관 자기 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가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투자자산	투자한도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 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 발행기관 자기 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가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허용손실폭	<p>■ 허용손실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 white;">투자자산</th> <th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 white;">투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30%이상 하락시 10영업일 이내 매도함을 원칙 (다만, 유동성 등 타사유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보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3%이상 하락시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함을 원칙 (다만, 유동성 등 타사유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보고) </td> </tr> </tbody> </table>	투자자산	투자한도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30%이상 하락시 10영업일 이내 매도함을 원칙 (다만, 유동성 등 타사유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보고)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3%이상 하락시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함을 원칙 (다만, 유동성 등 타사유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보고)
	투자자산	투자한도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30%이상 하락시 10영업일 이내 매도함을 원칙 (다만, 유동성 등 타사유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보고)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3%이상 하락시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함을 원칙 (다만, 유동성 등 타사유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보고) 						

■ 위험에 관한 정의 및 허용손실폭 등 위험관리 체계 IPS 반영

- 자산운용지침 제14조 (투자대상자산)
 - 문화예술진흥기금 리스크관리지침에 투자제한자산 명시(주식형, 채권형, CP 등)
- 자산운용지침 제17조 (위험의 정의)
 - 위험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으로 정의
- 자산운용지침 제18조 (위험 종류별 관리방안)
 -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의 정의 및 위험종류별 관리방안 명시



②-③-4 전체자산, 단기자산, 중장기자산별운용자산별[또는 운용상품별] 기준수익률 산출기준 및 IPS 등에의 반영 근거자료

■ 기준수익률의 정의 산출 기준

● 기준수익률의 정의

- 기준수익률은 전술적 자산배분에 따른 각 운용자산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위험이 같거나 유사한 대체투자자산의 실현 수익률을 의미
- 기준수익률의 설정원칙인 대표성, 적정성, 측정성을 고려하여 설정

● 기준수익률의 산출원칙

구분	세부내용
대표성 (representative)	■ 투자자산별 시장대표 수익률 선정 및 운용전략, 투자상품 등을 반영 하여 기준수익률의 세분화
적정성 (appropriate)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운용전략, 투자상품 등을 반영, 사전적으로 설정 (자산운용위원회 심의①)
측정성 (measurable)	■ 전문평가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 및 기준수익률로서의 명확한 비교기준 제시를 위해 개선권고인② 반영 노력 지속

● 기준수익률의 산출방식

-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을 설정 후, 자산별 투자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수익률 산출
 -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해당 투자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가진 대표적 투자자산 또는 금융상품의 운용수익률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 : 자산배분안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 투자비중

■ 2012년도 자산유형별 기준수익률

● 기준수익률의 세분화를 통한 체계 개선

- 기준수익률에 대한 기금평가단의 현실에 부합한 세분화 요구에 따라 자산군별로 세분화 → 성과의 정밀한 요인분해③를 통한 차기운용에의 환류
- 해외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외주식형 기준수익률의 분리 적용 → MSCI ACWI④
- 대체투자의 경우 현재 회사채(3년물) BBB+ 금리를 기준지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자산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 개선

● 2012년도 자금유형별 기준수익률 설정

자산구분	상세구분	기준수익률
단기자산	현금성자산	■ MMF 평균 수익률
	유동성	■ 확정금리 실적배당 ■ 정기예금 6개월 ~ 1년 가중평균 수신금리 ■ KIS채권종합지수(6개월~1년)
중장기자산	확정금리	■ 정기예금 1개월 ~ 2년 가중평균 수신금리
	채권	■ KIS채권종합지수(1년~2년)
	대체	■ (5년평균, 실질GDP+CPI)
	주식	■ 해외 ■ MSCI ACWI ■ 국내 ■ KOSPI

■ 자산유형별 기준수익률 IPS 반영

● 자산운용지침 제27조 (성과평가 기준)

- 기준수익률의 설정원칙인 대표성, 적정성, 측정성을 고려하여 설정

① 자산운용위원회 운영기준

■ 제3조(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 위원회는 법 제76조(자산운용 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와 관련한 사전 심의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외부평가의 정책제언



③ 성과요인분해

공채(국고채) 자산배분으로 분석

연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④ MSCI ACWI

- MSCI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약자로 미국 모건 스탠리 증권이 1986년 캐피털인터내셔널사를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칭이며, MSCI지수는 이 회사에서 작성해 발표하는 지수
- MSCI ACWI(All Country World Index)는 전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한 지수



ARTISTREE



3

자산배분의 적정성

내부지침의 성실한 이행으로 자산배분의 적정성 제고

- 금융기관선정지침에 따른 주기적인 운용 금융기관 평가 실시
 - ↳ 운용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기관선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적정 유동성규모 산출규모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전략적자산배분(안) 도출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등 대안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자산 다각화 노력 경주
 - ↳ 국내외 세미나 참석 및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③ ① 자산운용상품 선정의 적정성

③-①-1

단기자산, 중장기자산의 만기별 자산배분 및 거래 금융기관 선정 기준, 금융기관별 자금배분기준 및 IPS 등에의 반영 근거자료

■ 자산유형별 자산배분 기준

- 단기자산 만기배분 원칙
 - 유동성 추정모델을 활용한 산출결과를 토대로 12개월간의 누적필요자금을 단기자산으로, 수익성을 위해 잉여자금을 중장기자산으로 배분(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①)
 - 현금성자금 기초잔액, 당월수입, 월중 운용자금 만기도래액의 합이 당월 지출 및 월별 적정유동성 합을 초과하도록 만기배분 실시
 - 자금 지급일정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
 - 지급일정 확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 상환자금 등)
 - 자산부채 만기일치 전략
 - 지급일정 미확정자금
 - 단기금리 전망 및 유동성 예측의 안정성에 따라 만기조정
- 단기자산의 배분계획
 - 기간별 유동성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자산에 대한 만기배분을 실시하고 정기적 자금수지 파악을 통해 만기배분 조정

구분	세부내용
단기자산 배분 및 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성자산에 적정유동성 1개월에 해당하는 163억 원 배분② - 단기자산의 운용기간은 1개월 이내의 MMF, MMDA 및 1년 미만의 확정 금리상품, 단기수익증권 등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연간 적정유동성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기금(자산)운용계획 수립시, 유동성 Target Level로 설정한 12개월 이내에서 단기자산의 만기배분을 실시하고, 추가 월별 필요유동성은 잉여 유동성 및 중장기자산 만기도래 금액으로 충당

- 중장기 자산의 만기배분
 - 적정유동성 규모산출을 통한 단기자금 규모 확정 후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전술적 허용범위 내에서 나머지 자금을 중장기로 운용

① 2012년도 전략적자산배분(안)

구분		비중(%)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6.28
	유동성자금	10.63
단기자금 계		16.91
중장기 자금	주식형	6.75
	채권형	67.29
	대체형	9.05
중장기자금 계		83.09
전체		100.00

② 적정유동성 규모

구분	현금성자금	유동성자금
1월	-133	-247
2월	-133	-247
3월	0	-108
4월	-22	-136
5월	0	-54
6월	-163	-276
7월	-150	-263
8월	-162	-275
9월	-100	-213
10월	-105	-219
11월	-96	-209
12월	0	-5

[1] 자산운용정책 (계획)

① 2012년 거래금융기관 Pool

등급	은행
A	산업은행 등 5개사
B	국민은행 등 7개사
C	수협 등 5개사

등급	증권사
A	대우증권 등 12개사
B	JP모건 등 24사
C	유화증권 등 18개사

등급	자산운용사
A	한국투자신용 등 17개사
B	JP모건운용 등 24개사
C	LS자산운용 등 17개사

②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 금융기관 선정기준

- 장기적으로 위탁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운용능력이 검증된 우수 금융기관 중심 배분①
- 금융기관별 자금배분은 운용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배분하되, 운용성과 등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운용집중 방지를 위해 개별 운용사별 운용한도 설정운영
- 금융기관별 선정기준

[은행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대상기관	■ 금융감독원에 등록 및 신고의 의무가 있고 평가자료가 공시되고 있는 국내/외 시중은행														
평가절차	■ 금융감독원② 및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 평가 → 평가순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														
평가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내신용등급</td> <td>AAA(25점), AA(20점), A(15점)</td> <td rowspan="5">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td> </tr> <tr> <td>BIS자기자본비율</td> <td>25</td> </tr> <tr> <td>총자산규모</td> <td>20</td> </tr> <tr> <td>무수익여신비율</td> <td>15</td> </tr> <tr> <td>총자산이익률</td> <td>15</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국내신용등급	AAA(25점), AA(20점), A(15점)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BIS자기자본비율	25	총자산규모	20	무수익여신비율	15	총자산이익률	15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국내신용등급	AAA(25점), AA(20점), A(15점)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BIS자기자본비율	25														
총자산규모	20														
무수익여신비율	15														
총자산이익률	15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배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구간별로 점수 부여 ■ 항목별 배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표준화 점수법을 사용하여 배점 														

[투자중개업자(판매사)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대상기관	■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고 집합투자증권 등 간접투자기구를 위탁판매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증권사																
평가절차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③, 신용평가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 평가 → 평가순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																
평가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영업용순자본비율</td> <td>20</td> <td rowspan="6">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td> </tr> <tr> <td>자기자본비율</td> <td>20</td> </tr> <tr> <td>총자산이익률</td> <td>15</td> </tr> <tr> <td>부채비율</td> <td>15</td> </tr> <tr> <td>총자산규모</td> <td>15</td> </tr> <tr> <td>수익증권 판매실적</td> <td>15</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영업용순자본비율	20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자기자본비율	20	총자산이익률	15	부채비율	15	총자산규모	15	수익증권 판매실적	15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고															
영업용순자본비율	20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자기자본비율	20																
총자산이익률	15																
부채비율	15																
총자산규모	15																
수익증권 판매실적	15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배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구간별로 점수 부여 ■ 항목별 배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표준화 점수법을 사용하여 배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대상기관	■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자산운용회사 중 집합투자증권 및 MMF 자금을 운용하고 3년 이상 운용성과가 있는 국내/외 자산운용사																																												
평가절차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운용성과 자료를 활용① → 평가순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평가항목</th> <th colspan="2">구분</th> <th rowspan="2">배점비율</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세부평가항목</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재무안정성 (35)</td> <td>자기자본비율</td> <td></td> <td>5</td> <td rowspan="5">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td> </tr> <tr> <td>자기자본이익률</td> <td></td> <td>5</td> </tr> <tr> <td>최근3년간 순이익</td> <td></td> <td>10</td> </tr> <tr> <td>부채비율</td> <td></td> <td>5</td> </tr> <tr> <td>총 수탁고</td> <td></td> <td>10</td> </tr> <tr> <td rowspan="3">운용성과 (45)</td> <td>BM대비 초과수익률</td> <td></td> <td>15</td> </tr> <tr> <td>RRAR(유형평균)</td> <td></td> <td>15</td> </tr> <tr> <td>과거 기금운용실적</td> <td></td> <td>15</td> </tr> <tr> <td rowspan="3">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20)</td> <td>운용전문 인력수</td> <td></td> <td>5</td> </tr> <tr> <td>전문인력 평균경력</td> <td></td> <td>10</td> </tr> <tr> <td>1인당 펀드수</td> <td></td> <td>5</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구분		배점비율	비고	세부평가항목		재무안정성 (35)	자기자본비율		5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자기자본이익률		5	최근3년간 순이익		10	부채비율		5	총 수탁고		10	운용성과 (45)	BM대비 초과수익률		15	RRAR(유형평균)		15	과거 기금운용실적		15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20)	운용전문 인력수		5	전문인력 평균경력		10	1인당 펀드수		5
	평가항목		구분				배점비율	비고																																					
		세부평가항목																																											
	재무안정성 (35)	자기자본비율		5	총점 기준으로 등급구분 (A,B,C 등급)																																								
		자기자본이익률		5																																									
		최근3년간 순이익		10																																									
		부채비율		5																																									
		총 수탁고		10																																									
	운용성과 (45)	BM대비 초과수익률		15																																									
RRAR(유형평균)			15																																										
과거 기금운용실적			15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20)	운용전문 인력수		5																																										
	전문인력 평균경력		10																																										
	1인당 펀드수		5																																										
평가방법	■ 항목별 배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구간별로 점수 부여 ■ 항목별 배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표준화 점수법을 사용하여 배점																																												

① 2012년도 운용사 선정결과

운용사	순위	자산규모(백만원)	ROIC
한국투자증권	1	10,000	20.11
삼성투자증권	2	10,000	19.11
미래에셋증권	3	10,000	18.99
신협투자증권	4	10,000	18.95
신한투자증권	5	10,000	18.89
우리투자증권	6	10,000	18.88
KB투자증권	7	10,000	18.87
농협투자증권	8	10,000	18.86
하나투자증권	9	10,000	18.85
메리츠투자증권	10	10,000	18.84
우리금융투자증권	11	10,000	18.83
신원투자증권	12	10,000	18.82
미래에셋자산투자증권	13	10,000	18.81
삼성자산투자증권	14	10,000	18.80
한국투자자산투자증권	15	10,000	18.79
신협자산투자증권	16	10,000	18.78
신한자산투자증권	17	10,000	18.77
우리자산투자증권	18	10,000	18.76
KB자산투자증권	19	10,000	18.75
농협자산투자증권	20	10,000	18.74
하나자산투자증권	21	10,000	18.73
메리츠자산투자증권	22	10,000	18.72
우리금융자산투자증권	23	10,000	18.71
신원자산투자증권	24	10,000	18.70
미래에셋자산투자증권	25	10,000	18.69
삼성자산투자증권	26	10,000	18.68
한국투자자산투자증권	27	10,000	18.67
신협자산투자증권	28	10,000	18.66
신한자산투자증권	29	10,000	18.65
우리자산투자증권	30	10,000	18.64
KB자산투자증권	31	10,000	18.63
농협자산투자증권	32	10,000	18.62
하나자산투자증권	33	10,000	18.61
메리츠자산투자증권	34	10,000	18.60
우리금융자산투자증권	35	10,000	18.59
신원자산투자증권	36	10,000	18.58
미래에셋자산투자증권	37	10,000	18.57
삼성자산투자증권	38	10,000	18.56
한국투자자산투자증권	39	10,000	18.55
신협자산투자증권	40	10,000	18.54
신한자산투자증권	41	10,000	18.53
우리자산투자증권	42	10,000	18.52
KB자산투자증권	43	10,000	18.51
농협자산투자증권	44	10,000	18.50
하나자산투자증권	45	10,000	18.49
메리츠자산투자증권	46	10,000	18.48
우리금융자산투자증권	47	10,000	18.47
신원자산투자증권	48	10,000	18.46
미래에셋자산투자증권	49	10,000	18.45
삼성자산투자증권	50	10,000	18.44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내용	
재무건 전성 (35)	자기자본비율	5	■ 300% 이상(5), 200% 이상(4), 100% 이상(3), 100% 미만(1)
	자기자본이익률	5	■ 20% 이상(5), 10% 이상(3), 5% 이상(2), 5% 미만(1)
	최근 3년간 순이익	10	■ 최근3년 흑자(10), 최근2년 흑자(8), 최근1년 흑자(6), 기타(4)
	부채비율	5	■ 50% 미만(5), 100% 미만(4), 150% 미만(3), 150% 이상(1)
	총 수탁고	10	■ 혼합형, 주식형 - 5,000억이상(10), 3,000억이상(8), 4,000억이상(6), 2,000억미만(4) ■ 채권형 - 1조 이상(5점), 7,000억이상(4점), 4,000억이상(3점), 2,000억미만(1점)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20)	운용전문 인력수	5	■ 10명이상(5), 7명이상(3), 5명이상(1), 기타(0점)
	업계평균경력	10	■ 표준화 점수법 사용
	1인당 운용규모	5	■ 표준화 점수법 사용
과거 운용성과 (45)	BM대비 초과수익률	15	■ 표준화 점수법 사용
	RRAR(유형평균)	15	■ 표준화 점수법 사용
	과거 기금운용실적	15	■ 탁월(15), 양호(10), 보통(5), 미흡(0), 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5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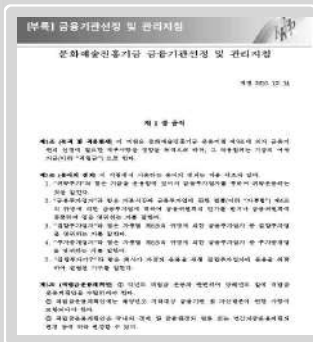
■ 등급별/개별기관별 투자한도

구분	세부내용	투자한도	
		등급별한도	개별기관별 한도
A	평가순위 30% 이내	총 투자액의 40% 이상	총 투자액의 20% 이내
B	평가순위 30%~70% 이내	총 투자액의 60% 이내	총 투자액의 15% 이내
C	평가순위 70% 초과	예탁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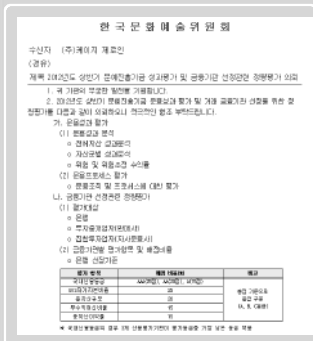
■ 금융기관 선정기준, 금융기관별 자금배분기준 IPS 등 반영

- 자산운용지침 제22조 (외부위탁기관 및 상품의 선정원칙)
 - 금융기관 및 상품선정 시 금융기관 및 상품의 선정기준 및 근거를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①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활용
 - 객관적인 데이터 및 근거확보를 위해 Pool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②,③
- 자산운용지침 제23조 (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방법)
 - 제1금융권의 확정부상품 예탁대상인 은행은 연간선정기준으로 국내신용등급(25%), BIS자기자본비율(25%), 총자산규모(20%), 무수익여신비율(15%), 총자산이익률(15%)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2금융권의 상품투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연간 선정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20%), 자기자본비율(20%), 총자산이익률(15%), 부채비율(15%), 총자산규모(15%), 수익증권판매실적(15%)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재무안정성(35%), 운용성과(45%),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2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 (은행의 선정시기)
 - 은행이 3월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정량데이터 취합을 위해 6월~7월 사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
-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 (은행의 선정절차)
 - 은행 선정은 [은행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된 은행에 대하여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
-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제6조 (집합투자업자의 선정시기)
 - 집합투자업자가 3월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정량데이터 취합을 위해 6월~7월 사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
-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 (집합투자업자의 선정절차)
 - 집합투자업자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전체 집합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
-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제8조 (투자중개업자의 선정시기)
 - 투자중개업자가 3월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정량데이터 취합을 위해 6월~7월 사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
-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 (투자중개업자의 선정절차)
 - 집합투자업자의 선정은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전체 투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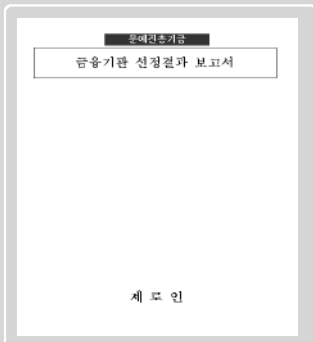
①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② 외부평가기관 정량평가 의뢰



③ 2012년 금융기관 선정결과



3-1-2 단기자산, 중장기자산의 금융상품 선정기준 및 IPS 등에의 반영 근거자료

■ 자산유형별 금융상품 선정기준

● 단기금융상품 선정 및 관리

구분	세부내용												
선정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지침』 등 관련 제규정 상의 투자원칙 및 연간자산운용계획 상의 자금배분기준 등에 의거하여 투자금융상품 선정 												
금융상품 선정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자금의 경우 예비 유동성 확보자금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가장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안정성과 유동성이므로 안정성과 유동성 기초위에서 수익성 고려 투자대상 및 적격기준의 구체적 열거방식을 통하여 부적격기준 상품에의 투자 방지 연간기금운용계획상의 자금배분에 따른 투자비중 및 운용전략 준수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금융기관별 운용대상 자산종목의 운용내역을 분석하고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상품 선정 정기예금 등과 같은 확정금리상품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동일 만기구조를 가진 상품 중 제시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정② 수익증권 등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주가 및 금리 등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되, 안정성 기반 하에 기준수익률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품 선정 <p style="text-align: center;">[단기금융상품 선정시 고려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자산구분</th> <th>고려내용 및 투자제한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MMDA, MMF 등</td> <td>환매성 및 수익성</td> </tr> <tr> <td>정기예금, CD, RP 등</td> <td>금융기관 평가에 따른 적격 금융기관 중 수익성 고려</td> </tr> <tr> <td>CP</td> <td>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A2- 이상)</td> </tr> <tr> <td>국공채</td> <td>특별한 제한사항 없음</td> </tr> <tr> <td>회사채</td> <td>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BBB+ 이상)</td> </tr> </tbody> </table>	자산구분	고려내용 및 투자제한 사항	MMDA, MMF 등	환매성 및 수익성	정기예금, CD, RP 등	금융기관 평가에 따른 적격 금융기관 중 수익성 고려	CP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A2- 이상)	국공채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	회사채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BBB+ 이상)
자산구분	고려내용 및 투자제한 사항												
MMDA, MMF 등	환매성 및 수익성												
정기예금, CD, RP 등	금융기관 평가에 따른 적격 금융기관 중 수익성 고려												
CP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A2- 이상)												
국공채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												
회사채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BBB+ 이상)												

● 중장기금융상품 선정 및 관리

구분	세부내용
선정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지침』 등 관련 제규정 상의 투자원칙 및 연간자산운용계획 상의 자금배분기준 등에 의거하여 투자금융상품 선정
금융상품 선정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탄력적 운용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실무협의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금융시장 동향 및 타기금 자금집행 상황 등 모니터링 (역할 및 기능 자산운용지침에 명시③) 각종 세미나 및 교육 활용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전략, 투자자산별 비중 허용위험한도에 부합한 상품선정(상품선정협의회④) 투자대상 및 적격기준의 구체적 열거방식을 통하여 투자제한상품에의 투자방지 금융시장 전망을 반영하여 전술적 허용범위내 자산별 투자비중 조정 및 세부 투자상품군 선정 ⇒ 전술적 자산배분

① 문예진흥기금 운용지침

제10조(금융상품의 선정)
 ① 적립금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의 선정은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상품선정시 자금의 분류별(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로 금융상품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준용하되, 연간 자금운용계획, 월간자금운용계획 투자비중 등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금리조사표

국문근로회 금융상품안내
(2023년 12월 31일 현재)

1. 국민수화권기금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이상	2년	3년	4년	5년
현재수익률	0.12%	0.15%	0.18%	0.20%	0.22%	0.25%	0.28%	0.30%	0.32%	0.35%
2. 양도소득공제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이상	2년	3년	4년	5년
현재수익률	0.12%	0.15%	0.18%	0.20%	0.22%	0.25%	0.28%	0.30%	0.32%	0.35%
3. MMF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이상	2년	3년	4년	5년
현재수익률	0.12%	0.15%	0.18%	0.20%	0.22%	0.25%	0.28%	0.30%	0.32%	0.35%
4. 양도소득공제(MMF, MMF)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이상	2년	3년	4년	5년
현재수익률	0.12%	0.15%	0.18%	0.20%	0.22%	0.25%	0.28%	0.30%	0.32%	0.35%
MMF(양도소득공제)	1(투자비중)									

국문근로회 구도행차연타지정점(2023)

③ 자산운용지침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⑥ 운용실무협의회의
 운용실무협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시장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사, 운운사, 평가사 각 1인 및 기금운용 담당인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금융시장상황 검 및 분석
 2. 월별 예치상품에 대한 방향 결정
 3. 타기관 자금흐름 동향 파악

④ 상품선정협의회

-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3인의 선정위원들이 평가항목별 반영비율 및 배에 근거하여 수 부여
- 심사위원의 평균수가 가장 높은 상품에 예약 하는 방식으로 운영

[1] 자산운용정책 (계획)

1 월간 펀드검 실시

구분	주요사항
대상	■ 설정후 3개월 이상 경과 한 펀드
검사항	■ 누적 초과수익률 ■ 절대수익률 ■ 위험수준
조치유형	■ 주의, 경고, 해지
주기	■ 매월말
비고	■ 펀드평가 지원시스템 (FMS) 활용

2 월간 펀드평가 보고서



3 펀드평가사 운용지원시스템



4 자산운용지침

- 제8조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② 자산운용위원회
 3. 자산운용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국가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자와 관련된 사전 심의 사항

● 증장기금융상품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 선정 및 평가에 따른 적격 운용사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전망 반영, 주식 편입한도 및 운용스타일 결정 (주식액티브형, 인덱스형, 배당형, 공모주 등) ■ 최근 운용사 운용성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펀드점검 결과 반영^① -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월간펀드 평가보고서 활용^② - 펀드평가사 운용지원시스템 활용^③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등 무위험자산 중심의 만기보유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신용등급 BBB+ 이상) ■ 채권형수익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 매칭 펀드 등 만기매칭형 구조(신용등급 A2- 이상) ■ 최근 운용사 운용성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월간펀드 평가보고서 및 운용사 기간별/유형별 수익률 점검 												
해외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위험에 대한 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계약을 통한 환위험 헤지 ■ 시장위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간접 투자 및 ETF 투자로 시장위험 최소화 추구 ■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 필수^④ 												
대체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고려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자산구분</th> <th>고려내용 및 투자제한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MMDA, MMF 등</td> <td>■ 환매성 및 수익성</td> </tr> <tr> <td>정기예금, CD, RP 등</td> <td>■ 금융기관 평가에 따른 적격 금융기관 중 수익성 고려</td> </tr> <tr> <td>CP</td> <td>■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A2- 이상)</td> </tr> <tr> <td>국공채</td> <td>■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td> </tr> <tr> <td>회사채</td> <td>■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BBB+ 이상)</td> </tr> </tbody> </table>	자산구분	고려내용 및 투자제한 사항	MMDA, MMF 등	■ 환매성 및 수익성	정기예금, CD, RP 등	■ 금융기관 평가에 따른 적격 금융기관 중 수익성 고려	CP	■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A2- 이상)	국공채	■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	회사채	■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BBB+ 이상)
자산구분	고려내용 및 투자제한 사항												
MMDA, MMF 등	■ 환매성 및 수익성												
정기예금, CD, RP 등	■ 금융기관 평가에 따른 적격 금융기관 중 수익성 고려												
CP	■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A2- 이상)												
국공채	■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												
회사채	■ 안정성 및 수익성 (신용등급 BBB+ 이상)												

참고 운용실무협의회

구분	세부내용
목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무협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시장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기금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위한 자문 기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등을 주제로 삼아 여러 관점에서 논의하고 시장흐름 예측 ■ 월별 예치상품에 대한 방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황 분석을 토대로 월별 만기도래 상품에 대하여 제약조건을 고려, 현 시점에서 가장 투자 적합한 상품군 선정(주식, 채권, 확정금리상품, 대체투자 등) ■ 타 기관 자금흐름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로부터 타 기관들의 현재 자금집행 현황 등을 파악
개최주기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주기 : 월 1회 (매월 중순 개최) ■ 협의회 구성 : 판매사, 운용사, 평가사 각 1인, 내부 기금운용역 2인, ■ 임기 : 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유 발생 시 교체 가능

■ 금융상품 선정절차

- 각 금융기관별로 운용대상 자산의 투자정보 및 제안서①를 수집, 분석하여 유동성 및 안정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선

[금융상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단계	세부내용
제안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POOL내에 있는 투자적격 판매사로부터 적격 운용사의 상품와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제안서 접수 ■ 자금집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격 판매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공고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하는 제안서 분에 한하여 1차 심사 실시
1차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역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1차 스크리닝 ■ 연간기금운용계획 상의 해당유형 계획비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 상의 자산배분과의 차이 존재 여부 확인 ■ 기관별, 상품별 집중예치도 현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개별한도 및 등급한도 점검 ■ 수익성제고를 위한 제시수익률 현황 (위험대비 수익성 평가)
2차심사② 및 자금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선정협의회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심사 통과 판매사를 대상으로 해당 운용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 - 시장상황 및 내부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선정③

참고 상품선정협의회

구분	세부내용
목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장상황 및 이슈 등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상품을 선정하는 협의기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품선정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선정 최종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사 및 운용사 POOL의 '예탁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 받은 상품을 기금운용역이 1차 스크리닝하고 '상품선정협의회' 에서 최종 심의 ■ 2차 구술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선발 판매사 및 운용사의 해당 마케팅팀 또는 매니저로부터 직접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브리핑 받고 최종평가 실시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상품선정의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 상품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개최주기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무협의회로부터 구체적 유형의 자금집행 결정 시 ■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내부 인력 3인으로 구성하되 (본부장, 부장장, ,운용과 관련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내부위원) 사안에 따라 추가 구성 가능

① 금융상품 제안서



② 2차 구술심사 심사항목

평가 항목	세부고려항목	
	항목	반영 배
운용 성과	BM대비 초과수익률	6
	RRAR	8
	운용실적	6
인력/조직	운용전문인력수	3
	업계평균경력	3
	1인당 운용규모	4
상품 구조	수익구조의단순성	30
	위험최소화 근거	30
재무 건정 성	자기자본비율	2
	자기자본이익율	2
	최근 3년간순이익	2
	부채비율	2
	총 수탁고	2

③ 최종결과 수표

3-1-3

단기자산, 중장기자산의 만기도래 전 환매 및 환매 후 상품 교체 정책, 만기도래시 상품 재투자 기준 및 IPS 등에서의 반영 근거자료

■ 투자상품 중도환매 기준 및 재투자 기준

- 만기도래 상품 재투자 기준
 - 만기도래 상품의 재투자는 투자 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예치 금융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단기자금의 경우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중장기자금의 경우 안정성 기반 하에 수익성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투자 상품의 수익성과 상품별 유동성을 평가하여 결정
 - 거래 금융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별 및 상품별로 분산 재투자
 - 2012년은 여유자금 운용의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추구를 위하여 유동성확보를 위한 투자이외의 만기도래 상품은 모두 연기금투자물에 예치①

● 운용성과에 의한 관리기준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BM초과 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기 : 매분기말 ■ 평가방법 : (㉓ × 50%) + (㉔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㉓ 평가일 기준 최근 2년 BM초과 수익률 ㉔ 평가일 기준 최근 1년 BM초과 수익률 ※ 단, 해당 기간 운용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일 이후 BM초과 수익률로 반영 ■ 평가대상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동일 운용유형 내 평가대상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설정시기별 운용성과를 합산하여 평가 ※ "BM 초과수익률"은 측정기간 누적수익률을 사용하고,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운용사 평가등급 및 조치사항(자금위탁, 변경위탁, 자금회수 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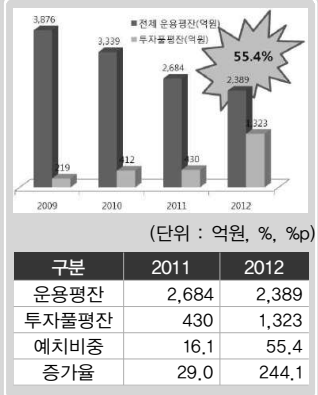
평가항목	세부내용	조치사항
S	■ BM을 상회하고, 평가순위 상위 20%	■ 추가위탁
A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21%~50%	
B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51%~100%	■ 위탁자금 유지
C	■ BM 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② ■ 위탁자금 50%이내 회수가능
D	■ 2분기 연속 BM 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 위탁자금 전액 회수가능

※ 자금위탁 및 자금회수는 분기별 평가등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시장상황,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이익실현, 위탁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조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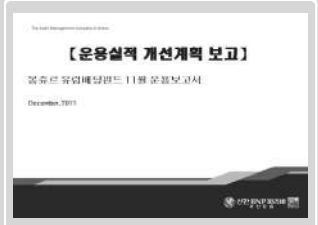
- 위탁자산 평가등급 및 조치사항(수익률 저조펀드 관리)

평가항목	세부내용	조치사항
S	■ BM을 상회하고, 평가순위 상위 20%	
A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21%~50%	
B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51%~100%	
C	■ BM 하회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D	■ 2분기 연속 BM 하회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① 2012년 연기금투자물 예치현황



② 운용실적 개선계획 보고





■ 자산유형별 만기도래 전 환매정책, 만기도래시 상품 재투자 기준 IPS 등 반영

● 자산운용지침 제24조 (투자자산의 중도회수 및 재투자기준)

- 운용상품의 만기와는 별도로 해당 상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또는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교체투자가 수익률제고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상품을 중도에 해지/회수조치 가능
-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상 위탁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수준 등 운용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용수익률 저조 펀드 등에 대하여 관련기준에 의해 적절한 조치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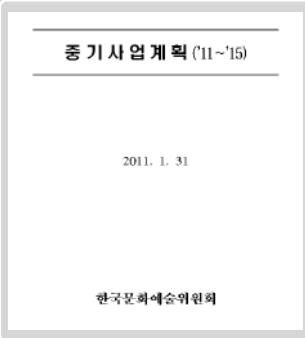
[표4. 자금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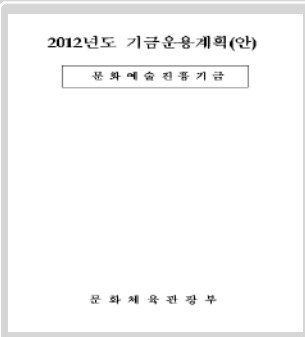
번호	금융기관	상품명	운용개시일	운용금액	이자수취일	이자수입액	만기일	만기회수금액	평잔	수익률(연)	교체여부	재운용기관	재운용상품	교체사유
1	기업은행	중금채	'11.01.11	5,000	'12.01.12	211	'12.01.12	5,211	157	4.07%	○	삼성자산	MMF	투자물
2	농협	정기예금	'11.01.11	5,000	'12.01.12	211	'12.01.12	5,211	157	4.07%	○	삼성자산	MMF	투자물
3	삼성자산	MMF	-	2,000	'12.01.20	9	-	2,009	3,868	3.29%	-	-	-	사업비대체
3	신한금융	부동산펀드	'08.03.17	3,548	'12.01.31	-36	-	3,512	2,082	-53.23%	○	삼성자산	MMF	투자물
4	삼성자산	MMF	-	2,000	'12.02.16	7	-	2,007	3,868	3.29%	-	-	-	사업비대체
5	삼성자산	MMF	-	2,000	'12.02.29	89	-	2,009	3,868	3.29%	-	-	-	사업비대체
6	신영증권	파생상품	'07.06.28	13,500	'11.08.25	370	'11.08.25	16,700	2,681	155.01%	○	삼성자산	국공채형	투자물
7	우리은행	정기예금	'11.03.07	5,000	'12.03.07	227	'12.03.07	5,227	4,174	4.46%	X	우리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제고
8	국민은행	정기예금	'11.03.07	5,000	'12.03.12	231	'12.03.12	5,190	1,010	4.48%	X	국민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제고
9	삼성자산	MMF	-	2,000	'12.03.21	13	-	2,013	3,868	3.29%	-	-	-	사업비대체
10	삼성자산	MMF	-	3,000	'12.03.28	21	-	3,021	3,868	3.29%	-	-	-	사업비대체
11	삼성자산	MMF	-	2,000	'12.04.05	13	-	2,013	3,868	3.29%	-	-	-	사업비대체
12	국민은행	정기예금	'11.10.04	5,000	'12.04.06	99	'12.04.06	5,099	1,331	3.87%	X	국민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제고
13	삼성자산	MMF	-	1,000	'12.04.10	7	-	2,007	3,868	3.29%	-	-	-	사업비대체
14	신한금융	부동산펀드	'08.03.17	2,973	'12.04.13	-1,973	-	1,000	2,082	-53.23%	○	삼성자산	MMF	투자물
15	기업은행	중금채	'11.04.13	10,000	'12.04.13	440	'12.04.13	10,440	2,921	4.23%	○	삼성자산	국공채형	투자물
16	삼성자산	MMF	-	2,000	'12.04.17	5	-	2,005	3,868	3.29%	-	-	-	사업비대체
17	삼성자산	국공채형	-	5,000	'12.04.25	183	-	2,183	94,896	4.39%	-	-	-	사업비대체
18	우리은행	정기예금	'11.05.02	5,000	'12.05.02	446	'12.05.02	5,446	3,457	4.33%	○	삼성자산	국공채형	투자물
19	우리은행	정기예금	'11.11.08	5,000	'12.05.08	96	'12.05.08	5,010	1,770	3.84%	X	우리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제고
20	삼성자산	MMF	-	2,000	'12.05.17	6	-	2,006	3,868	3.29%	-	-	-	사업비대체
21	삼성자산	MMF	-	2,000	'12.05.23	4	-	2,004	3,868	3.29%	-	-	-	사업비대체
22	삼성자산	MMF	-	700	'12.06.15	3	-	2,003	3,868	3.29%	-	-	-	사업비대체
23	삼성자산	국공채형	-	2,000	'12.06.20	91	-	2,091	94,896	4.39%	-	-	-	사업비대체
24	삼성자산	국공채형	-	3,000	'12.06.29	132	-	2,131	94,896	4.39%	-	-	-	사업비대체
25	삼성자산	국공채형	-	2,338	'12.07.04	132	-	2,201	94,896	4.39%	-	-	-	사업비대체
26	삼성자산	MMF	-	2,500	'12.07.25	4	-	2,504	94,896	4.33%	-	-	-	사업비대체
27	삼성자산	국공채형	-	3,000	'12.08.08	40	-	3,240	94,896	4.39%	-	-	-	사업비대체
28	신한금융	부동산펀드	'08.03.17	1,877	'12.08.16	-1,177	-	700	2,082	-53.23%	○	삼성자산	MMF	투자물
29	삼성자산	MMF	-	900	'12.08.31	2	-	902	3,868	3.29%	-	-	-	사업비대체
30	삼성자산	국공채형	-	2,112	'12.09.20	31	-	2,143	94,896	4.39%	-	-	-	사업비대체
31	국민은행	정기예금	'12.03.06	5,000		96	'12.10.08	5,096	2,552	3.80%	○	삼성자산	국공채형	투자물
32	삼성자산	MMF	-	1,000	'12.10.17	0,9	-	1,000	3,868	3.29%	-	-	-	사업비대체
33	삼성자산	MMF	-	2,000	'12.10.29	3	-	2,003	3,868	3.29%	-	-	-	사업비대체
34	우리은행	정기예금	'12.05.08	5,000	'12.11.08	97	'12.11.05	5,097	2,538	3.86%	○	삼성자산	국공채형	투자물
35	삼성자산	MMF	-	300	'12.11.21	1	-	301	3,868	3.29%	-	-	-	사업비대체
36	삼성자산	MMF	-	2,000	'12.12.03	8	-	2,008	3,868	3.29%	-	-	-	사업비대체
	삼성자산	MMF	-	3,000	'12.12.14	8	-	3,008	3,868	3.29%	-	-	-	사업비대체
	삼성자산	MMF	-	1,600	'12.12.21	5	-	1,605	3,868	3.29%	-	-	-	사업비대체
	삼성자산	국공채형	-	5,000	'12.12.26	108	-	5,108	94,896	4.39%	-	-	-	사업비대체

3 ② 중장기자산 자산배분의 적정성

1 중기사업계획('11~' 15)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평균-분산 이론

수익률의 평균(기대수익)과 분산에 의하여 투자기회를 선택한다는 가설. 즉 투자자들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갖는 서로 다른 투자안의 경우 수익률의 분산(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을 갖는 서로 다른 투자안은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

3-2-1

중장기자산 투자의 비중을 설정하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및 IPS 등에의 반영 근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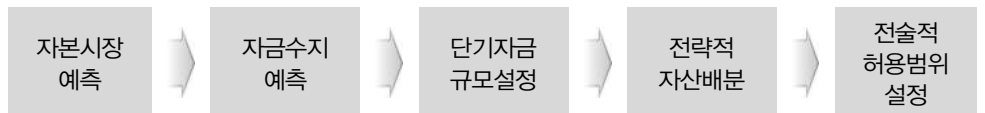
중장기 자산배분 프로세스

단계	세부내용
자본시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전망분석 기금의 사정을 반영하여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
자금수지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자금수지 및 자금운용규모 예상 중기 사업계획① 및 기금운용계획② 수립 기금의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을 지출항목으로 규정 금융상품 만기도래에 따른 원리금 감안
단기자금 규모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별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 자금수지 및 과거 계획 대비 실적 오차 반영 미래계획 평균순지출을 활용하여 기간별 유동성규모 산출
전략적 자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계수 추정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전망 반영 자산배분 제약요건 충족 최적 자산배분(안) 도출 목표수익률, Short-Fall Risk, 허용위험한도 등
전술적 허용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자금 투자비중 조정 허용범위 설정 과거 투자자산 변동성, 정책적 배분비중 반영 분기, 월간 자산배분시 시장상황별 적용할 투자비중 조정범위를 정하여 운용의 일관성 유지
월간 자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상황별 전술적 허용범위내 자산배분 투자자산별 수익률, 투자가치 비교우위 및 리스크관리 감안 월간 자산배분 투자비중 변경시 허용위험한도 준수

중장기 자산배분 프로세스 IPS 등 반영

자산운용지침 제15조 (자산배분 원칙)

- 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방법은 결과도출이 투명하고 여러 자산배분 시나리오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중심으로 평균-분산 최적화(Mean-Variance Optimization)③모형을 보조적으로 사용
- 자산배분 절차



3-2-2

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적용 관련자료

■ 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 프로세스

● 자산별 예상수익률 및 변동성 산출

단계	세부내용
자산별 과거 기초 데이터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4년간(2008.01 ~ 2011.12, 월간 Data) 자산군별 대표 지수 월간 수익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KOSPI Index¹⁾ - 채권 : KAP 국고채 지수(2~3년물)²⁾ - 대체 :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PE 기대수익률 혼합
자산배분 제약조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1) 목표수익률 : 3.76%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자산 : 3.85% - 중장기자산 : 3.76% - 역할 : 배분안 선택의 하안선 역할 ■ 조건2) 중장기자금의 허용위험한도 이내(Shortfall Risk¹⁾)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Shortfall Risk를 설정 ■ 조건2) 대체자산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 부실자산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전부 상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약조건으로 설정

● 기대수익률 및 위험 산출

단계	세부내용																
자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측정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합리적 기대 반응을 위한 시장의 컨센서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전부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 보완 - 금융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적절한 미래 기대수익률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산구분</th> <th>기대수익률(%)</th> <th>위험</th> </tr> </thead> <tbody> <tr> <td>채권</td> <td>3.64</td> <td>2.24</td> </tr> <tr> <td>주식</td> <td>10.50</td> <td>19.56</td> </tr> <tr> <td>대체</td> <td>7.35</td> <td>7.00</td> </tr> </tbody> </table> <p>※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반영하여 수정 조정</p>	자산구분	기대수익률(%)	위험	채권	3.64	2.24	주식	10.50	19.56	대체	7.35	7.00				
자산구분	기대수익률(%)	위험															
채권	3.64	2.24															
주식	10.50	19.56															
대체	7.35	7.00															
자산군별 상관관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관관계는 각 자산별 위험을 분산하는데 사용되는 주요한 지표임 ■ 과거의 데이터로 산출된 상관관계는 미래에도 따른다고 가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산구분</th> <th>채권</th> <th>주식</th> <th>대체</th> </tr> </thead> <tbody> <tr> <td>채권</td> <td>1.00</td> <td>-0.19</td> <td>0.75</td> </tr> <tr> <td>주식</td> <td>-0.19</td> <td>1.00</td> <td>0.17</td> </tr> <tr> <td>대체</td> <td>0.75</td> <td>0.17</td> <td>1.00</td> </tr> </tbody> </table>	자산구분	채권	주식	대체	채권	1.00	-0.19	0.75	주식	-0.19	1.00	0.17	대체	0.75	0.17	1.00
자산구분	채권	주식	대체														
채권	1.00	-0.19	0.75														
주식	-0.19	1.00	0.17														
대체	0.75	0.17	1.00														
무위험 수익률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기금평가편람에 의거 2008년 ~ 2011년 월간의 통화안정증권(365일물 기준) 금리의 월간 평균을 사용하여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위험 수익률: 3.72%(출처: 한국은행)⁴⁾ 																

1 2012년 KOSPI 지수 전망

구분	보안	채권	주식
전국	2,290	4,890	2,500
각도	2,150	4,500	2,400
물류	2,080	4,460	2,370
농림수	2,080	4,700	2,570
제조	2,240	4,700	2,480
서비스	2,400	4,800	2,600
인간개발	2,250	4,700	2,480
공공	2,300	4,800	2,500
문화	2,200	4,700	2,570
인문사회	2,200	4,700	2,500
보건	2,300	4,800	2,590
기술	2,580	4,980	2,780
서비스	2,400	4,800	2,480
문화	2,200	4,880	2,480
인문	2,200	4,700	2,500
보건	2,400	4,700	2,580
기술	2,540	4,980	2,800
서비스	2,200	4,880	2,470
문화	2,200	4,700	2,540
인문	2,200	4,750	2,500
보건	2,240	4,800	2,570
기술	2,580	4,980	2,800

2 2012년 3년물 국고채 전망

구분	1Q	2Q	3Q	4Q	평균
총합	3.75	4.25	4.85	5.90	5.00
상반기	3.25	3.45	3.80	4.50	3.65
하반기	3.45	3.95	4.85	5.70	3.95
한국은행	3.40	3.70	3.50	3.70	3.65
한국투자	4.35	4.85	4.80	4.70	4.80
영원	3.80	3.45	3.45	3.80	3.50
현대	3.45	3.60	3.85	3.80	3.65
신한	3.70	3.90	4.25	4.35	3.95
KB	3.45	3.85	3.80	3.95	3.71
평균	3.45	3.55	3.76	3.70	3.64

3 기대수익률 및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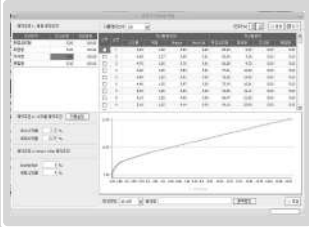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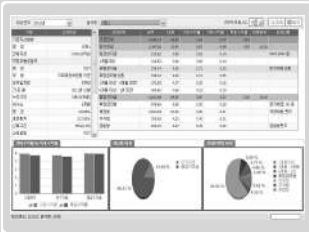


1) 전체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일정수익률(문예진흥기금의 위험허용한도 기준수익률은 0%임)을 초과 하지 못 할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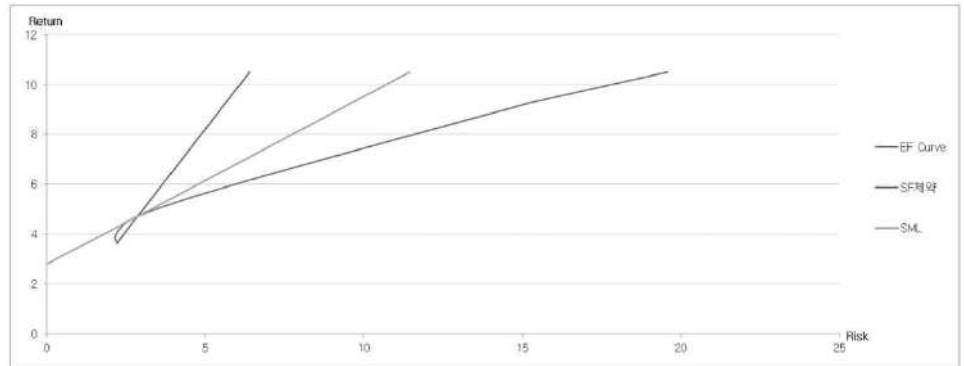
① 효율적 투자선 도출



② 자산배분안 도출



- 2012년도 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
 - 투자자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을 활용한 Mean-Variance Optimization 최적화를 적용 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Efficient Frontier 도출①



- Efficient Frontier Line 중에서 필요조건 검토를 통한 투자가능 자산배분안을 선택
 - 기금의 자금운용 특성상 안전자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며 중장기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중장기 목표수익률 이상인 것을 선택, 즉 위의 필요요건 1), 2) 및 3)을 만족하는 방안은 아래 [중장기 자산배분안 표] 3, 4안이 될 수 있음.②
 - 3~4안 중에서 위험조정성과(Sharpe Ratio)가 가장 높은 4안을 최종 중장기 자산배분(안)으로 선택

[중장기 자산배분안 표]

(단위 : %)

No.	채권	주식	대체투자	기대 수익률	기대 위험	Shortfall Risk	Sharpe Ratio
1	83.09	0.00	0.00	3.64	2.24	5.22	0.38
2	82.92	0.17	0.00	3.65	2.23	5.07	0.39
3	69.88	6.55	6.66	4.48	2.65	4.57	0.64
4	67.29	6.75	9.05	4.60	2.80	4.99	0.65
5	67.00	6.78	9.31	4.62	2.81	5.03	0.65

- 2012년도 전략적 자산배분(안)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비중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163.22	6.28
	유동성자금	276.49	10.63
단기자금 소계		439.70	16.91
중장기자금	채권	1,749.50	67.29
	주식	175.50	6.75
	대체	235.30	9.05
중장기자금 소계		2,160.30	83.09
총계(운용가능자금)		2,600.00	100.00

3-②-2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근거자료 및 자산배분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3 ③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선정의 적정성

3-3-1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중장기 투자에 대한 다각화 노력 근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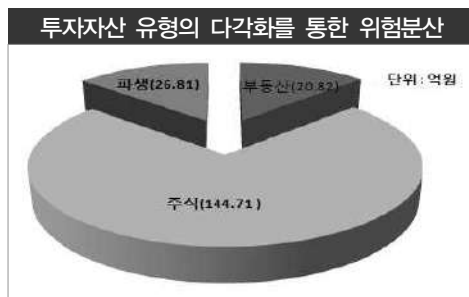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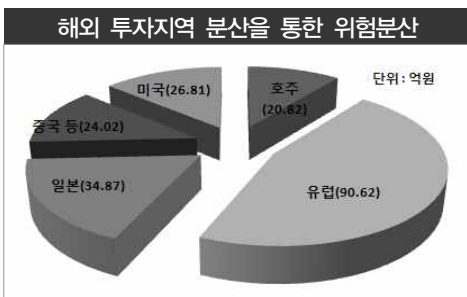
■ 해외투자를 통한 투자자산 다각화

● 해외투자 목적 및 시행절차

구분	세부내용								
해외투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고 수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운용 - 외화자산 거래시 환위험은 80% 이상 헤지 -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 목적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한 장기 안정적 수익 확보 및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의 제고¹ 및 해외선진투자 및 관리기법 습득 								
해외투자 시행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계획수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만기상품 점검(운용실무협의회→월간기금운용계획) ■ 연간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한 자산배분 </td> </tr> <tr> <td>투자실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사 및 운용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 투자인프라 파악 -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확인 - 투자철학 등 정성평가 활용 ■ 자산운용위원회 사전심의 시행² </td> </tr> <tr> <td>사후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운용보고서 작성³ - 시황분석 및 실적분석(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등) - 보유종목 분석 </td> </tr> </tbody> </table>	단계	세부내용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만기상품 점검(운용실무협의회→월간기금운용계획) ■ 연간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한 자산배분 	투자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사 및 운용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 투자인프라 파악 -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확인 - 투자철학 등 정성평가 활용 ■ 자산운용위원회 사전심의 시행²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운용보고서 작성³ - 시황분석 및 실적분석(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등) - 보유종목 분석
	단계	세부내용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만기상품 점검(운용실무협의회→월간기금운용계획) ■ 연간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한 자산배분 							
	투자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사 및 운용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 투자인프라 파악 -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확인 - 투자철학 등 정성평가 활용 ■ 자산운용위원회 사전심의 시행²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운용보고서 작성³ - 시황분석 및 실적분석(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등) - 보유종목 분석 								

● 2012년 문예진흥기금 해외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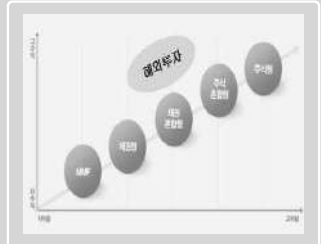
지역별 투자현황	유형별 투자현황
----------	----------



판매사	운용사	상품유형	투자액(평잔)	투자지역	비고
신한금융투자	피닉스자산	해외부동산	20.82억원	호주	부동산PF
대우증권	신한BNPP자산	해외주식형	90.62억원	유럽	배당형
대신증권	대신자산	해외주식형	34.87억원	일본	재간접
한화증권	한화자산	해외혼합형	24.02억원	중국 등	재간접
신영증권	한국투신	해외파생형	26.81억원	미국	뱅크론

* 투자액(평잔)은 평가액 평잔

1 해외투자의 전략적포지셔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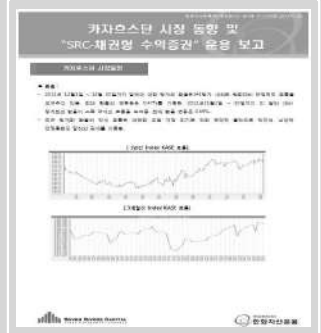


2 제23차 기금운용심의회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관련 외부 투자자문기구의 사전심의제 도입
- 자산운용지침 개정(제23차 기금 운용심의회(2012.6.27)의결)



3 월별 운용성과 검



■ 대체투자를 통한 투자자산 다각화

● 대체투자 목적 및 시행절차

구분	세부내용								
대체투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투자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안투자전략의 관점에서 시행 - TOP-DOWN 방식으로의 투자 - 장기적으로 전체 기금 포트폴리오의 틀을 우선 구성하고, 대체투자 하위 자산군을 각각의 자산군에 선별적으로 배치 ■ 목적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분산투자효과(Additional diversification) - 잠재적인 고수익기회 제공(Potential for higher returns) - 장기투자(Long-term horizons) 								
대체투자 시행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계획수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투자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 ■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외부환경 요인 검토 ■ 자산배분에 있어 실무적 판단과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 </td> </tr> <tr> <td>운용사 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ople : 매니저의 전문성과 윤리성 검토 ■ Partnership : 운용사 내부의 제도와 소유구조 파악 ■ Process : 투자의사결정과 위험관리 프로세스 점검 ■ Performance : 과거 검증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Portfolio : 분산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Peers : 투자전략의 독창성에 대하여 유사유형의 전략 비교분석 ■ Potential : 매니저의 능력에 부합되는 운용자금의 크기 결정 </td> </tr> <tr> <td>투자 모니터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과, 포지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의 'style draft',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바람직하지 못한 베팅, 치명적인 사기위험 등을 미연에 방지 - 월간 운용보고를 통한 운용 점검 ■ 매니저의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td> </tr> </tbody> </table>	단계	세부내용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투자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 ■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외부환경 요인 검토 ■ 자산배분에 있어 실무적 판단과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 	운용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ople : 매니저의 전문성과 윤리성 검토 ■ Partnership : 운용사 내부의 제도와 소유구조 파악 ■ Process : 투자의사결정과 위험관리 프로세스 점검 ■ Performance : 과거 검증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Portfolio : 분산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Peers : 투자전략의 독창성에 대하여 유사유형의 전략 비교분석 ■ Potential : 매니저의 능력에 부합되는 운용자금의 크기 결정 	투자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과, 포지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의 'style draft',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바람직하지 못한 베팅, 치명적인 사기위험 등을 미연에 방지 - 월간 운용보고를 통한 운용 점검 ■ 매니저의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단계	세부내용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투자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 ■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외부환경 요인 검토 ■ 자산배분에 있어 실무적 판단과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 							
운용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ople : 매니저의 전문성과 윤리성 검토 ■ Partnership : 운용사 내부의 제도와 소유구조 파악 ■ Process : 투자의사결정과 위험관리 프로세스 점검 ■ Performance : 과거 검증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Portfolio : 분산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Peers : 투자전략의 독창성에 대하여 유사유형의 전략 비교분석 ■ Potential : 매니저의 능력에 부합되는 운용자금의 크기 결정 								
투자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과, 포지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의 'style draft',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바람직하지 못한 베팅, 치명적인 사기위험 등을 미연에 방지 - 월간 운용보고를 통한 운용 점검 ■ 매니저의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 2012년 문예진흥기금 대체투자 현황

판매사	운용사	상품유형	투자액(평잔)	기초자산	비고
신한금융투자	피닉스자산	부동산펀드	20,82억원	부동산	공동주택 개발
우리은행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69,90억원	부동산	근린시설 개발
하나은행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	68,52억원	부동산	아파트개발
하나은행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	44,86억원	부동산	아파트개발
하나은행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	50,23억원	부동산	기숙사 운영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	54,00억원	부동산	상가처분신탁

3-3-2

다각화된 투자자산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보유 근거자료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관련 전문성 제고 노력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상품) 선정절차 강화
 - 해외투자의 지역성 특성 및 전문성, 위험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투자적격 판매사(운용사)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
 - 대체투자의 고수익, 고위험 특성 및 상품별 다양한 수익구조, 위험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상품선정협의회의 최종 의결
- 위탁운용사(상품) 선정 절차

단계	세부내용
제안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POOL내에 있는 투자적격 판매사로부터 적격 운용사의 상품 외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제안서 접수 ■ 자금집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격 판매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공고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하는 제안서 분에 한하여 1차 심사 실시
1차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역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1차 스크리닝 ■ 연간기금운용계획 상의 해당유형 계획비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 상의 자산배분과의 차이 존재 여부 확인 ■ 기관별, 상품별 집중예치도 현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개별한도 및 등급한도 점검 ■ 수익성제고를 위한 제시수익률 현황 (위험대비 수익성 평가)
2차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위원회 사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력 확충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결과를 운용에 적극 활용 -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운용사 선정의 투명성과 대체투자 투자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사전심의 실시 -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위험 최소화 - 수익성, 안정성, 사업구조 평가
최종선정 및 자금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선정협의회의 최종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심사 통과 판매사(운용사)를 대상으로 해당 운용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 - 시장상황 및 내부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선정
사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산 외부기관(펀드평가사, 수탁사)의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별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별로 펀드의 매매내역(기준가 산출 펀드) 및 운용기준 준수여부 등 운용전반에 대해 매일 펀드평가사나 수탁사로부터 모니터링 내용 보고 - 매월 위탁자산 성과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산에 대해 펀드별로 포트폴리오 분석, 유형별 순의, 초과수익률 요인분석, 운용성과 평가 등 세부 평가 실시 - 주기적 현지출장 및 실사진행

1 호주 사업장 현지실사('12.7월)



2 홍은동 사업장 공사현장



3 봉선동 사업장 공사현장



4 구리시 인창동 공사현장



5 창원 상남동 상가 현장사진



■ 자산운용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 교육연수 프로그램 실시 및 세미나 적극 활용
 - 교육연수 프로그램

교육명	세부내용																																				
제8기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2.5.21~2012.6.25 ■ 교육시간 : 14일, 54시간 ■ 교육형태 : 집합교육 ■ 교육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 교육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명</th> <th>교육내용</th> <th>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부동산관련법규</td> <td>펀드/리츠</td> <td rowspan="3">■ 부동산투자관련 제반법률의 이해</td> <td rowspan="3">12</td> </tr> <tr> <td>PF/자산유동화</td> </tr> <tr> <td>공/사법</td> </tr> <tr> <td>부동산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평가 개념 ■ 각 방안별 비교(원가, 수익, 비교방식) 및 특수평가/보상평가 소개 </td> <td>4</td> </tr> <tr> <td>부동산 자산관리 및 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펀드 자산운용 프로세스 ■ 부동산투자 인큐베이팅 ■ 부동산투자 사례분석 </td> <td>8</td> </tr> <tr> <td>부동산 투자기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수익률 측정방법과 이용 ■ 부동산의 영업 및 매각 Cash Flow 계산 </td> <td>4</td> </tr> <tr> <td>부동산 세무</td> <td>■ 부동산 관련 세무</td> <td>4</td> </tr> <tr> <td>부동산투자 / 포트폴리오 구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위험의 측정 ■ 부동산투자상품과 분산투자기준 </td> <td>4</td> </tr> <tr> <td>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td> <td>■ 사업별(상업용, 업무용, 재개발, 재건축) 개발실무</td> <td>4</td> </tr> <tr> <td>부동산 투자가치분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자수익률의 이해 ■ 수익률 평가, 현금흐름 </td> <td>4</td> </tr> <tr> <td>부동산 위험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위험관리 기법의 종류 ■ 부동산위험관리 사례 </td> <td>4</td> </tr> <tr> <td>부동산투자 사례분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비교(펀드&리츠)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사례 </td> <td>6</td> </tr> </tbody> </table>	과목명	교육내용	시간	부동산관련법규	펀드/리츠	■ 부동산투자관련 제반법률의 이해	12	PF/자산유동화	공/사법	부동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평가 개념 ■ 각 방안별 비교(원가, 수익, 비교방식) 및 특수평가/보상평가 소개 	4	부동산 자산관리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펀드 자산운용 프로세스 ■ 부동산투자 인큐베이팅 ■ 부동산투자 사례분석 	8	부동산 투자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수익률 측정방법과 이용 ■ 부동산의 영업 및 매각 Cash Flow 계산 	4	부동산 세무	■ 부동산 관련 세무	4	부동산투자 / 포트폴리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위험의 측정 ■ 부동산투자상품과 분산투자기준 	4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	■ 사업별(상업용, 업무용, 재개발, 재건축) 개발실무	4	부동산 투자가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자수익률의 이해 ■ 수익률 평가, 현금흐름 	4	부동산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위험관리 기법의 종류 ■ 부동산위험관리 사례 	4	부동산투자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비교(펀드&리츠)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사례 	6
	과목명	교육내용	시간																																		
	부동산관련법규	펀드/리츠	■ 부동산투자관련 제반법률의 이해	12																																	
		PF/자산유동화																																			
		공/사법																																			
	부동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평가 개념 ■ 각 방안별 비교(원가, 수익, 비교방식) 및 특수평가/보상평가 소개 	4																																		
	부동산 자산관리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펀드 자산운용 프로세스 ■ 부동산투자 인큐베이팅 ■ 부동산투자 사례분석 	8																																		
	부동산 투자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수익률 측정방법과 이용 ■ 부동산의 영업 및 매각 Cash Flow 계산 	4																																		
	부동산 세무	■ 부동산 관련 세무	4																																		
	부동산투자 / 포트폴리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위험의 측정 ■ 부동산투자상품과 분산투자기준 	4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	■ 사업별(상업용, 업무용, 재개발, 재건축) 개발실무	4																																		
부동산 투자가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자수익률의 이해 ■ 수익률 평가, 현금흐름 	4																																			
부동산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위험관리 기법의 종류 ■ 부동산위험관리 사례 	4																																			
부동산투자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비교(펀드&리츠)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사례 	6																																			

- 해외 및 대체투자 관련 세미나 참석 현황

일자	주관	장소	주요내용
2012.6.26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금융타워 19층 대회의실	■ 차이나 시장전망 및 차이나본토 펀드 설명회
2012.7.2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투자교육원	■ 유로 위기와 이에 대한 미래 대응
2012.11.1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금융시장 및 주요산업 전망 - 2013년 국내외 경제전망 - 2013년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2013년 채권시장 전망과 전략 - 2013년 주식시장 주요 이슈
2012.11.9	KBP펀드평가	63빌딩 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사 연기금 투자 및 위험관리 - Challenges for Pension and Investment Funds in Generating Wealth- Added in an Era of "Financial Repression"
2012.11.28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 Korea abond Market 2040 - 채권시장 전망과 전략 - 조선, 해운업 전망과 그룹별 관전포인트 - 해외채권, 거스를수 없는 대세

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취득후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인 부동산펀드 운용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협회의 위탁교육기관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

② 수료증



지표명

2. 자산운용관리(집행)

가중치 : 25점



세부평가내용

평가내용 1. 자산운용 관리의 효율성

- 자산운용관련 주요 위원회의 활동실적
-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체계
- 운용자산 평가 프로세스의 효율성

평가내용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 포트폴리오 전체 통합위험관리의 효율성
- 부실자산 처리의 효율성

평가내용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차이분석
- 위험대비 성과 및 원인분석
-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공시



ARTISTREE



1

자산운용 관리의 효율성

효율적인 내/외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운영으로 관리활동의 효율성 강화

- 사무수탁사 및 펀드평가사의 성과평가시스템을 지원받아 성과평가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FMS(Fund Monitoring System), KASS
- 운용기관의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외부위탁 투자기관 사후관리 노력 경주
- 자산운용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1 ① 자산운용관련 주요 위원회의 활동실적

1-①-1 자산운용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 명단과 약력 자료

■ 자산운용관련 주요 위원회 운영현황

● 자산운용관련 위원회 기본구성 및 역할

구분	구성	역할
기금운용심의회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 : 7명 - 내부 : 위원장, 사무처장 - 외부 : 외부인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반에 대해 위원회와 분리되어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가짐
자산운용위원회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 : 7명 - 내부 : 위원장 - 외부 : 외부인사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기금운용계획 및 자산운용관련 허용위험한도 등 심의 ■ 자산운용지침 및 자산운용 성과평가 심의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자금지행시 사전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 : 8명 - 내부 : 사무처장 - 외부 : 외부인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상 주요사항에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운영 ■ 독립적으로 자금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전반을 총괄
운용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 : 5명 - 내부 : 기금운용부서 2인 - 외부 : 외부인사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분석 ■ 월별 예치상품에 대한 방향 자문 ■ 타 기관 자금흐름 동향 파악
상품선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 : 3명 - 내부 : 내부인사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제안서 심사 최종의결 ■ 2차 구술심사 및 상품 최종선정

① 기금운용심의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기구(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산운용위원회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 ①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주권상장법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 4.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6. 그 밖에 제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012년도 기금운용심의회 구성①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영산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삼성출판박물관	박물관장	김종규	■ 삼성출판사 회장 ■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 삼성출판사 대표이사 ■ 문화체육부 한국문화학교 교육협의회 회장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신일수	■ 제1대 아르코시티 문화재단 이사장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명예교수 ■ 서울시 극단장
법무법인 바른	대표이사	강훈	■ 대통령 법무비서관 ■ 사법고시 제24회 ■ 서울대법대(대학원)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성규	■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 ■ (재)국립극장발전기금 감사 ■ (사)한국문화의집협회 감사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 (재)고양문화재단 감사

● 2012년도 자산운용위원회 구성②

-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운영
-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소장	김경록	■ 서울대 경제학박사 ■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실장 ■ 국민은행 금리예측팀장 ■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 ■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재조	■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한외종합금융, 청운회계법인 ■ 한불종합금융 해외증권발행 업무팀장 ■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주)AMS감사
삼성보험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형원	■ UCLA 경제학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극렬	■ Northwestern University 경영학박사 ■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이태호	■ UCLA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 국민연금 리스크관리 자문단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허의영	■ 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 ■ 메사추세츠주립대학 객원교수



● 2012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①

- 자산운용상 발생가능한 리스크의 관리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감독 및 견제기능 수행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KBP펀드평가	대표이사	신동승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어교육 석사 ■ 하나은행 PB팀장 ■ 한국채권평가 평가 2본부 본부장/상무이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윤남	■ KAIST 응용공학대학원 공학석사 ■ CFA, FRM, KFRM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법무법인 지안	변호사	이상훈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제36회 행정고시 ■ 농림부 행정사무관 ■ 제45회 사법시험
서울대 발전기금	발전본부장	이석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12년도 상품선정협의회 구성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양효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장	김재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부장	양경학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평가부장

● 2012년도 운용실무협의회 구성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장	김재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역	정구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역
산은자산운용	운용팀장	최준	■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SH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보아스투자자문 주식운용팀
미래에셋증권	팀장	김우식	■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영업본부
(주)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신인식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MBA ■ 동원증권 청담지점 ■ 대웅제약 자금기획 및 운용

1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사리스크를 총괄하고 있는 CRO(사무처장)가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현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3. 필요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간사단을 둘 수 있다.
 4. 제2항 2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①-1,2

자산운용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안건심의 내용, 회의록 등 운영 관련 자료

■ 자산운용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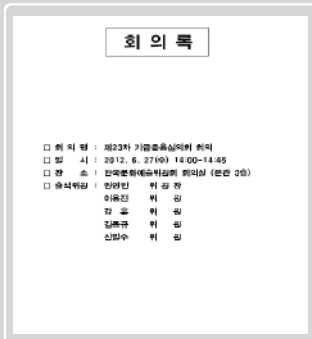
● 2012년도 기금운용심의회 개최실적①~④

개최일	안건	주요심의/의결 내용
2012.1.30 (제2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 심의/의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5조의 1(기금운용심의회) 제1항에 의거, 2012~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편성 기본 원칙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11~'15년 계획상 편성 한도 최대한 준수 -위원회 및 지방이전 사업개선 대토론회 논의사항 반영 2012~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 편성 심의/의결
2012.2.29 (제2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 심의/의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5조(위원회의 직무) 제1항 제2호 및 예산회계규정 제63조(결산보고)에 의거, 2011년도 결산(안)을 의결 2012~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국고보조사업 포함) -세입(A) : 248,458,216,519원 -세출(B) : 230,391,905,749원 -2011년도 수지 집행 잔액(A-B) : 18,066,310,770원 특별회계(뉴서울골프장 운영사업회계) -수입(A) : 22,714,599,206원 -지출(B) : 19,616,738,931원 -당기순이익(A-B) : 3,097,860,275원 -문예진흥기금 기부액 : 5,800,000,000원
2012.6.27 (제2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및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에 의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2011년도 경륜경정 수익 전입금 적립(안) 심의/의결 2012년도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추진경과 및 편성 원칙 심의/의결 -지출한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및 post-지방이전 사업 우선 반영 -정부 시달 지출한도 내 편성 지침 준수를 위한 긴축 편성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용 심의/의결 2011년도 경륜경정 수익 전입금 27,711,733,836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2011년도 경륜경정 수익 전입금 적립금 계상 2012년도 기금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전략적 자산배분(안), 적정유동성 규모 등 변경 사항 반영
2012.8.6 (제2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제2항 제2조 및 정관 제15조의 1(기금운용심의회)에 의거,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도 조건부기부금사업 수입·지출계획 증액 -조건부기부금 수입예산 및 지출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동시 변경 -조건부기부금 사업은 ' 12.7.24일 현재 누적 수입이 54억원으로 금년 책정된 수입 예산액(57억원)을 임박하여 동 예산액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 -2012년도 기부금 수입목표액인 172억원(수입 및 지출계획)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① 제24차 기금운용심의회



② 제23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③ 기금운용심의회 대면회의



2012년도 자산운용위원회 개최실적①~④

개최일	안건 및 주요심의 내용	비고																
2012.5.17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부동산PF 사후처리 현황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연기금투자품 예치현황 보고 및 관리방안 논의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유형</th> <th>투자액</th> <th>비중</th> <th>2011년성과</th> </tr> </thead> <tbody> <tr> <td>MMF</td> <td>47억원</td> <td>1.85%</td> <td>3.31%</td> </tr> <tr> <td>채권형</td> <td>1,045억원</td> <td>40.82%</td> <td>4.21%</td> </tr> <tr> <td>혼합형</td> <td>220억원</td> <td>8.60%</td> <td>0.1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관련 제규정 개정(안)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투자검토 시 자산운용위원회의 필수 심의사항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전사리스크 체계구축 및 관리전담조직 변경, 업무분장 변경사항 반영 (감사부→기획예산부) 	상품유형	투자액	비중	2011년성과	MMF	47억원	1.85%	3.31%	채권형	1,045억원	40.82%	4.21%	혼합형	220억원	8.60%	0.13%	
상품유형	투자액	비중	2011년성과															
MMF	47억원	1.85%	3.31%															
채권형	1,045억원	40.82%	4.21%															
혼합형	220억원	8.60%	0.13%															
2012.8.23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수익률 설정 내용 중 기금의 현실이 고려된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근거 보완 부동산PF 투자상품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동 민자역사 사업정상화 관련 관리업무 철저 요구 한화 글로벌3 사모재간접 펀드 편입 SRC-DI펀드 청산 관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RC-DI펀드 청산관련 기금의 기회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부실자산의 조기청산 등의, 이후 관리업무 철저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 및 향후 운용방안 논의 																	
2012.10.12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투자 자산군의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재추정을 통한 전략적자산배분(안) 재도출 부동산PF 투자상품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은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업무 철저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 및 향후 운용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은행 특정금전신탁의 환매가치를 면밀히 조사하여 운용자산의 교체를 통한 수익창출 여부 분석 																	
2012.12.26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도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투자 기초데이터의 평균과 위험수치를 수정 반영 -전술적 허용범위 명시(±5%p)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지침 및 투자자산별(주식형/채권형) 운용지침을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으로 통폐합 -월별 누적 버퍼가 아닌 기간을 일괄적으로 고려한 현금성/유동성 버퍼를 이용하여 유동성 규모 산출 -시장위험관리의 해소절차에 관한 자산운용지침의 부재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조치 신설 -위험관리 전담부서 변경(기획예산부→정책기획부) 2013년도 기금운용실적평가 편람 개선(안)심의 																	

1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2012년 5월 17일 (금요일)
 1.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2. 부동산PF 사후처리 현황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3. 연기금투자품 예치현황 보고 및 관리방안 논의

2 제2차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1. 자산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간보고
 2. 부동산PF 투자상품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3. 한화 글로벌3 사모재간접 펀드 편입 SRC-DI펀드 청산 관련 심의
 4.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 및 향후 운용방안 논의

3 제3차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1. 자산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
 2. 부동산PF 투자상품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3.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 및 향후 운용방안 논의

4 제4차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1. 2012년도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심의
 2. 2013년도 기금운용실적평가 편람 개선(안)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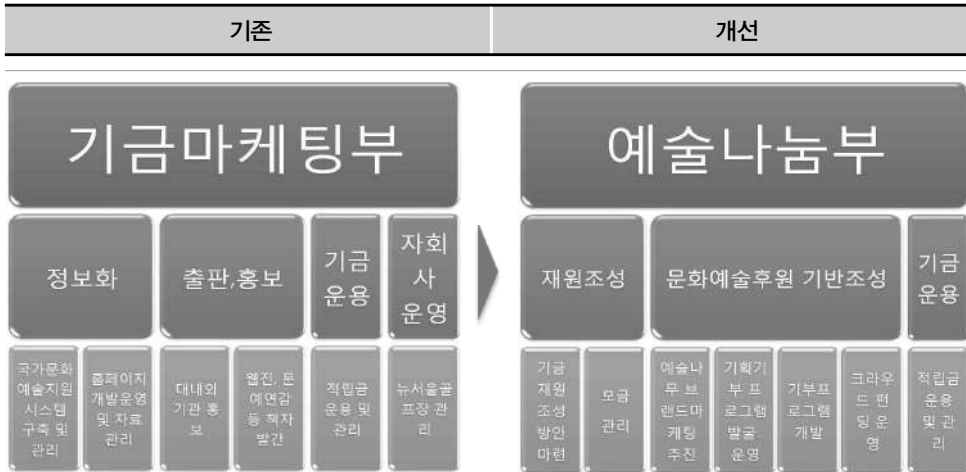
1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체계

1-2-1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조직도 및 인원현황 관련자료[외부자문 또는 외부위탁관리 포함]

■ 자산운용 전담조직 조직도 및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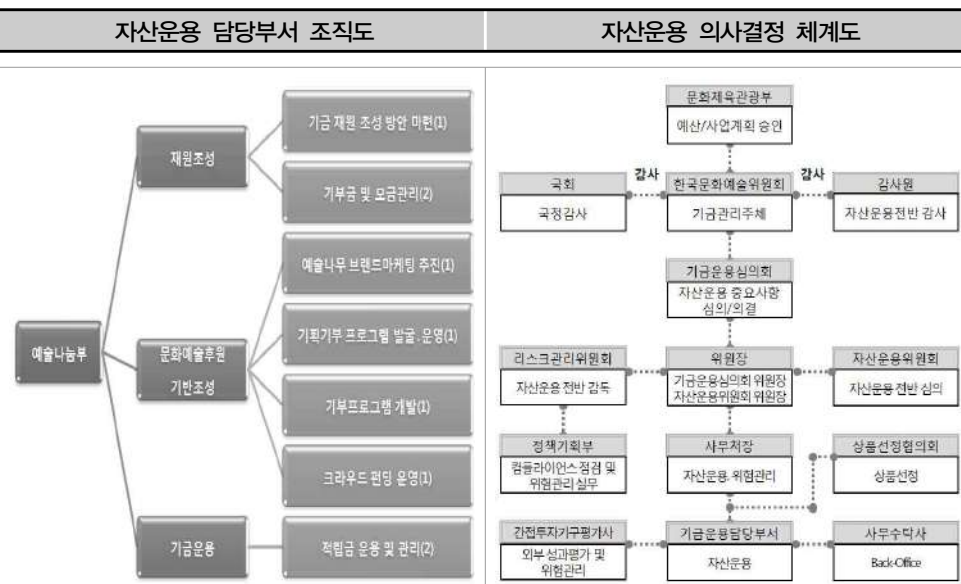
- **재원조성 및 자산운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직무통합 실시**
 - 결합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fund-managing) 업무와 기금조성(fund-raising) 업무를 '예술나눔부' 로 통합¹



- 출판/홍보, 정보화 업무 등 기금운용과의 업무 연계성 저하
- 업무연계성 저하에 따른 업무시너지 효과 약화
- 재원조성→기금운용의 유기적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재원조성과 기금운용 업무를 통합관리(예술나눔부 신설)

● 자산운용 부서(예술나눔부) 업무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자산운용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추가 채용²
 - 내부 운용관련 인적인프라의 취약성 극복을 위하여 기존 1인체제의 자산운용 전담인력 구조를 정·부 체제로 변경



1 제120차 위원회 의결

-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
- 안건번호 : 제327호
 - 안건 :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문예진흥기금사업관련 내·외부평가·모니터링 및 홍보·출판, 고객만족(CS) 관련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는 사업평가부 신설
 - **결합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fund-managing) 업무와 기금조성(fund-raising) 업무를 예술나눔부로 신설/통합**
 - 교류협력부는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업무를 예술지원부로 이관하고, 국제교류 업무만을 전담하며 부서명칭도 변경

2 자산운용 전문인력 채용공고

한국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대졸 신입사원 및 공역직 채용안내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직급	채용분야	근로조건	채용인원
신입	인원	문화예술전문 일반계열 및 문화기금관리	기타별 지정에 따라 결정	1명
경력	원장직 (일반직 1급~4급)	문화예술전문 일반계열 및 문화기금관리	채용에 따라 결정	1명
경력	전문계약직	기금운용 및 관리	필 100%의 내외	1명

2. 주요 업무 내용

구분	직급	업무 주요 항목
신입	인원	문화예술전문 일반계열
경력	원장직 (일반직 1급~4급)	문화예술전문 일반계열 및 문화기금관리
경력	전문계약직	기금운용 및 관리

① 투자자산운용사

② 증권투자상담사

③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1-2-2

자산운용인력[내·외부] 규모 및 전문성의 적정성을 입증할 상세 자료[학력, 경력, 자격증, 연간 교육시간 등]와 평균보직기간

■ 자산운용 관련 조직 인력규모 및 경력사항

업무구분	성명	최종학력	경력(자격사항 등)	보직기간
자산운용 (Senior)	정구빈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시온투자자문 리서치, 주식운용 ■ 한국펀드평가(주) 펀드애널리스트 ■ (주)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용실무위원 ■ 국민연금 위탁채권부분 평가실무 담당 ■ 집합투자자산운용사(RFM)①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상담사②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③ ■ CFA level 3 candidate 	3년6개월 (내부)
자산운용 (Junior)	송주연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 in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자산운용 주식운용역 ■ KDI국제 정책대학원 MBA ■ MOT Certificate 	신규채용 (내부)
성과평가	신인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M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증권 청담지점 ■ 대웅계약 자금기획 및 운용 ■ 무역보험공사 운용평가 담당 ■ (주)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상담사 ■ 선물거래상담사 ■ AP(선물중개인) 	외부

■ 자산운용 전문인력 직무역량교육 이수현황

교육기관	성명	교육과정/형태	연수내용	시간
금융투자협회	정구빈	부동산 투자자산 운용사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관련법규 ■ 부동산평가 ■ 부동산 자산관리 및 운용 ■ 부동산 투자기법 ■ 부동산 세무 ■ 부동산투자 / 포트폴리오 구성 ■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 ■ 부동산 투자가치분석 ■ 부동산 위험관리 ■ 부동산투자 사례분석 	54
크레듀	정구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지식 (온라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고의 이해(유형과 사례) ■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사고 리스크관리 ■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감사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접근방안 ■ 부동산 세무 	16
크레듀	정구빈	채권투자 실무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의기초 및 종류 ■ 채권투자분석 ■ 채권가격 결정과정 ■ 채권투자의 위험 ■ 채권투자 수익성 측정 ■ 채권운용전략 	24



■ 자산운용관련 세미나 참여활동 강화

● 2012년 외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세미나 참석 현황

일자	주관	장소	주요내용
2012.2.17	연기금투자자	금융투자협회	■ 연기금투자자 홈페이지 사용법 ■ 자산배분시스템(IPAAM)사용법
2012.3.16	연기금투자자	금융투자협회	■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산운용체계 개선
2012.4.19	KG제로인	서울 마리나클럽	■ 운용사 정성평가 방안 제시
2012.4.26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위험관리와 성과평가 프로세스
2012.5.3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의사결정체계와 자산운용지침의 필요성
2012.5.10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 신한증시포럼 -2012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2012년 하반기 채권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주요 산업 전망과 투자유망종목
2012.5.17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외부위탁운용 방안연구
2012.6.7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의사결정체계와 자산운용지침의 필요성
2012.6.21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외부 위탁운용 방안
2012.6.28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위험관리와 성과평가 프로세스
2012.7.5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의사결정체계와 자산운용지침의 필요성
2012.7.12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안정성에 기초한 자산배분전략
2012.7.19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2012.8.02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안정성에 기초한 자산배분 전략
2012.8.16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2012.8.31	연기금투자자	금융투자협회	■ 채권형펀드와 ELS투자
2012.9.13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외부 위탁운용 프로세스 및 방안 이해
2012.9.18	연기금투자자	금융투자협회	■ 연기금 자산운용자를 위한 ETF시장의 이해
2012.9.27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이해
2012.10.18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안정성에 기초한 자산배분 전략
2012.10.19	연기금투자자	금융투자협회	■ 연기금투자자 홈페이지 및 자산배분 프로그램 활용방법
2012.10.25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외부 위탁운용 프로세스의 이해
2012.11.1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 신한증시포럼 -2013년 국내외 경제 전망 -2013년 주식채권시장 전망과 전략 -2013년 주식시장 주요 이슈
2012.11.8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자산운용지침의 필요성과 의사결정체계
2012.11.9	이밸류	63빌딩 별관	■ 금융위기시 연기금 투자 및 위험관리
2012.11.23	연기금투자자	금융투자협회	■ 2013년 기금준치평가지침(안) 및 자산운용평가지침(안) 설명회
2012.11.28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 신한 채권시장 포럼 -채권시장 전망과 전략 -물가연동국채의 숨은 매력 -주요 산업별 전망 및 관전포인트 -해외채권
2012.12.6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안정성에 기초한 자산배분 전략
2012.12.20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외부 위탁운용 프로세스의 이해
2012.12.27	연기금투자자	한국채권연구원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이해

1-2-3

자산운용 의사결정 과정 관련자료
[회의록 및 품의서 등]

■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 자산운용 의사결정 기본체계

구분	내용	비고
자산운용관련 법규 및 제규정 준수	관련법 상 준수사항 및 제한사항 사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IPS) ■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등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적정유동성 규모, 전략적자산배분(안)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심의 → 위원회 심의 →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의결
월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월간 수입/지출 규모 파악, 자산군별/상품별 투자규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무협의회 자문
자금집행 및 투자상품 운용	전략적 자산배분에 근거하여 자산유형별 전술적 허용범위내에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시 자산운용위원회 사전심의 ■ 상품선정시 상품선정협의회 최종 점검 후 내부결재 진행 ■ 담당자 검토 → 부서장 검토 → 본부장 검 토 → 사무처장 검토 → 일상감사 협조 → 감사 검토 → 위원장 결재
성과평가	일간/월간/연간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성과평가기관에 의뢰 ■ 전체, 유형별, 상품별 운용성과 보고 ■ 투자자산별 리스크점검

● 자산운용 관련 권한위임 체계

구분	담당(본)부장	사무처장	위원장	자산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지침 등 자산운용관련 제규정 제·개정	✓	✓	✓	✓	✓
기금(자산)운용계획 수립·변경	✓	✓	✓	✓	✓
월간자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	✓	✓		
투자상품 선정	✓	✓	✓		
성과평가 결과보고	✓	✓	✓	✓	✓
수입보고 등 자금입출금	✓	✓			

1 ③ 운용자산 평가 프로세스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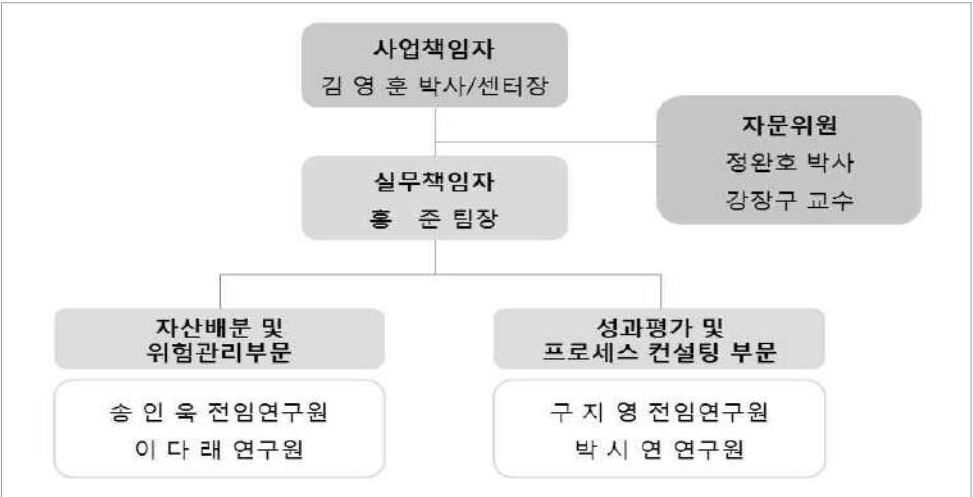
1-③-1 운용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운용금융기관의 안정성 포함] 평가 프로세스 운영 근거자료

■ 운용자산 평가시스템 개요

- 운용자산 평가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평가기관에 위탁
 - 자산운용지침 제25조 (성과평가 원칙)①
 - ※ 외부평가기관 : KBP펀드평가(주)②
- 성과평가 위탁의 목적 및 기대효과
 - 기금의 현황 분석과 성과 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전문기관의 성과분석 피드백을 통해 자산운용 프로세스 개선 및 운용성과 제고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외부 성과평가 조직구성 및 자문위원 현황
 - 문예기금 성과평가단 조직도



- 성과평가 자문위원 현황

성명	소속	자문분야
정완호 박사	이밸류 대표이사	■ 자산배분 부문
강장구 교수	KAIST 교수	■ 성과평가 부문

- 투자상품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사 제공 시스템 활용 : "Fund Plus" ③
 - 일별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정보, 인덱스/BM지수, 펀드성과분석, 유형별 성과분석, 유형별 운용현황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시스템
 - 운용성과 측정, 성과요인분석, Market Risk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① 자산운용지침 제25조 (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 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외부평가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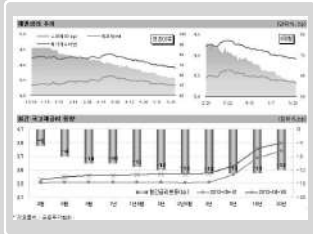


③ 포트폴리오 성과평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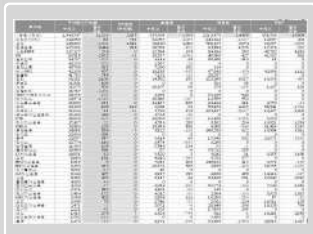
1 Daily Check 시스템



2 금융시장동향



3 투신시장 현황



4 기금투자현황



■ 운용자산의 수익성 평가

- 사전에 운용상품별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고 운용모니터링 시스템 및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일간, 월간, 분기/반기 및 연간 단위로 측정

[평가주기 및 평가내용]

점검주기	점검내용 및 평가사항
일간 (상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수탁사 및 펀드평가사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일일 기준가 점검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 대비 평가수익률 비교평가 - 투신시장현황(수탁고현황, 수익률현황, 운용사정보 등) ■ 보유현황 및 매매현황 ■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
월간 (보고서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채권시장, 해외시장² - 투신시장현황(수탁고현황, 수익률현황, 운용사정보 등)³ ■ 운용사별 수탁고 현황 및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운용사별 수탁고 현황 분석으로 자금흐름 파악 ■ 기금 투자현황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기간별 투자현황(순자산, 투자/회수 내역), 기간별 투자손익 - 투자수익률 현황 : 당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초후 수익률 - 성과분석 : 펀드별 수익률(BM대비, %순위 등), 성과요인분석 - 리스크관리 : 표준편차, 수정사프 등
반기/분기/연간 (보고서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현황분석 ■ 운용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 유동성 및 위험관리 평가 ■ 기준수익률 대비성과평가 ■ 차기 자산운용에 대한 정책제언

■ 운용자산의 유동성 평가

- 유동성자금의 관리는 일간/월간 수입요인과 지출요인을 파악하여 단기자금 과다보유로 인한 수익률 저하 방지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지출 등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마다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자금의 유동성을 상품별로 구분하여 평가
- 현금성 자금은 상품별 유동성평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운용하고, 단기자금의 경우 만기별로 분산하여 투자

[상품별 유동성 평가 내용]

상품구분	운용기간	조기환매		금리변동시 자산가치손실	거래기관
		가능여부	수수료		
MMF	1일~1개월	가능	없음	○	운용사
MMDA	7일~1개월	가능	무이자	×	은행권
RP	1개월~6개월	가능	시장할인율	×	은행권
정기예금	1개월~1년	가능	기간별 2~3%p	×	은행권
수익증권	1개월~1년	가능	환매수수료	○	운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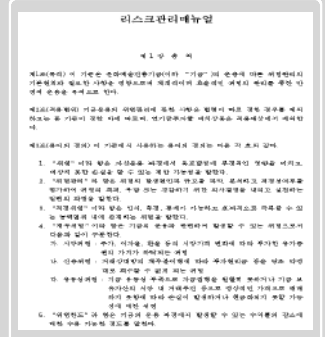


■ 운용자산의 안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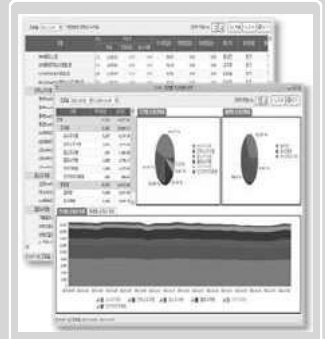
- 운용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매뉴얼^① 및 투자상품 약관에 적격 투자기준 및 투자제한사항 명시
- 수익증권의 경우 간접투자기구 전문평가회사를 통하여 매일 자산내역을 검토^②하여 투자부적격 상품의 편입 여부 등 확인을 통한 운용상품의 안정성 평가

구분	세부내용								
운용자산에 대한 제약	<p>■ 투자대상자산</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구분</th> <th>자산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KOSDAQ시장 등록주식 ■ 추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 옵션 </td> </tr> <tr> <td>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증권^③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td> </tr> <tr> <td>유동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MMDA, RP 등 ■ CD, CP, 정기예금 등 </td> </tr> </tbody> </table>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KOSDAQ시장 등록주식 ■ 추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 옵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증권^③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MMDA, RP 등 ■ CD, CP, 정기예금 등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KOSDAQ시장 등록주식 ■ 추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 옵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증권^③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MMDA, RP 등 ■ CD, CP, 정기예금 등 								
<p>■ 투자제한자산</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구분</th> <th>자산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종목 ■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종목 ■ 관리종목, 화의 또는 워크아웃대상종목 ■ 기타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td> </tr> <tr> <td>채권^④</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인 채권 ■ 신용평가등급 A2- 미만인 CP ■ 기타 기금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td> </tr> </tbody> </table>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종목 ■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종목 ■ 관리종목, 화의 또는 워크아웃대상종목 ■ 기타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채권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인 채권 ■ 신용평가등급 A2- 미만인 CP ■ 기타 기금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종목 ■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종목 ■ 관리종목, 화의 또는 워크아웃대상종목 ■ 기타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채권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인 채권 ■ 신용평가등급 A2- 미만인 CP ■ 기타 기금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집중투자에 대한 제약	<p>■ 자산별 투자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구분</th> <th>자산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코스닥 투자한도 : 주식투자 가능 위탁자금 NAV의 30%이내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td> </tr> <tr> <td>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td> </tr> </tbody> </table>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코스닥 투자한도 : 주식투자 가능 위탁자금 NAV의 30%이내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한도 : 펀드별 약관 또는 계약서상 최대편입비율 이내 ■ 코스닥 투자한도 : 주식투자 가능 위탁자금 NAV의 30%이내 ■ 주식관련 파생상품 : 편입자산의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금리선물 등) 							
<p>■ 종목별 투자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구분</th> <th>자산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 일로 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td> </tr> <tr> <td>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가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td> </tr> </tbody> </table>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 일로 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가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상품구분	자산종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5%이내 ■ 시가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 매입 금지하고 초과 일로 부터 30일 이내 해소 (단, 6개월 가중평균 시가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은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 한도없음 ■ 특수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금융채, 회사채 :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이내 ■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 위탁자금 NAV의 10%이내 ■ 채권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및 시가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 								

① 리스크관리매뉴얼



② 보유현황 및 매매현황



③ 신종증권

1. 금리, 신용, 추가지수를 포함한 다)상품 및 통화 등의 준거자산 가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되는 국내 및 해외의 증권과 예금(연계신종증권)
2. 파생상품이 내재된 국내 및 해외의 증권과 예금(구조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대상

④ 리스크관리매뉴얼 제3관

제26조 (관리대상)
 ② 기금은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의 경우 BBB+이상(부동산 담보권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이상), CP의 경우 A2-이상인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다.

■ 운용금융기관의 안정성 평가

- 운용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정 및 평가지표에 재무안정성 항목을 포함
- 평가결과에 따라 거래금융기관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로 투자금액 차등
 - 은행의 안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배율(점)
재무안정성	국내신용등급	AAA(25), AA(20), A(15)
	BIS자기자본비율	25
	총자산규모	20
	무수익여신비율	15
	총자산이익률	15

- 판매사(증권사)의 안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배율(점)
재무안정성	영업용순자본비율	20
	자기자본비율	20
	부채비율	15
	총자산규모	15

- 자산운용의 안정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배율	세부평가항목
재무안정성	자기자본비율	5	■ 300% 이상(5), 200% 이상(4), 100% 이상(3), 100% 미만(1)
	자기자본이익률	5	■ 20% 이상(3), 10% 이상(2), 5% 이상(1), 5% 미만(1)
	최근 3년간 순이익	10	■ 최근3년 흑자(10), 최근2년 흑자(8), 최근1년 흑자(6), 기타(4)
	부채비율	5	■ 50% 미만(5), 100% 미만(4), 150% 미만(3), 150% 이상(1)
	총 수탁고	10	■ 혼합형, 주식형 - 5,000억이상(10), 3,000억이상(8), - 4,000억이상(6), 2,000억미만(4) ■ 채권형 - 1조 이상(10), 7,000억이상(8), - 4,000억이상(6), 2,000억미만(4)

[등급별/개별기관별 투자한도]

구분	세부내용	투자한도	
		등급별한도	개별기관별 한도
A	평가순위 30% 이내	총 투자액의 40% 이상	총 투자액의 20% 이내
B	평가순위 30%~70% 이내	총 투자액의 60% 이내	총 투자액의 15% 이내
C	평가순위 70% 초과	예탁배제	

1-3-2 외부위탁 투자기관 사후 관리 관련자료

■ 외부위탁 투자기관 사후관리 체계

- 위탁운용사 정기평가, 월간 펀드점검, 월별 운용보고서 징구 및 외부지원 전산시스템 활용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사후관리 수행주기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일별 또는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별 운용현황 및 운용내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편입비, 편입종목, 평가금액 등 ■ 평가회사, 사무수탁사에서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및 운용내역 모니터링
월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모니터링 보고서① ■ 운용사로부터 전월 운용내역 및 당월 운용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운용보고서②
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별 운용성과 및 운용계획 점검을 위한 운용협의회 실시

- 운용보고서 징구를 통한 이상변동내역 점검

- 외부위탁 투자기관의 월간, 분기, 반기 및 연간 운용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 운용보고서를 의무 제출토록 약정
- 대체투자의 경우, 운용보고서 징구 외에도 분기 또는 반기별 운용설명회 참석을 통해 운용성과 점검, 향후 안정성 및 수익률 제고방안 협의③

구분	세부내용
채권형 및 주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약관 및 계약조항에 따라 매월초 일주일 이내에 전월 운용내역 및 당월 운용계획을 서면으로 징구
대체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 수익구조 및 변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 분기별 운용보고서 징구 ■ 이슈발생시 수시로 운용보고서 징구
연기금투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물 평가주간사로부터 투자내역 및 성과 보고

① 월간모니터링 보고서



② 월간운용보고서



③ 월간운용보고서

- 편입자산 보고서를 통한 모니터링 수행
- 투자대상 기업 영업·재무현황 보고 협의회 등을 통해 약정 또는 채권보전장치 강화 등을 논의

1 위탁운용사 동향점검



2 위탁운용사 실사 점검요소

- 위탁운용회사 경영진 및 자본금 등 경영여건 변화요소 점검
- 담당 펀드매니저 이동현황, 팀제 운용사 팀장 변동사항 등
- 위탁운용사의 운용전략 및 운용 방향 변경 여부
- 위탁펀드 운용계획과 실제운용 간의 일관성 여부 점검
-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 기타 운용성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 점검

● 위탁운용사 정기평가

- 수익률 저조펀드 및 약관 및 펀드계약서 위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운용사 동향점검 ① 및 실사 ② 실시

평가항목	세부내용
BM초과 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기 : 매분기말 ▪ 평가방법 : (㉓ × 50%) + (㉔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㉓ 평가일 기준 최근 2년 BM초과 수익률 ㉔ 평가일 기준 최근 1년 BM초과 수익률 ※ 단, 해당 기간 운용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일 이후 BM초과 수익률로 반영 ▪ 평가대상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동일 운용유형 내 평가대상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설정시기별 운용성과를 합산하여 평가 ※ "BM 초과수익률"은 측정기간 누적수익률을 사용하고,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운용사 평가등급 및 조치사항(자금위탁, 변경위탁, 자금회수 시 적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조치사항
S	▪ BM을 상회하고, 평가순위 상위 20%	▪ 추가위탁
A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21%~50%	
B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51%~100%	▪ 위탁자금 유지
C	▪ BM 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 위탁자금 50%이내 회수가능
D	▪ 2분기 연속 BM 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 위탁자금 전액 회수가능

● 전문기관 외부지원 모니터링 활용

- 펀드평가사의 월간 펀드평가보고서 및 사무수탁사의 운용지원시스템을 활용, 운용 성과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 운용사 변동사항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수익률 저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점검기능 강화
- 투자 후 실시간 자산운용 적정여부 감시 및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자산운용 Feed Back 체계 운영
- 매월 말 펀드평가회사 또는 수탁회사 등으로부터 간접투자지침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위탁자금 회수 등 필요조치 시행

1-3-3 자산운용지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상세자료 [자산배분, 성과 평가, 위험관리, Back-office 관리, ALM, Trading 등의 운영]

■ 자산운용지원 시스템 운영 현황

평가항목	세부내용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용관련 비용절감, 업무간소화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금융시장 투자위험 증대에 따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확보 																																		
시스템 지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용관련 내부시스템과 사무수탁사, 펀드평가사 등의 외부기관 지원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리스크관리의 적시성 및 운용자산의 건전성 확보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 Cyber-Branch - 펀드모니터링(성과평가/위험관리) 시스템 : Fund Monitoring System - 자산배분시스템 - 연기금투자플 성과분석 시스템 : www.fundpool.com 																																		
도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자금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 자금집행 권한 관리 ■ 효율적 자산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관리 및 보유자금의 통합 관리 - 실시간 자금집금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 Idle money 최소화 ■ 비용절감 및 업무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작업 위주에서 전산처리로의 업무처리 자동화 - 계좌 거래내역 조회, 전표작성업무, 자금보고서 자동화 등 																																		
시스템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통합관리시스템(Cyber-Branch)^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자금관리</td> <td>■ 자금조회, 지급 및 이체관리</td> </tr> <tr> <td>금융관리</td> <td>■ 계좌잔액관리, 현금시제관리, 금융상품관리</td> </tr> <tr> <td>정보서비스</td> <td>■ 예금 및 신탁정보, 수수료 및 환율조회 등</td> </tr> <tr> <td>보고서</td> <td>■ 금융 거래내역, 계좌시재보고서 등</td> </tr> <tr> <td>기초정보</td> <td>■ 사용자 및 거래처 관리, 환경설정 등</td> </tr> </tbody> </table> ■ 펀드모니터링시스템 (Fund Monitoring System)^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펀드잔고현황</td> <td>■ 기금 투자 수익증권 잔고현황</td> </tr> <tr> <td>수익률 현황</td> <td>■ 기간별, 회사별, 누적수익률 현황</td> </tr> <tr> <td>보유자산현황</td> <td>■ 펀드별, 회사별 보유자산 분석</td> </tr> <tr> <td>매매자산현황</td> <td>■ 펀드별, 회사별 매매자산 분석</td> </tr> <tr> <td>자산운용분석</td> <td>■ 채권종류별, 등급별, 듀레이션, 업종별 투자분석</td> </tr> <tr> <td>성과요인분석</td> <td>■ 자산배분효과, 증권선택효과 등 요인분석</td> </tr> <tr> <td>위험관리</td> <td>■ 위험조정성과, 변동성, 채권 민감도 분석 등</td> </tr> </tbody> </table> ■ 자산배분시스템^③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자금수지분석</td> <td>■ 자금유출입, 적정유동성규모 추정, 적정단기자금분석</td> </tr> <tr> <td>자산배분</td> <td>■ 중장기 자산배분, 기금자산배분안 도출</td> </tr> </tbody> </table> ■ 연기금투자플 성과분석 시스템^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금투자플 예치비중이 전체자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투자플에서 제공하는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투자상품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계좌정보, 펀드정보, 시장분석, 펀드평가사 성과분석, 교육/자료실 등 	구분	세부내용	자금관리	■ 자금조회, 지급 및 이체관리	금융관리	■ 계좌잔액관리, 현금시제관리, 금융상품관리	정보서비스	■ 예금 및 신탁정보, 수수료 및 환율조회 등	보고서	■ 금융 거래내역, 계좌시재보고서 등	기초정보	■ 사용자 및 거래처 관리, 환경설정 등	구분	세부내용	펀드잔고현황	■ 기금 투자 수익증권 잔고현황	수익률 현황	■ 기간별, 회사별, 누적수익률 현황	보유자산현황	■ 펀드별, 회사별 보유자산 분석	매매자산현황	■ 펀드별, 회사별 매매자산 분석	자산운용분석	■ 채권종류별, 등급별, 듀레이션, 업종별 투자분석	성과요인분석	■ 자산배분효과, 증권선택효과 등 요인분석	위험관리	■ 위험조정성과, 변동성, 채권 민감도 분석 등	구분	세부내용	자금수지분석	■ 자금유출입, 적정유동성규모 추정, 적정단기자금분석	자산배분	■ 중장기 자산배분, 기금자산배분안 도출
구분	세부내용																																		
자금관리	■ 자금조회, 지급 및 이체관리																																		
금융관리	■ 계좌잔액관리, 현금시제관리, 금융상품관리																																		
정보서비스	■ 예금 및 신탁정보, 수수료 및 환율조회 등																																		
보고서	■ 금융 거래내역, 계좌시재보고서 등																																		
기초정보	■ 사용자 및 거래처 관리, 환경설정 등																																		
구분	세부내용																																		
펀드잔고현황	■ 기금 투자 수익증권 잔고현황																																		
수익률 현황	■ 기간별, 회사별, 누적수익률 현황																																		
보유자산현황	■ 펀드별, 회사별 보유자산 분석																																		
매매자산현황	■ 펀드별, 회사별 매매자산 분석																																		
자산운용분석	■ 채권종류별, 등급별, 듀레이션, 업종별 투자분석																																		
성과요인분석	■ 자산배분효과, 증권선택효과 등 요인분석																																		
위험관리	■ 위험조정성과, 변동성, 채권 민감도 분석 등																																		
구분	세부내용																																		
자금수지분석	■ 자금유출입, 적정유동성규모 추정, 적정단기자금분석																																		
자산배분	■ 중장기 자산배분, 기금자산배분안 도출																																		

① Cyber-Branch

② Fund Monitoring System

③ 자산배분시스템

④ 적정유동성 규모 추정



ARTISTREE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전사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험의 인지 및 측정으로 관리효율성 증대

- 고위험 투자유형의 외부투자자문기구 사전심의로 사전적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관련 의사결정 시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 필수
- 전사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율 극대화 추진
 - ↳ 외부 전문로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후속조치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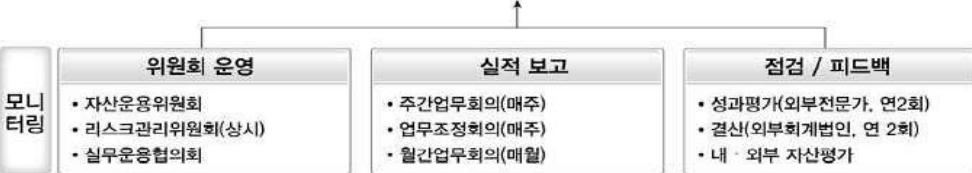
①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2-①-1 자산운용관리상의 위험측정(시장위험, 운용자산의 부실화 위험 등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위험)과 관리 활동 상세자료

■ 위험관리 체계 및 관리방법

● 위험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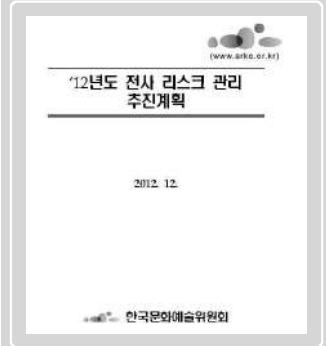
위험 유형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험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월별수지 분석 및 일일 자금계획에 의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상태 고려, 금융기관선정 입정기준 미달 채권 및 주식펀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월별, 분기별(측정/통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점검 등 내부 통제 시스템 월별 수지 분석 및 일일 자금계획에 의한 운용
위험 관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수지분석을 통한 적정단기자금 규모 추정 자금수지에측을 통한 자금 보유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 운용사별 예탁 한도 설정 은행 선정기준에 신용 등급 반영 채권 · 주식 편입종목 제한 금융시장 수시 모니터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VaR값의 한도 설정 및 관리 간접투자상품운용기준을 통한 수익률 제고방안 요구 등 수익증권 수익률 관리 체계적인 시장위험 관리를 위한 연가금투자물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조직 및 평가와 통제 조직을 분리 각 조직은 주요 의사결정 시 외부위원이 일정부분 이상 포함된 위원회 의견을 반영



● 위험관리 방법

구분	구성
전사적 통합리스크 관리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사차원의 리스크를 실시간 측정, 모니터링, 통제 할 수 있는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체계적 리스크관리 실시 매월 위험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
위험종류별 구분관리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운용 관련 위험요인을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운영위험으로 구분하여 최적의 위험관리 실행
독립적 위험관리조직 운영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담당조직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 리스크관리 실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Feed-B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별 및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위험관리 연 2회 외부 전문가의 자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① 전사리스크 관리추진



② 자산운용지침

- 제18조(위험 종류별 관리방안)
- ① 시장위험의 관리
 - ② 신용위험의 관리
 - ③ 유동성위험의 관리
 - ④ 운영위험의 관리

③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 제5조 (리스크관리위원회)
- ①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적립금 운용 전반의 견제 및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 부서와는 별도로 기획예산부에서 동 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
 - ②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VaR산출방법

$$R_v = w_1 R_1 + w_2 R_2$$

$$= w_1 \frac{\Delta V_1}{V_1} + w_2 \frac{\Delta V_2}{V_2}$$

$$= w_1 R_{2022} + w_2 (-R_2) \Delta YTM_{24}$$

$$VaR(P) = k \times \sigma(R_v) \times \sqrt{T} \text{ 이므로}$$

$$VaR(P) = \sqrt{w_1^2 VaR(s)^2 + w_2^2 VaR(b)^2} - 2w_1 w_2 \rho_{1,2} VaR(s) VaR(b)$$

$$VaR(s) = k \times \sigma(s) \times \sqrt{T}$$

$$VaR(b) = k \times \sigma(b) \times \sqrt{T}$$

2 금융기관 선정기준

금융기관	평가항목
은행	국내신용등급
	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규모
	무수익여신비율
판매사	총자산이익률
	영업용순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운용사	부채비율
	총자산규모
	수익증권 판매실적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3년간 순이익
	부채비율
	총 수탁고
	BM대비 초과수익률
	RRAR(유형평균)
과거 자금운용실적	
운용전문 인력수	
전문인력 평균경력	
1인당 펀드수	

3 기간별 적정유동성규모(억원)

구분	금액(월별)	금액(누적)
1개월	77.37	77.37
3개월	24.59	134.00
6개월	16.51	189.51
12개월	11.41	268.00

위험의 종류별 측정 및 관리방안

위험의 종류별 관리방안

구분	세부내용														
시장위험 (Market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위험은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으로서 Value at Risk(VaR)로 측정관리 VaR 산출방법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률과 통계적 모델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분포를 예측하여 VaR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Delta-normal method를 사용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대상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인 주식, 채권 관련 금융상품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정기에 금 등 VaR 산출의 의미가 없는 상품은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관리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채권, 직접투자 및 주식, 채권 편입상품 수익증권과 같이 주식,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의 주식, 채권 평가금액 </td> </tr> <tr> <td>제외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Call, CD, 표지어음 등의 주식, 채권 비편입 상품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관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채권, 직접투자 및 주식, 채권 편입상품 수익증권과 같이 주식,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의 주식, 채권 평가금액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Call, CD, 표지어음 등의 주식, 채권 비편입 상품 								
구분	내용														
관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채권, 직접투자 및 주식, 채권 편입상품 수익증권과 같이 주식,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의 주식, 채권 평가금액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Call, CD, 표지어음 등의 주식, 채권 비편입 상품 														
신용위험 (Credit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서 발행기관의 신용위험 및 거래기관의 신용위험은 거래대상 제한 및 총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해 관리 합리적 금융기간 선정기준 적용 및 등급/개별기관별 투자한도 설정으로 발생 가능 신용위험을 사전에 관리② 거래대상 제한 및 총 투자한도 설정 등으로 관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투자자산</th> <th>관리방안</th> </tr> </thead> <tbody> <tr> <td>채권</td> <td>신용등급 BBB+ 이상 (담보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 이상)</td> </tr> <tr> <td>CP</td> <td>신용등급 A2- 이상</td> </tr> </tbody> </table>	투자자산	관리방안	채권	신용등급 BBB+ 이상 (담보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 이상)	CP	신용등급 A2- 이상								
투자자산	관리방안														
채권	신용등급 BBB+ 이상 (담보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 이상)														
CP	신용등급 A2- 이상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으로 기간별 자금수급의 예측을 통한 적정 유동성 산출을 통해 관리③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순지출의 분포</th> <th>T개월간의 자금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개월 누적자금 = 1.65 × 오차의 변동성 × √T </td> </tr> <tr>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유동성위험 관리 목표수준</th> <th>k</th> </tr> </thead> <tbody> <tr> <td>90% 수준</td> <td>1.28</td> </tr> <tr> <td>95% 수준</td> <td>1.65</td> </tr> <tr> <td>99% 수준</td> <td>2.33</td> </tr> </tbody> </table> </td> <td> - 기간 : 최근 4년 ('08년~'11년) 월별 데이터 - 자료 : 계획자금유출입, 실적자금유출입 - 오차 : 계획순지출 - 실적순지출 </td> </tr> </tbody> </table>	순지출의 분포	T개월간의 자금규모		T개월 누적자금 = 1.65 × 오차의 변동성 × √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유동성위험 관리 목표수준</th> <th>k</th> </tr> </thead> <tbody> <tr> <td>90% 수준</td> <td>1.28</td> </tr> <tr> <td>95% 수준</td> <td>1.65</td> </tr> <tr> <td>99% 수준</td> <td>2.33</td> </tr> </tbody> </table>	유동성위험 관리 목표수준	k	90% 수준	1.28	95% 수준	1.65	99% 수준	2.33	- 기간 : 최근 4년 ('08년~'11년) 월별 데이터 - 자료 : 계획자금유출입, 실적자금유출입 - 오차 : 계획순지출 - 실적순지출
순지출의 분포	T개월간의 자금규모														
	T개월 누적자금 = 1.65 × 오차의 변동성 × √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유동성위험 관리 목표수준</th> <th>k</th> </tr> </thead> <tbody> <tr> <td>90% 수준</td> <td>1.28</td> </tr> <tr> <td>95% 수준</td> <td>1.65</td> </tr> <tr> <td>99% 수준</td> <td>2.33</td> </tr> </tbody> </table>	유동성위험 관리 목표수준	k	90% 수준	1.28	95% 수준	1.65	99% 수준	2.33	- 기간 : 최근 4년 ('08년~'11년) 월별 데이터 - 자료 : 계획자금유출입, 실적자금유출입 - 오차 : 계획순지출 - 실적순지출						
유동성위험 관리 목표수준	k														
90% 수준	1.28														
95% 수준	1.65														
99% 수준	2.33														
운영위험 (Operation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험은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하여 운용조직과 Back office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담당자의 규정 준수여부 및 실물, 위탁자산 점검 등을 정책기획부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펀드평가사로부터 월간모니터링 보고서에 운용기관의 법규, 지침 등의 준수여부를 월간단위로 주기 점검 														



2-①-2

고위험자산 투자 전 심의 안건 등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 상세자료

■ 위험관리 관련 외부 자문기구 활동내역

● 위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기적으로 외부 자문위원회에 보고/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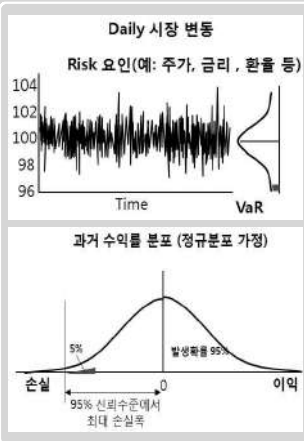
위원회 구분	보고 및 심의내용
자산운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2012.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및 2012년도 개선방안 심의 - 부동산PF 사후처리 현황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 운용관련 제규정 개정(안) 심의 ■ 제2차 자산운용위원회(2012.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간보고 - 부동산PF 투자상품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한화 글로벌3 사모재간접 펀드 편입 SRC-DI펀드 청산 관련 심의 -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 및 향후 운용방안 논의 ■ 제3차 자산운용위원회(2012.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 - 부동산PF 투자상품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 및 향후 운용방안 논의 ■ 제4차 자산운용위원회(2012.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심의 - 2013년도 기금운용실적평가 편람 개선(안)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관리위원회' 를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리스크 관리체계 간소화 할 필요 존재 -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R&R 정립을 위해 전사 리스크를 경영, 사업, 기금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소위원회 운영 ■ 전년도 정부평가 지적사항 개선방안 논의 ■ 리스크관리 개선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의 인식평가, 핵심 리스크 선정 및 매뉴얼 작성 등 효율적 리스크 대응체계 수립이 필요 - 문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 관리를 전담하는 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 -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대응체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 공유와 확산을 통해 리스크에 대한 인식 시킬 필요가 있음 - 리스크 발생시 대응 체계, 즉 위기대응 절차와 위기판단 기준 등을 체계화 시키는 것 또한 중요

■ 고위험 투자 전 심의안건 활동 실적

● 기금의 건정성 확보 및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플 예치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연중 만기도래 투자상품 모두를 연기금투자플에 예치하여 고위험 투자에 대한 사전심의 실적은 없음

2 ② 포트폴리오 전체 통합위험관리의 효율성

1 변동성 추정 및 산출



2 소진비율에 따른 위험 ZONE 설정

- Green
-정상구간(~70%)
- Yellow
-주의구간으로 일간으로 VaR 한도 점검을 통해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강화(70%~100%)
- Red
-위험구간으로 변동성이 높은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비중 조절(100%~)

2-2-1

시장위험관리 시스템 및 운용에 관한 상세내역과 위험해소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및 IPS 반영자료

■ 시장위험관리 시스템

- 허용위험한도 산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리스크 관리
 - 투자 상품의 과거 시장 변동성을 추정하고 추정기간의 합리성과 상품별로 동일한 추정기간을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변동성을 사용①
 -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허용위험한도는 기금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자산운용 정책수행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
- 2012년도 허용위험한도 산출
 - 투자 상품의 상관계수를 고려한 기대수익률과 95%신뢰수준의 VaR를 적용하여 기금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손실한도를 산출
 - 기금의 2012년도 허용위험한도는 단기자금의 12억원(0.5%), 중장기 자금 125억원(6.08%)으로 설정

■ 연간 허용위험한도의 모니터링 및 점검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 일간/월간 VaR를 측정하여 연간 허용위험한도 초과여부를 점검하고 초과시 1개월 이내 조정

[2012년도 허용위험한도 월별 VaR 관리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정 한도	금액	137	137	137	137	137	137	137	137	137	137	137
	비율	6.13%										
VaR	금액	131	130	126	124	128	119	114	101	89	88	85
	소진 비율②	96	95	92	91	93	87	83	74	65	64	62
초과여부	Y	Y	Y	Y	Y	Y	Y	Y	Y	G	G	G

■ 시장위험의 관리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IPS 반영

- 자산운용지침 제10조 (허용위험한도)
 - 기금은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리스크의 연간 총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 전체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을 5%이하로 통제
 - 2012년도 허용위험한도 : 단기자금의 12억원(0.5%), 중장기 자금 125억원(6.08%)
- 자산운용지침 제18조 (위험 종류별 관리방안)

위험구분	관리방안
시장위험	■ VaR로 측정관리하며, 투자자산별 허용위험의 수준을 설정하여 관리
신용위험	■ 발행기관의 신용위험 및 거래기관의 신용위험은 거래대상 제한 및 총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해 관리
유동성위험	■ 기금의 유동성위험은 기간별 자금 수급의 예측 및 유동성 갭(Gap)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운영위험	■ 자산운용담당자의 규정 준수여부 및 실물, 위탁자산 점검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2-2-2 자산운용 시 불리한 상황 발생 시 대처 프로세스와 수행실적에 대한 상세내역

■ 전사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①~③

● 추진목적

- 리스크의 인식/평가, 핵심 리스크 선정 및 매뉴얼 작성을 통해 효율적 리스크 대응체계 수립
-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대응체계 수립을 통해 리스크에 대한 인식 공유확산
- 리스크 관리체계 및 위기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ERM 시스템 안착

● 전사 리스크관리 구축의 의의

- 조직 전체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조직의 기능유지와 비전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여 리스크관리 의식 확산에 기여
- 전사적인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을 통해 조직의 설립목적 및 비전 달성의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비전 달성에 기여

● 중점 추진방향

- 전사 리스크를 경영, 사업, 기금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소위원회 운영④
-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도 운영해오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리스크 관리체계 간소화
- 전사 리스크 관리와 감사 차원의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을 연계하여 리스크 관리 및 내부감사 업무의 실효성 극대화

● 전사리스크의 선정

- 추진경과

구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① 계획 수립	■ 핵심리스크 대응체계 구축계획 수립	'12.12.12
② 리스크 인식	■ 전사리스크 현황 파악 및 평가	~ '12.12.14
③ 리스크 추가	■ 1차 파악 리스크 중 추가삭제 검토	~ '12.12.18
④ 매뉴얼 작성	■ 리스크별 매뉴얼 초안 작성	~ '12.12.20
⑤ 리스크 평가	■ 리스크별 영향력 및 빈도 2차 평가	~ '11.12.24
⑥ 실무자 협의	■ 리스크 평가결과에 대한 실무자 협의	'11.12.26
⑦ 리스크 확정	■ 리스크 대응매뉴얼 확정	'12.12.27

- 리스크 인식
 - 인식 리스크수 : “사업운영계획 실행수준 저조” 등 30개
 - 리스크오너별 리스크 현황

경영전략본부	예술진흥본부	문화나눔본부	감사부
16	4	9	1

- 리스크 종류별 현황

경영리스크			운영리스크				재난	커뮤니케이션
소개	전략	재무	소개	프로세스	인력	IT	재난	소통위기
9	7	2	17	8	5	4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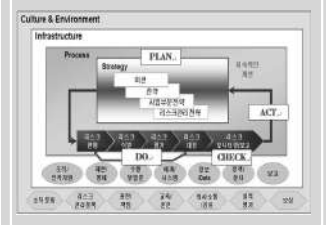
① 리스크 정의

- 규정위반, 윤리문제, 사기, 재난 등 손실 또는 유해사건 발생위험의 최소화(Minimize Hazard)
- 미래예측, 예산문제, 목표달성 등과 관련된 변동성 또는 불확실성의 해소(Resolve Uncertainty)
- 경쟁력 강화, 혁신 추구, 전략적 유연성 및 명성 확보 등 기업 가치 증대 기여 기회의 최대화(Maximize Opportunity)

② 전사리스크 정의

- 조직 가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인식/평가/관리하는 전사 전략
- 주요 경영위험을 전사 시각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Risk Portfolio)로 인식관리하는 체계화된 리스크관리방식
- 전사 리스크관리(ERM) = 리스크관리 + 위기관리

③ 프레임워크



④ 리스크분야 및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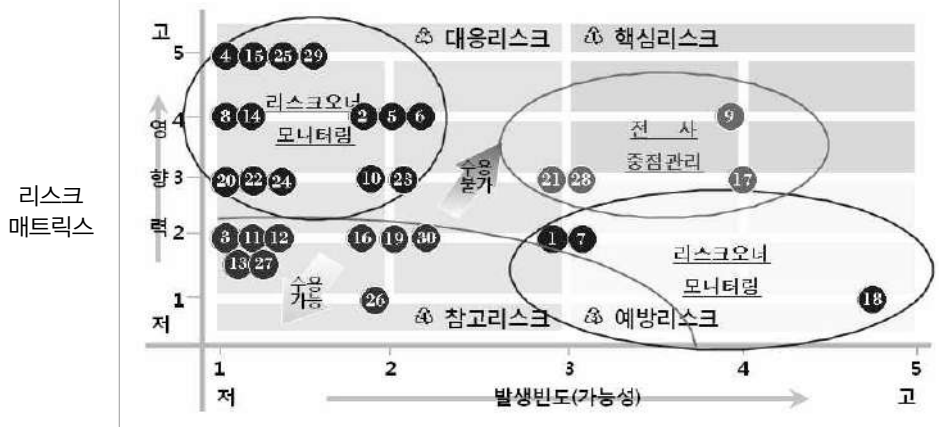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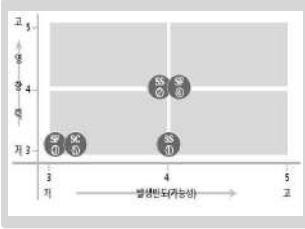
- 리스크 평가

구분	세부내용					
평가방법	■(기준) 발생빈도(가능성)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 - 발생빈도 최다 5 ~ 최저 1, 영향력 최대 5 ~ 최소 1 ■(방식) 2차 평가 및 조정을 통해 결정 - 리스크오너별 1차 평가, 전 부서 대상 2차 평가 및 실무자 협의 조정					
평가기준	■(기준) 발생빈도(가능성)와 영향력에 따라 4개 리스크 군으로 분류① - 핵심리스크(5)②, 대응리스크(14)③, 예방리스크(3)④, 참고리스크(8)					
	기준	1	2	3	4	5
발생 빈도	5년 1회	2~3년 1회	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이주 자주 발생
영향력	부서차원 사업운영저해	본부차원 사업운영저해	본부차원 사업운영저해	전사적 사업운영저해	전사적 영향력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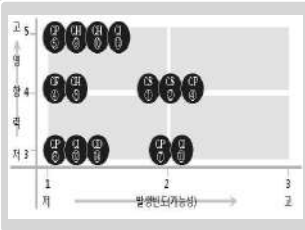
① 평가기준에 따른 리스크분류

분류	발생빈도&영향력
핵심 리스크(5)	· 영향력 3이상 · 발생빈도 3이상
대응 리스크(14)	· 영향력 3이상 · 발생빈도 3미만
예방 리스크(3)	· 영향력 3미만 · 발생빈도 3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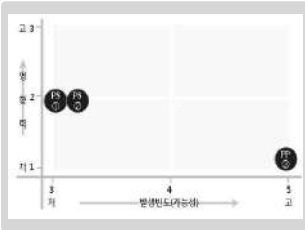
② 핵심리스크(5) - 매트릭스



③ 대응리스크(14) - 매트릭스



④ 예방리스크(3) - 매트릭스



■ 전사차원에서의 유동성위험은 빈도4, 영향력4로 핵심리스크로 분류
→ 전사 중점관리 대상

연번	대분류	중분류	리스크명	주무부서	빈도	영향력
1	경영	전략	사업운영계획 실행 지연	정책기획부	3	2
2	운영	프로세스	내부경영평가 기준 오류	경영인사부	2	4
3	운영	프로세스	소송 제척기간 경과	경영인사부	1	2
4	운영	프로세스	중요 소송사건 발생	경영인사부	1	5
5	경영	전략	전략경영체계 적정성 미흡	정책기획부	2	4
6	경영	전략	조직운영 부적정	정책기획부	2	4
7	경영	전략	예술인사랑방 활동 부진	정책기획부	3	2
8	경영	재무	예산 부족	정책기획부	1	4
9	경영	재무	유동성 위험	예술나눔부	4	4
10	운영	프로세스	고객지원센터 상담품질 저하	문화복지부	2	3
11	재난	재난	시설물 결함	경영인사부	1	2
12	운영	인력	현금출납업무 부조리	경영인사부	1	2
13	재난	재난	시설물 파괴	경영인사부	1	2
14	운영	인력	전문인재 대량 유출	경영인사부	1	4
15	운영	인력	노조 파업	경영인사부	1	5
16	운영	IT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오류	사업평가부	2	2
17	경영	전략	문화카드 발급률 저조	문화복지부	4	3
18	운영	프로세스	기금사업 집단민원 다발	예술지원부	5	1
중략						
30	운영	인력	전문인력 역량 배양 실패	인력개발원	2	2



■ 전사 리스크관리 및 위기대응 매뉴얼①,②

● 핵심리스크 지표

구분	세부내용									
리스크개요	■ 전사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위험을 핵심리스크로 분류									
	리스크 코드	S-F-④				리스크명	유동성위험			
		핵심-경영-재무								
	리스크 종류	■	□	□	□	전략 연계	□	□	■	□
	발생 빈도	□	■	□	□	영향력	□	■	□	□
	리스크 오너	5	4	3	2		5	4	3	1
	문화나눔부장		주무부서		예술나눔부		유관부서		정책기획부 경영인사부	
핵심 리스크지표	지표명	산식	판단기준							
	운용자금 확보율	(운용자금 확보액 / 월평균지출액)* 100	Green/안전	Yellow/주의	Orange/경계	Red/심각				
			200%이상	200%이상 170%미만	170%미만 140%이상	140%미만 100%이상				

●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③,④

- 주의상황(Yellow) : 운용자금 확보율 200% 미만으로 하락

연번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유관부서
1	점검	■ 일일 시재 확인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2	재검토	■ 지출계획 재수립		

- 경계상황(Orange) : 운용자금 확보율 170% 미만으로 하락

연번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유관부서
1	점검	■ 유동성 악화요인 점검	예술나눔부	경영인사부
2	대응방안 마련	■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증가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3	지출통제	■ 지출계획 재검토 및 통제강화방안마련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경영인사부

- 심각상황(Red) : 운용자금 부족사태 발생임박(운용자금 확보율 140% 미만)

연번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유관부서
1	수입확보 노력	■ 수입 확보 대응방안 마련 실행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2	지출통제	■ 긴급자금 제외한 모든 자금 동결 조치	예술나눔부	경영인사부
3	사업계획 수정	■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보류 및 폐지 검토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 위기발생(Crisis) : 유동성 부족사태 발생(운용자금 확보율 100% 미만)

연번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유관부서
1	점검	■ 일일 시재 확인 및 지출계획 재수립	예술나눔부	경영인사부
2	점검	■ 유동성 악화요인 점검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3	대응방안 수립	■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증가 대응방안 수립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4	지출통제	■ 지출계획 재검토 및 통제강화방안수립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5	수입확보 노력	■ 수입 확보 대응방안마련 실행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6	지출통제	■ 긴급자금 제외한 모든 자금 동결 조치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7	사업계획 수정	■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보류 및 폐지 검토	예술나눔부	정책기획부

① 리스크 Map



② 프로세스



③ 리스크인식 및 평가 작성양식

④ 리스크 조기경보지표 및 대응매뉴얼 작성양식

2 ③ 부실자산 처리의 효율성

2-③-1

부실 또는 계약만기초과 운용자산 내역[내용 및 규모 포함] 및 회수노력 또는 원금손실발생 자산 처리 등에 관한 상세자료

부실 또는 계약만기 초과 운용자산 내역

부실자산 발생배경

구분	내용
외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사태 속출로 부동산 PF의 부실화^{①,②}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PF연체율 급등 ■ 총 120조원 규모에 이르는 전국의 50여개의 정부-민간 공동 공모형 PF개발사업도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
내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가입시 수익구조 및 사업타당성, 채권보전장치 검토 등 사전 검토 미흡 - 2010년 사업성기금 운용실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③

계약만기 초과 운용자산 내역(사업장별 부실발생 사유)

- 장기무수의 부실투자상품의 대부분은 기초자산이 부동산인 국내/외 PF 상품으로 총 투자액은 800억원 규모(투자액 기준)

운용기관	투자액	투자시기	부실발생사유	사업내용
하나은행	100억원	200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공사 퇴출 ■ 소규모 사업지로 교체시공사 참여의사 저조 	흥운동 아파트개발사업
하나은행	200억원	200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공사 퇴출 ■ 필수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인허가 차질 ■ 소규모 사업지로 교체시공사 참여의사 저조 	광주 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
한국증권	100억원	200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경기 부진에 따른 담보물건 저가 매각 ■ 관리소홀에 따른 담보물건의 임료 미징수 등 기회비용 발생 	경남 창원상가 처분수익권
우리은행	110억원	200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관련지자체의 사업인 허가 지연 ■ 공동개발 방식(민/관)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부조화 발생 	구리시 인창동 유통단지개발사업
피닉스자산	140억원	200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분양경기 부진에 따른 분양율 저조 ■ 조건부 원리금 1순위 상환계약 불이행 ■ 선순위 자금회수를 위한 Bulk Sale 	호주 킬랄라 공동주택개발사업
한화자산	150억원	2008.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채무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및 분양중단 ■ 복잡한 사업구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대립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계	800억원			

1 관련기사

부실 투자권 '경제 서한문단'
 -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

부동산이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이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이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만 원당 100% 수익률 기대... 1만 원당 100% 수익률 기대... 1만 원당 100% 수익률 기대...

부동산이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이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이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관련 분석보고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경제적 파장
 - 계층, 구조와 특성, 원인과 핵심원인을 중심으로 -

대부분 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는 경제 상황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 상황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 상황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1. PF의 특성과 위험요소

- PF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액이 큰 편이다.
- PF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액이 큰 편이다.
- PF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액이 큰 편이다.

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

2010. 12.

감 사 원



■ 부실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노력 지속 추진

●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사업장별 후속조치 현황

- 부실의 실질적 원인파악 및 법률적/비법률적 현안분석을 통한 사업장별 구체적 후속조치 실행을 위해 추진되었던 부동산 전문 로펌의 컨설팅(2011.1월~2011.12월)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지속 추진①
- 사업장별 후속조치 추진상황

운용기관	투자액	사업장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내역
하나은행	100억원	흥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협의 : 18회, 현장실사 : 1회 ■ 차입형태지신탁 개발 추진 (한국자산신탁, 2012.4월) ■ 서대문구청 사업승인 득(2012.8월)② -사업장규모(아파트 88세대, 오피스텔 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승인 득한 후 분양개시(2012.11월) ■ 회수예상액 : 투자원금 100억원(100%)
하나은행	200억원	봉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협의 : 22회, 현장실사 : 8회 ■ 차입형태지신탁 개발 추진(KB부동산신탁, 2012.5월) -사업장규모(아파트 183세대) ■ 광주 남구청 사업승인 득(2012.11월)③ ■ 회수예상액 : 약 100억원(50%)
한국증권	100억원	경남 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협의 : 4회, 현장실사 : 1회 ■ 점유관계 정리를 위한 명도소송 진행 및 명도집행 ■ 연대보증인 보증채무 청구소송 진행(승소) 및 강제집행 ■ 분양대금 일부 회수 : 46억원(연기금투자풀 예치) ■ 회수예상액 : 약 85억원(85%)
우리은행	110억원	구리시 인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협의 : 12회, 현장실사 : 1회 ■ 관련지자체 종합계발계획에 발표에 따른 사업진행가능성 증가 ■ 시장해제를 통한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대환가능성 증가 ■ 회수예상액 : 원금 110억원+이자(100%+α)
피닉스자산	140억원	호주 킬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협의 : 10회, 현장실사 : 1회(호주 현지) ■ 적극적 분양계획 수립으로 잔여물량 분양완료(2012.7월) ■ 분양대금 일부 회수 : 83억원(연기금투자풀 예치) ■ 손실보전을 위한 현지 국세청 상대 소송 진행 중 ■ 운송사 상대 손실보전을 위한 법적대응 계획 수립 ■ 회수예상액 : 약 90억원(64.3%)
한화자산	150억원	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협의 : 16회, 현장실사 : 4회 ■ 사업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 계약 체결(법무법인 지안) ■ 담보주식 근질권 행사(2012.12월)로 사업투명성 확보→공사재개 가능성 증대 ■ 회수예상액 : 원금 150억원(100%)

● 부실자산 분류 상품에 대한 손실처리 완료

- 장기 무수익 자산의 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 2012년 결산까지 마무리 함에 따라 자금 수익성 제고의 고질적 장애요소 제거

참고 장기무수익 부실자산 손실처리 내역

손실인식연도	투자상품	투자액	손실처리액	비고
2009년	흥은동 아파트개발사업	100억원	31억원	대손충당금 설정(1차)
2012년			69억원	대손충당금 설정(2차)
2009년	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	200억원	155억원	대손충당금 설정(1차)
2012년			27억원	대손충당금 설정(2차)
2010년	구리 인창동 유통단지 개발사업	110억원	40억원	대손충당금 설정
2011년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	150억원	150억원	자산상각(감액)
2012년	호주 킬랄라 공동주택 개발사업	140억원	32억원	처분손실

① 주요추진경과

구분	추진내용
자문계획 수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부동산 투자 기금 현황파악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법률자문 용역
자문기관 입찰	법무법인 지안, 법무법인 코리아, 법무법인 유진
컨설팅계약 체결	법무법인 유진 용역금액 : 5,000만원
컨설팅수행	개별사업장에 대한 각종 자료검토 및 향후 후속조치를 위한 정밀실사 법률적, 비법률적 리스크 검토 사업장별 분석보고서 징구
사후관리 계획수립	기 법률검토를 의뢰한 6개 부동산PF 투자상의 각 사업장별 정리절차에 따른 투자원금 회수 조치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업무 수행
관리계약 체결	법무법인 유진 용역금액 : 5,280만원
관리용역 수행	신탁재산 적정 관리 및 보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 시행 정밀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진행 최적화 방안 마련 계류중인 소송에 대한 진행경과 파악 및 대응책 강구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 징구

② 흥은동 사업승인

Seo-daemun-gu Seodong Development Project Approval Document. Key points include: 1. Project approval for development. 2. Approval of the development plan. 3.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plan. 4. Approval of the sales plan. 5. Approval of the management plan. 6. Approval of the environmental plan. 7. Approval of the traffic plan. 8. Approval of the fire safety plan. 9. Approval of the disaster prevention plan. 10. Approval of the other necessary plans.

③ 봉선동 사업승인

Bongseon-dong Development Project Approval Document. Key points include: 1. Project approval for development. 2. Approval of the development plan. 3.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plan. 4. Approval of the sales plan. 5. Approval of the management plan. 6. Approval of the environmental plan. 7. Approval of the traffic plan. 8. Approval of the fire safety plan. 9. Approval of the disaster prevention plan. 10. Approval of the other necessary plans.



ARTISTREE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효율적인 자산운용 성과관리로 유기적인 환류실시 및 대내외 신인도 제고

-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된 시가평가액을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한 시간가중수익률 산출
 - ↳ 대체투자 등의 시가평가 불가 일부상품에 대해서도 근거있는 평가를 통해 수익률에 반영
-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과의 운용성과 차이 원인분석을 통한 차기운용 환류
- 위험대비 성과 및 원인분석 실시
- 보상체계와 연관된 통합 성과관리제도 운영
 - ↳ 평가결과와 보상체계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기존 성과관리제도 조정/통합

③ ①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차이분석

3-①-1

운용상품별, 전체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산출방식에 관한 근거 자료

■ 운용상품 수익률 산출방식

● 시간가중수익률 산출①

-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된 시가평가액을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보유자산의 순자산가치 평가, 위험조정 수익률평가와 기준수익률대비 운용수익률 분석 및 제반 성과요인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 일별로 특정 운용상품/필요 분석단위/전체 자산에 대해 일일수익률 및 누적 시간가중수익률 산출
- 수익률 산출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수익률 산출 의뢰②

● 개별 상품별 운용수익률 산출방법

구분	세부내용
일별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수수료 및 위탁보수 등을 차감한 순 실현가치기준으로 평가 ■ 일별수익률 = (당일평가액/전일평가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평가액 = 당일평가액+기간 중 현금누적 유입액(매도, 이자, 배당금 등) ※ 전일평가액 = 전일평가액+기간 중 현금누적 유출액(매입, 유상증장 등)
누적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별 수익률을 평가기간 동안 누적하여 산출 - 누적수익률 = (1+전일누적수익률)X(1+당일수익률)-1
상품별 수익률 산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금리상품(정기예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수익률을 근거로 평가말일까지 발생(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산출 ■ 주식형, 채권형 등 수익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에 공시되는 일별 기준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금액 산출 ■ 대체투자 등의 기준가 미산출 투자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산(부동산 및 실물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별 장부가평가를 실시하되, 현금유출입(이자 및 배당, 감액 등)이 일어난 시점의 일별수익률을 반영하여 시간가중수익률 산출

① 시간가중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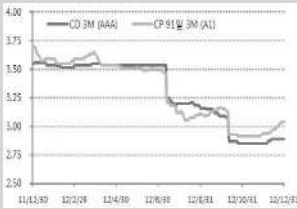
- 매 단위기간중의 운용수익률을 산출하여 이를 가중한 값으로, 현금 유출입에 따른 투자원금의 변화를 감안한 수익률
- 현금유출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부기간을 구분하여 펀드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구간별 수익률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하여 총수익률 산출

② 수익률산출 의뢰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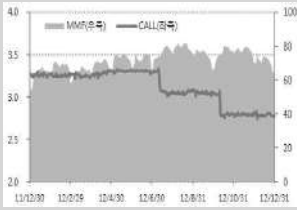


1 2012년 단기금융 및 펀드시장

CD, CP 수익률 추이



CD, CP 수익률 추이



2 2012년 채권시장

주요금리 현황

(단위: % bp)

구분	금리	변동폭	
	2012년말	2011년말	
CD91	2.88	3.55	▼66
통안채2Y	2.82	3.50	▼68
국고3Y	2.82	3.34	▼52
국고5Y	2.96	3.46	▼50
회사채3Y(AA-)	3.35	4.10	▼75
회사채 Spread	48	76	▼28

주요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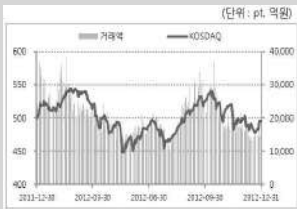


3 2012년 주식시장

KOSPI지수 및 거래규모



KOSDAQ지수 및 거래규모



3-1-2

운용부문별 및 운용자산별[또는 운용상품별], 그리고 기금전체 기준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의 차이 및 원인분석 자료

1 운용자산별 기준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의 차이 및 원인분석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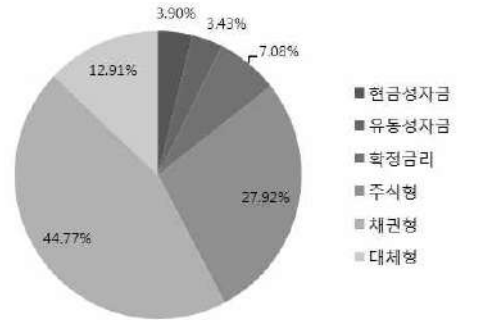
1 운용자금 투자현황

- 2012년 문예진흥기금 자산유형별 비중은 단기자금의 경우 현금성자금 3.90%, 유동성자금 3.43%
- 중장기자금의 자산유형별 비중은 확정금리형 7.08%, 채권형 44.77%, 주식형 27.92%, 대체형 12.91%
- 현금성 및 중장기자금은 일부 금액을 연기금투자플 상품에 예치했으며, MMF,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상품을 적극 활용

2012년 운용자금 현황 2012년 운용자금 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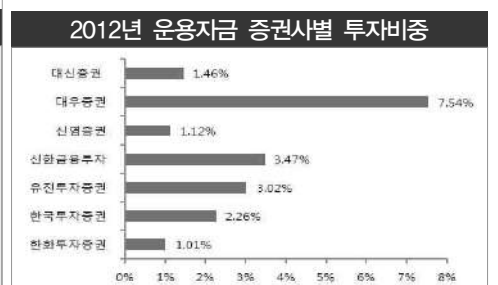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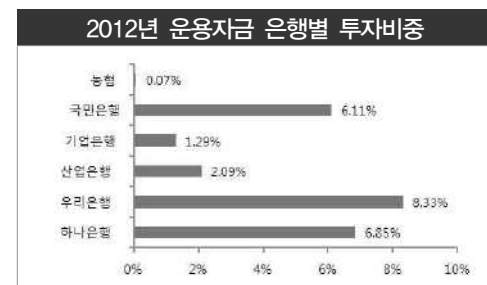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운용평잔	투자비중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93.27 3.90
	유동성자금	81.91 3.43
	단기 소계	175.18 7.33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	169.07 7.08
	채권형	1069.53 44.77
	주식형	666.97 27.92
	대체형	308.33 12.91
	중장기 소계	2,213.90 92.67
합계	2,398.08	100



2 2012년도 금융기관별 운용현황

구분	세부내용	상품종류	운용평잔(억원)	비중(%)
은행	농협	정기예금	1.57	0.07
	국민은행	MMDA, 정기예금	145.88	6.11
	기업은행	중금채	30.78	1.29
	산업은행	특금신탁	50.00	2.09
	우리은행	MMF, 정기예금, 특금신탁	199.07	8.33
	하나은행	특금신탁	163.61	6.85
증권사	대신증권	수익증권	34.87	1.46
	대우증권	수익증권	180.07	7.54
	신영증권	수익증권	26.81	1.12
	신한금융투자	뮤추얼펀드	82.79	3.47
	유진투자증권	일임형랩	72.16	3.02
	한국투자증권	특금신탁	54.00	2.26
	한화투자증권	수익증권	24.02	1.01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연기금투자플	1,323.47	55.40
합계			2,398.08	100.00





● 기준수익률 및 운용수익률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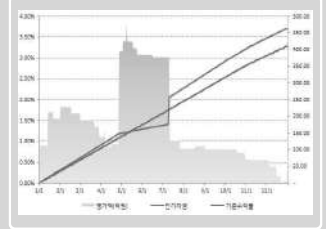
[표5. 기준수익률 및 운용수익률 계산]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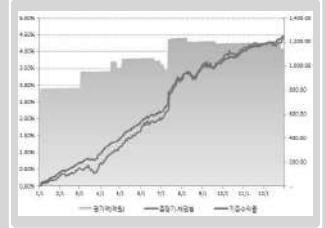
구분	운용자산 (상품)	기준 수익률(A)	운용 수익률(B)	차이 (A-B)	차이분석
현금성	MMF	3.16	3.28	-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성자금은 MMDA, MMF와 '연기금통합MMF 제2호' 로 운용 ■ 자금수지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유동성관리(유동성리스크 관리)로 현금성 계좌에 대한 자금유출입 빈도가 적어 계좌별 악영향을 정도의 수익달성
	MMDA	3.16	4.32	-1.16	
현금성 계		3.16	3.50	-0.34	
유동성	확정금리형	3.42	3.85	-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자금 중 확정금리형 상품의 기준수익률은 '정기예금 6개월~1년 가중평균 수신금리' 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해 두 차례(7월,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정기예금 1년 미만 수신 금리 또한 연초 3.70% 수준에서 연말에는 3.04%까지 하락함. 기금은 유동성자금을 금리조건이 양호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함에 따라 기준수익률보다 높은 성과 달성
단기자금 계①		3.28	3.70	-0.42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	3.71	4.19	-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예금자산의 기준수익률은 '정기예금 1년~2년 가중평균 수신금리' 로 연초 4.04% 수준이었으나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2012년 말 기준 3.36%까지 하락함 ■ 중장기자금 확정금리형으로 운용중인 상품들은 모두 2011년도 및 2012년 상반기에 가입한 상품들이므로 기준금리 인하 전 금리를 적용 받아 기준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
	채권형 ②	4.48	4.39	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자금 중 채권자산을 전액 연기금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기금통합채권 76호와 연기금통합신성장동력채권 1호를 각각 약 890억원, 255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음(2012년 말잔 기준). 두 상품 모두 기준수익률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함에 따라 기금의 채권자산 운용수익률은 기준수익률 대비 하회
	주식형 ③	10.56	13.38	-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자금 주식자산을 연기금투자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기금투자상품은 기준수익률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지만 뮤추얼펀드 상품과 파생형 수익증권의 상품의 매우 우수한 성과로 인하여 주식형 자산의 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높게 나타남
	대체형 ④	8.71	-39.12	47.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이 보유한 2개 상품(서대문 흥은동 아파트 개발사업,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2012년 말 각각 100%, 59.80% 상각함에 따라 대체형 자산의 전체 수익률이 -39.12%를 기록함 ■ 대체형자산이 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가량으로 기금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침
중장기자금 계⑤		7.14	0.46	6.68	
기금전체⑥		7.15	0.63	6.52	

※ 주식형 : 국내외 주식형, 주식혼합형, 파생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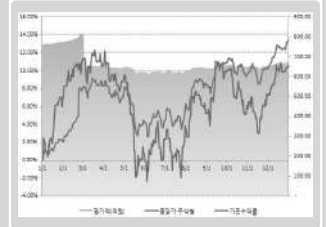
① 단기자금 운용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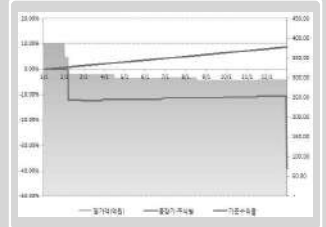
② 채권형 운용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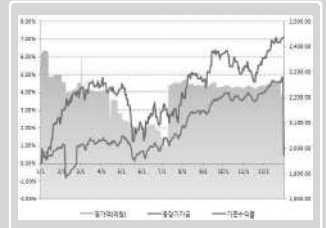
③ 주식형 운용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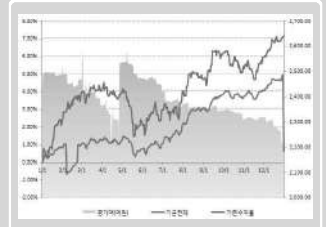
④ 대체형 운용성과 추이



⑤ 중장기자금 운용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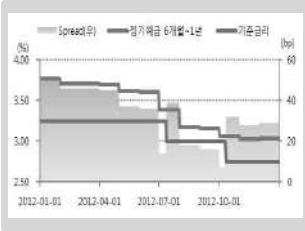
⑥ 기금전체 운용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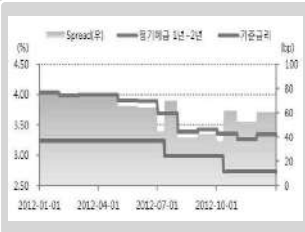
3-①-3

목표수익률과 운용자산별[또는 운용상품별] 운용평잔 기준 기금전체 운용수익률과의 차이 및 원인분석

1 2012년 단기 스프레드 추이



2 2012년 중장기 스프레드 추이



3 성과요인분해

(단위 : 연%)

구분	성과요인	기여율
전략적 자산배분	5.08	417.20
전술적 자산배분효과	1.50	123.52
종목선택효과	-5.36	-440.72
합계	1.22	100.00

4 전략적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을 정하는 의사결정

5 전술적자산배분(TAA)
(Tactical Asset Allocation)

시장의 변화방향을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자산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

자금융형별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성과

단기자금

- 단기자금의 운용수익률은 3.70%로 목표수익률인 3.85%보다 0.15%p 하회
- 연초에 목표수익률 산정 시 설정근거였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다소 높게 추정¹되었기 때문임. 실제 2012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평균은 각각 3.08%, 0.34%로 목표수익률이 실제보다 0.44%p 높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12년 실제 기준수익률 및 가산금리에 근거한 목표수익률은 3.41%로 단기자금은 0.29%p 초과 성과 달성

중장기자금

-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은 0.46%로 목표수익률인 3.76%보다 3.30%p 하회
- 대체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중장기 자산에서는 모두 목표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대체형자산의 연말 대손상각으로 인하여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은 목표수익률에 미달²

[유형별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성과]

(단위 : %, %p)

구분	목표수익률(A)	운용수익률(B)	차이(A-B)
단기자산	3.85	3.70	0.15
중장기자산	3.76	0.46	3.30
기금전체	3.76	0.63	3.13

자산배분 및 증권선택효과 분석 (성과요인분해)

성과요인분해³

- 전략적 자산배분효과⁴는 연초 자산배분계획을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얻게 된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5.08%로 나타났음
- 전술적 자산배분효과⁵는 연초 계획한 자산배분 비중과 다르게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얻게 된 초과수익을 의미하는데, 기금의 전술적 자산배분효과는 1.50%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자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중장기자금의 비중을 확대하여 운용한 것에 기인
- 종목선택효과는 자산군 내에서 성과가 좋은 상품을 선택하면 높은 값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금 전체의 종목선택효과는 -5.36%로 나타남. 이는 기준수익률보다 투자상품 수익률이 저조했음을 의미

[성과요인분해]

(단위 : 연%)

구분	자산배분(A)	기준수익률(B)	투자비중(C)	운용수익률(D)	전략적 자산배분(A*B)	전술적 자산배분효과	종목선택효과(D-B)*C	
단기자금	현금성	6.28	3.16	3.90	3.50	0.20	0.05	0.01
	유동성	10.63	3.42	3.43	3.85	0.36	0.12	0.01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	0.00	3.71	7.08	4.19	0.00	-0.10	0.03
	채권형	67.29	4.48	44.77	4.39	3.01	0.13	-0.04
	주식형	6.75	10.56	27.92	13.38	0.71	1.16	0.79
	대체형	9.05	8.71	12.91	-39.12	0.79	0.14	-6.17
기금전체	100.00	5.08	100.00	1.22	5.08	1.50	-5.36	



3-①-4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의 차이 및 원인분석 결과의 활용 근거자료

■ 성과평가 Feed-Back 프로세스

● 외부 성과평가가 분석결과를 외부 자문기구의 검토를 통하여 차기 자산운용에 활용

구분	내용	비고
연간 자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현황 및 분석 ■ 운용자금 현황분석 ■ 운용성과 및 위험분석 ■ 평가의견 및 정책제언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 실시
제도개선 및 개선권고 사항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차기 연간자금운용 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 ■ 목표수익률 설정 ■ 허용위험한도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 외부 성과평가 결과 활용

● 2011회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통한 정책제언 및 활용 내역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	개선노력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를 외부에 위탁함과 동시에 내부에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내부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운용관련 인프라의 취약성 극복을 위하여 기존 1인체제의 자산운용 전담인력 구조를 인력을 충원하여 정·부 체제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 으로 일원화 -자산운용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금투자물 비용-효익분석 실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효익분석 실시② -연기금투자물과 운용펀드의 보수 비교 분석 -연기금투자물과 운용펀드의 수익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유동성 산출 모델 변경 권고 -계획대비 순지출 오차가 아닌 월별 수치차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적정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과대계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유동성 산출 모델 변경 -과대 계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월별 계획 수치차 분석과 실제 수치차 간의 오차를 측정 -유동성 버퍼 산출시 과거의 실제치의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계획대비 실적의 수치차 분석을 통해 오차 부분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단/중장기 자산에 대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IPS에 설정하여 반영했으나, 목표수익률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익률 설정근거 수립 - (단기자산)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 α(가감금리)” 값을 단기자산의 목표수익률로 설정 - (중장기자산)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 α(가감금리)” 값에 기금의 특성을 대체투자 상각부분을 감안한 수치와 예상물가상승률 중 높은 값을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위험관리의 해소절차에 관한 자산운용지침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 및 대응조치 추가(자산운용지침 제20조) -자산운용지침 개정

① 외부평가기관 정책제언



② 연기금투자물 비용-효익 분석

■ 비용분석

[공모펀드 평균보수] (단위: bp)

상품유형	유동사	편매사	수탁사	사우	펀드	계
MMF	9.1	21.4	0.7	2.2	33.5	
채권형	23.1	39.3	0.9	3.3	66.7	
주식형	73.1	100.2	1.8	4.5	179.6	

[문예진흥기금 평균보수] (단위: bp)

상품유형	유동사	편매사	수탁사	사우	펀드	계
MMF	7.1	15.2	1.9	1.0	25.0	
채권형	19.1	22.7	2.3	1.5	39.0	
주식형	68.2	87.2	3.8	2.0	162.0	

■ 효익분석

[연기금투자물 수익률] (단위: %)

상품유형	2009	2010	2011	평균
MMF	2.99	2.75	3.31	3.02
채권형	3.65	5.80	4.21	4.58
주식형	57.05	24.38	-9.37	24.19

[문예진흥기금 수익률] (단위: %)

상품유형	2009	2010	2011	평균
MMF	2.88	2.71	2.85	2.82
채권형	5.58	0.20	2.23	2.66
주식형	31.71	10.21	-12.56	10.45

3 ② 위험대비 성과 및 원인분석

1 표준편차

$$\sigma^2 = \frac{\sum (R_i - \bar{R})^2}{n-1}$$

연평균 $\sigma^2 = \sigma^2 \cdot \sqrt{n}$
 Where \bar{R} : 펀드의 1년째 평균 초과수익
 \bar{R} : 평균 초과수익 평균

2 샤프비율

$$SR = \frac{\bar{R} - R_f}{\sigma}$$

Where \bar{R} : 평균 초과수익 평균
 R_f : 무위험수익률 (주인 초과수익률 평균)
 초과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로 CD(1)를 사용
 σ : 펀드의 평균 초과수익 표준편차

3 정보비율

$$IB = \frac{R - R_B}{\sigma_B}$$

Where \bar{R} : 펀드의 1년째 평균 초과수익
 R_B : 벤치마크 수익률 (주인 초과수익률 평균)
 σ_B : 벤치마크 초과수익의 표준편차

4 추적오차

$$\sigma_{TE} = \sqrt{\sigma^2 + \sigma_B^2}$$

Where σ^2 : 펀드의 1년째 평균 초과수익
 σ_B : 벤치마크 초과수익의 표준편차
 σ_{TE} : 펀드 초과수익률과 벤치마크 초과수익률과의 차이(추적오차)의 표준편차

5 변동성 측정



3-2-1

운용부문별 및 운용자산별[또는 운용상품별] 그리고 기금 전체 위험대비 성과평가[수익률 및 위험] 분석 자료

■ 운용자산 위험 및 위험조정수익률 산출/분석

● 위험조정 성과지표 산출

- 개별 운용상품의 52주간 수익률 데이터를 기초로 위험조정 성과지표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여 평가에 활용

위험지표	세부내용
표준편차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 ■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
샤프비율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의 위험 1단위에 대한 초과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얻은 대가, 즉 초과수익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 ■ 지수값이 높을수록 투자성과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측정 기간과 투자에 대한 동일 유형이어야만 비교의 의미가 있음
정보비율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수익의 변동성 한 단위당 평균초과수익 ■ 투자과정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을 측정해보는 의미를 지님 ■ 벤치마크와 동일한 시장위험을 취하면서도 개별 증권에 투자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과정이 매니저의 특별한 정보나 기술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 ■ IR이 높을 수록 우수한 지표로 평가됨.
트래킹에러④ (추적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킹에러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이에 대응하는 지수 수익률에 비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수)추적오차라고도 함 ■ 펀드의 기간수익률과 이에 대응하는 벤치마크 지표 수익률과의 차이에 대한 변동성을 의미

● 위험조정성과 분석

- 수익률의 변동성인 표준편차는 기금 전체 기준 4.75%로 기금의 수익률 변동은 BM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연말 상각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커진 대체형으로 인해 기금의 표준편차가 큰 값을 갖기 때문임⑤

[위험지표 및 위험조정성과지표]

구분		위험지표			위험조정성과지표			
		표준편차		추적오차	샤프비율		수정샤프	정보비율
		기금	BM					
중장기 자금	채권형	0.78%	0.52%	0.93%	1.30	2.04	1.30	-0.06
	주식형	5.86%	13.17%	12.20%	1.61	0.58	1.61	0.15
	대체형	34.16%		34.16%	-1.33		-4.25	-1.48
중장기자금 계		4.95%	3.94%	5.96%	-0.55	0.93	-0.04	-1.07
기금전체		4.75%	3.59%	5.65%	-0.54	1.02	-0.03	-1.10

- ※ 성과지표산출 시 일간수익률을 기초로 한 주간수익률을 사용
- ※ 샤프비율 산출 시 무위험수익률은 CD 91일물 수익률을 사용
- ※ 대체형의 BM은 확정금리형과 같은 고정 값으로 작성되므로 대체형 BM의 표준편차와 샤프지표는 유의적이지 않으므로 값을 생략

3 ③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공시

3-③-1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상세자료

■ 주기적 성과평가 활동 수행

● 성과평가 주기 및 수행주체

주기	주체	내용
일간	■ 자산운용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수탁사 및 펀드평가사의 지원시스템 통해 운용상품별 일일 기준가 점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 대비 평가수익률 비교평가 ■ 보유현황 및 매매현황 ■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
월간	■ 자산운용부서 ■ 위험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성과평가 전문기관으로 부터의 성과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점검^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시장 현황분석 - 월간 펀드별 성과평가 - 투자지침 및 위험한도 점검 -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반기/연간	■ 자산운용부서 ■ 위험관리부서 ■ 자산운용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성과평가 전문기관 보고서 작성^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현황분석 - 운용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 유동성 및 위험관리 평가 - 기준수익률 대비성과평가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점검

- 자산운용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성과평가 기관에 성과평가 업무 위탁 및 시스템 지원
 - 평가위탁 상품 평가수행 절차

구분	내용
운용계획서 수집	■ 기금이 자금을 위탁한 운용사에 대한 운용관련 제한사항을 수집
운용회사로부터 데이터수신	■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해당펀드의 기본정보, 매매정보와 보유종목정보를 매일 수신하여 펀드평가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라분석
컴플라이언스 점검	■ 운용기관 방문 및 실사를 통한 운용계획서 준수여부의 상시적 점검
운용성과 및 위험 평가	■ 외부 위양투자분에 대해 리스크 및 운용성과를 월간단위로 평가하여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 용역 기간 중 검토되거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간전체를 대상으로 외부위양투자분에 대한 리스크관리실태를 요약하여 보고

① 모니터링 시스템



② 월간 운용성과 보고서



③ 연간성과평가 보고서



3-3-2

운용사별 성과평가에 따른 자금배분 반영 기준 및 활용자료, 보상체계에 반영하는지 여부 및 그 적정성을 판단할 상세 자료

■ 운용기관 성과평가에 따른 자금배분 기준 및 실적

● 운용성과에 의한 자금배분 기준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BM초과 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기 : 매분기말 ■ 평가방법 : (㉓ × 50%) + (㉔ × 50%) ㉓ 평가일 기준 최근 2년 BM초과 수익률 ㉔ 평가일 기준 최근 1년 BM초과 수익률 ※ 단, 해당 기간 운용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일 이후 BM초과 수익률로 반영 ■ 평가대상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펀드 ※ 단, 동일 운용유형 내 평가대상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설정시기별 운용성과를 합산하여 평가 ※ "BM 초과수익률"은 측정기간 누적수익률을 사용하고,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운용사 평가등급 및 조치사항(자금위탁, 변경위탁, 자금회수 시 적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조치사항
S	■ BM을 상회하고, 평가순위 상위 20%	■ 추가위탁
A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21%~50%	
B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51%~100%	■ 위탁자금 유지
C	■ BM 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 위탁자금 50%이내 회수가능
D	■ 2분기 연속 BM 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 위탁자금 전액 회수가능

※ 자금위탁 및 자금회수는 분기별 평가등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시장상황,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이익실현, 위탁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조치 가능

- 위탁자산 평가등급 및 조치사항(수익률 저조펀드 관리)

평가항목	세부내용	조치사항
S	■ BM을 상회하고, 평가순위 상위 20%	
A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21%~50%	
B	■ BM을 상회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 51%~100%	
C	■ BM 하회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D	■ 2분기 연속 BM 하회	■ 운용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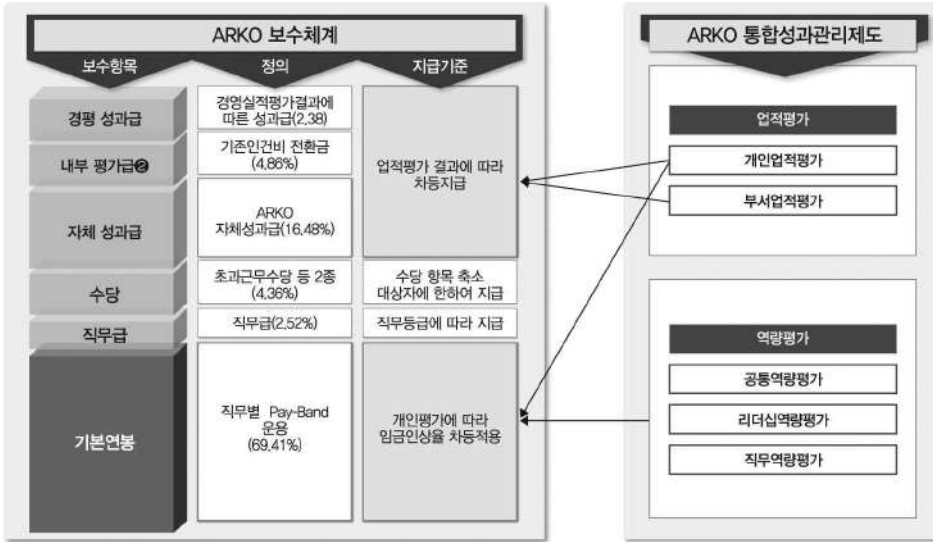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자금배분 실적

- 성과평가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배정은 2012년 연기금투자물 예치비중 확대계획에 따라 만기도래 상품 모두를 연기금투자물로 예치하여 추가배정 실적없음



■ 성과보상제도

- 보상체계와 연관된 통합성과관리제도 운영
 - 평가결과와 보상체계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기존 성과관리제도 조정/통합①



- 성과연봉제 도입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연봉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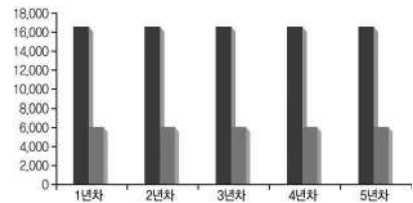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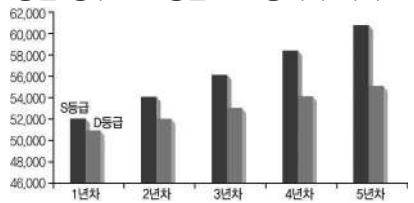
구분	기본연봉	성과연봉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업적평가 + 개인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인상 ■ 개인평가 중심의 기본연봉 결정으로 MBO방식의 개인업적평가제도와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업적평가 + 개인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 ■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초점을 둔 전략관점의 성과관리제도와 부합

구분	S A B C D					구분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원비율	10%	20%	40%
인상률	+1%	+0.5%	a	-0.5%	-1%	차등률	145%	125%	100%	78%	55%

■ 최대-최저 2% 차등인상(a는 임금인상률) ■ 최대-최저 264% 차등지급

■ 누적식 차등인상③으로 동일직급/동일연봉일 경우 S-D등급간 연봉격차 확대

■ 차등격차가 큰 성과연봉은 패지부활 방식의 비누적식으로 운영하여 연봉제 수용도 제고



전체연봉차등폭 3.4% 확대

구분	기존(2011년)	개선(2012년)																																									
차등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연봉 차등금액 평균 : 12,631천원 ■ 전체연봉 차등폭 평균 :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연봉 차등금액 평균 : 13,495천원 ■ 전체연봉 차등폭 평균 : 27.4%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7급</th> <th>6급</th> <th>5급</th> <th>4급</th> <th>3급</th> <th>2급</th> </tr> </thead> <tbody> <tr> <td>차등금액</td> <td>8,110</td> <td>9,491</td> <td>13,494</td> <td>13,765</td> <td>15,303</td> <td>15,620</td> </tr> <tr> <td>차등폭</td> <td>25.3%</td> <td>23%</td> <td>27.3%</td> <td>26.2%</td> <td>20.9%</td> <td>21%</td> </tr> </tbody> </table>	구분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차등금액	8,110	9,491	13,494	13,765	15,303	15,620	차등폭	25.3%	23%	27.3%	26.2%	20.9%	2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7급</th> <th>6급</th> <th>5급</th> <th>4급</th> <th>3급</th> <th>2급</th> </tr> </thead> <tbody> <tr> <td>차등금액</td> <td>8,883</td> <td>8,619</td> <td>14,387</td> <td>14,975</td> <td>16,268</td> <td>17,837</td> </tr> <tr> <td>차등폭</td> <td>27*</td> <td>27.6%</td> <td>31.6%</td> <td>29.3%</td> <td>25.3%</td> <td>23.3%</td> </tr> </tbody> </table>	구분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차등금액	8,883	8,619	14,387	14,975	16,268	17,837	차등폭	27*	27.6%	31.6%	29.3%	25.3%
구분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차등금액	8,110	9,491	13,494	13,765	15,303	15,620																																					
차등폭	25.3%	23%	27.3%	26.2%	20.9%	21%																																					
구분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차등금액	8,883	8,619	14,387	14,975	16,268	17,837																																					
차등폭	27*	27.6%	31.6%	29.3%	25.3%	23.3%																																					

① 성과관리제도 주요개선내용

- 기존(2011년)
- 업적평가:개인업적+부서업적
→ 자체성과급 차등지급에 활용
 - 역량평가:공통역량+리더십역량+직무역량
→ 기본연봉차등인상에 활용
 - 경영평가기여도평가:개인기여도+부서기여도
→ 경평성과급차등지급에 활용

- <문제점>
- 기여도평가의 평가기준 모호
 - 평가제도 이원화로 제도운영 비효율
 - 경영평가보고서 비작성자의 상대적 박탈감

개선(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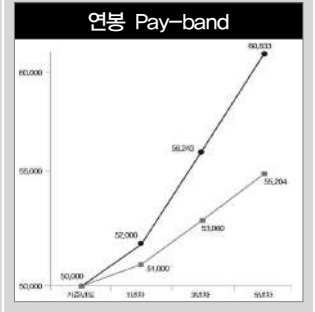
- 경영평가기여도평가 폐지
→ 업적평가결과로 경평성과급, 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 차등지급
- 외부평가지표를 각 부서에 할당하여 지표별 평가결과를 부서업적에 30%반영함으로써, 외부평가 연계성 강화

② 내부평가급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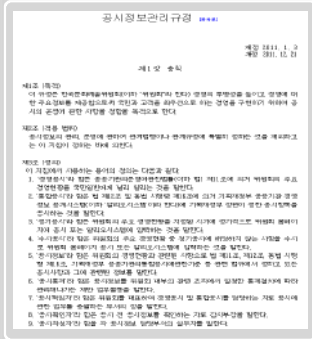
- 경영평가성과급 이외에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 2012년부터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에서 환원한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포함한 금액

③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인상 효과

- 동일직급/동일연봉일 경우 근속연수가 지날수록 최고/최저 등급간 연봉격차 지속적 확대



1 공시정보관리규정



2 재무정보 공시

종류	세부	공시	공시	공시	공시	공시
1	연간재무정보	필수	연간	연간	연간	연간
2	분기재무정보	필수	분기	분기	분기	분기
3	반기재무정보	필수	반기	반기	반기	반기
4	3개월재무정보	필수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5	연간재무정보	필수	연간	연간	연간	연간
6	분기재무정보	필수	분기	분기	분기	분기
7	반기재무정보	필수	반기	반기	반기	반기
8	3개월재무정보	필수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9	연간재무정보	필수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0	분기재무정보	필수	분기	분기	분기	분기
11	반기재무정보	필수	반기	반기	반기	반기
12	3개월재무정보	필수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 기금운용평가 결과 공시

4 기금(적립금) 조성현황 공시

5 예치현황 및 운용수익률 공시

3-3-3

주기적인 홈페이지 공시 화면 등 입증할 상세자료

성과평가 결과의 대내/외 공시

-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에 대한 주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여 홈페이지(http://www.arko.or.kr)에 주기적으로 공시
- 자산운용관련 주요 공시사항(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항목	세부항목	기준	갱신주기
I. 일반현황	■ 규정공개	■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계획 ■ 문예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지침	■ 수시
II. 경영현황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현황	-	■ 수시
III. 감사결과, 내/외부평가	■ 외부평가	■ 기금운용평가	■ 정기
IV. 예산, 재무, 기금현황	■ 재무제표	■ 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 ■ 결손금대차대조표	■ 정기
	■ 기금설치근거 및 기금조성	■ 설치근거 및 운용관리 ■ 기금조성재원 ■ 기금지원사업 및 활동 ■ 기금(적립금)조성현황	■ 정기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현황(문예진흥기금 예치현황) ■ 문예진흥기금 운용수익률·현황	■ 정기
	■ 금융기관선정기준	-	■ 정기

참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공시불이행	■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5점
	■ 공시사항 공시시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4점
	■ 공시사항 공시시한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3점
	■ 공시사항 공시시한일로부터 1주일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2점
	■ 공시사항 공시시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1점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항목별 과점	5점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공시작성부서에서 수정한 경우 수정 횟수당 과점	1점

지표명

3. 자산운용실적(성과)

가중치 : 50점



세부평가내용

평가내용 1. 단기자산 운용수익률과 적정유동성

- 단기자산 절대수익률
- 단기자산 상대수익률
- 현금성자금 보유도

평가내용 2. 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

- 중장기자산 과거 3년간 운용수익률(연율)
- 중장기자산 상대수익률

평가내용 3. 위험자산의 성과지표

- 위험자산 과거3년간 샤프비율

평가내용 4. 운용기관 및 상품집중도

- 운용기관 집중도
- 운용상품 집중도

평가내용 5. 수익률 개선노력도

- 수익률 개선 노력도

평가내용 6. 공공성 확보노력도

- 공공성 확보노력도



ARTISTREE

① 단기자산 운용수익률과 적정유동성 [35W]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지표값	배점
①-①	단기자산 절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자산 2년간 운용수익률 산술평균 (2012년도 운용수익률×0.6 + 2011년도 운용수익률×0.4) 	3.52	0.51
①-②	단기자산 상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자산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0.36	1.47
①-③	현금성자금 보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순지출의 표준편차 대비 월별 현금성자금 일평균 평균 (월별 현금성자금 일평균 평균) ÷ 월별 조정순지출의 연간 표준편차 	1.17	0.59

② 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 [35(1-W)]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지표값	배점
②-①	중장기자산 과거3년간 운용수익률(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자산의 과거 3년간 보유기간수익률의 기하평균(연율) 누적운용수익률(연율) = $\{(1+2012년\ 운용수익률) \times (1+2011년\ 운용수익률) \times (1+2010년\ 운용수익률)\}^{\frac{1}{3}} - 1$ 	0.14	9.27
②-②	중장기자산 상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자산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0.76	23.17

③ 위험자산의 성과지표 [5]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지표값	배점
③-①	위험자산 과거 3년간 샤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 과거 3년간 월평균 운용수익률 - 과거 3년간 월평균 무위험 수익률) ÷ 과거 3년간 수익률 표준편차 	-0.17	5

④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5]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지표값	배점
④-①	운용기관 집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산의 연중 일평균 기준 상위 3개 운용기관 집중도 운용기관 집중도 = $\{(규모\ 1위\ 금융기관의\ 비중)2 + (규모\ 2위\ 금융기관의\ 비중)2 + (규모\ 3위\ 금융기관의\ 비중)2\} / 100$ 	3.43	2
④-②	운용상품 집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자산 연중 일평균 기준 상위 3개 운용상품 집중도 운용상품 집중도 = $\{(규모\ 1위\ 운용상품의\ 비중)2 + (규모\ 2위\ 운용상품의\ 비중)2 + (규모\ 3위\ 운용상품의\ 비중)2\} / 100$ 	32.38	3

수 수익률 개선노력도 [3]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지표값	배점
수-①	수익률 개선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3개년 대비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노력도 개선노력도 = $20 + 80 \times \{(\text{전체자산절대수익률} - \text{최저목표}) / (\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0.62	3

⑥ 공공성 확보노력도 [2]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지표값	배점
⑥-①	공공성 확보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투자가능규모 대비 공공성 투자비중 공공성 확보노력도 = $\text{MIN}(0.2 + 90 \times \text{공공성투자규모} / \text{공공성투자가능규모}, 2)$ 	2	2



ARTISTREE

지표명

4. 조정

가감점 : -3~2



세부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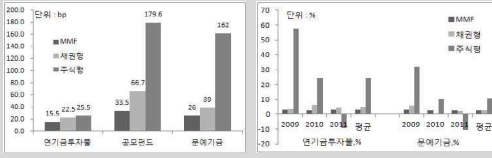
평가내용. 자산운용 개선노력과 성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 자산운용 비용절감 노력
 - 국가재정부담 완화 노력을 위한 자산운용 비용절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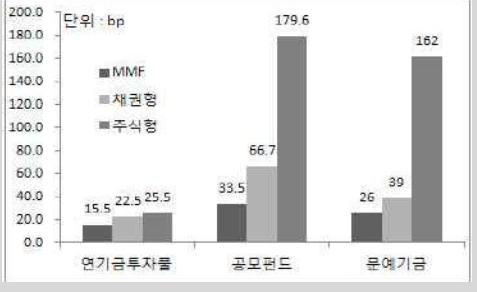


ARTISTREE

1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표6>

번호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노력	성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위탁 투자기관의 사후관리지침이 금융기관 선정지침에 사후관리체계를 담은 규정이 미비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을 통합 및 일원화함 -기존의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관리기준 포함 -운용성과 평가기준 및 등급을 포함하여 사후관리체계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투자자산 운용지침의 외부 위탁기관의 사후관리 기준을 통합하여 외부위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보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를 위한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평가를 외부에 위탁함과 동시에 내부에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내부인력 별도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 담당자와 자산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성과평가·위험관리 담당자 분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운용 및 외부 위탁기관 대비 연기금투자자의 비용-효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연기금투자자에 대한 투자이사 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향후 연기금투자자로 예치한다는 계획만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금투자자 비용-효익 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된 결과에 대해 자산운용 위원회에서 연기금투자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안건 상정 및 심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대비 순지출 오차가 아닌 월별 수치차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적정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과대계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계획 수치차 분석과 실제 수치차 간의 오차측정 -적정유동성 산출시 예측가능한 규칙적인 자금을 대한 부분과 불규칙 항목으로 나누어 예측가능한 자금을 파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유동성 버퍼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적정 유동성 산출 방식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대비 실적의 표준오차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유동성 버퍼 마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단/중장기 자산에 대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IPS에 설정하여 반영했으나, 목표 수익률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자산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가감금리" 값을 단기자산의 목표수익률로 설정 중장기자산 -시장전망을 반영한 "2012년도 예상 기준금리 +가감금리" 값에 기금의 특성을 대체투자 상각부분을 감안한 수치와 예상물가상승률 중 높은 값을 중장기 자산의 목표수익률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목표수익률 설정근거 마련으로 운용성과에 대한 성과요인분해 실시에 따른 환류 효과 증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위험관리의 해소절차에 관한 자산운용 지침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관리 및 대응조치 IPS에 추가 -위험에 대한 위기상황을 3단계(정상, 주의, 위협)로 구분하여 해결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에 대한 여부를 명시적인 "금액" 으로 표시하여 사전인지 용이

2 자산운용 비용절감 노력

번호	문제점	개선노력	성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상품의 다양성에 따른 보수체계의 비일관성으로 보수체계의 적정성 판단 논리 미흡 보수체계의 관리기준이 부재하여 실적배당상품의 수익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금투자자/공모펀드/기금의 수수료구조 분석을 통한 비용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진흥기금 평균보수현황(bp) <table border="1" data-bbox="1066 1675 1465 1787"> <thead> <tr> <th>상품 유형</th> <th>운용사</th> <th>판매사</th> <th>수탁사</th> <th>사무 관리사</th> <th>펀드 평가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MMF</td> <td>7.1</td> <td>15.2</td> <td>1.9</td> <td>1.0</td> <td>-</td> <td>26.0</td> </tr> <tr> <td>채권형</td> <td>19.1</td> <td>22.7</td> <td>2.3</td> <td>1.5</td> <td>1.0</td> <td>39.0</td> </tr> <tr> <td>주식형</td> <td>68.2</td> <td>87.2</td> <td>3.8</td> <td>2.0</td> <td>3.0</td> <td>162.0</td> </tr> </tbody> </table> 연기금투자자 보수구조(bp) <table border="1" data-bbox="1066 1832 1465 1944"> <thead> <tr> <th>상품 유형</th> <th>기간 운용사</th> <th>하위 운용사</th> <th>수탁사</th> <th>사무 관리사</th> <th>펀드 평가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MMF</td> <td></td> <td></td> <td>8</td> <td></td> <td></td> <td>15.45</td> </tr> <tr> <td>채권형</td> <td>6.5</td> <td>13</td> <td>0.3</td> <td>0.5</td> <td>0.35</td> <td>22.45</td> </tr> <tr> <td>주식형</td> <td></td> <td>16</td> <td></td> <td></td> <td></td> <td>25.45</td> </tr> </tbody> </table> -유형별로 11bp~137bp 수수료 절감효과에 따른 수익성 제고 	상품 유형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 관리사	펀드 평가사	계	MMF	7.1	15.2	1.9	1.0	-	26.0	채권형	19.1	22.7	2.3	1.5	1.0	39.0	주식형	68.2	87.2	3.8	2.0	3.0	162.0	상품 유형	기간 운용사	하위 운용사	수탁사	사무 관리사	펀드 평가사	계	MMF			8			15.45	채권형	6.5	13	0.3	0.5	0.35	22.45	주식형		16				25.45
상품 유형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 관리사	펀드 평가사	계																																																					
MMF	7.1	15.2	1.9	1.0	-	26.0																																																					
채권형	19.1	22.7	2.3	1.5	1.0	39.0																																																					
주식형	68.2	87.2	3.8	2.0	3.0	162.0																																																					
상품 유형	기간 운용사	하위 운용사	수탁사	사무 관리사	펀드 평가사	계																																																					
MMF			8			15.45																																																					
채권형	6.5	13	0.3	0.5	0.35	22.45																																																					
주식형		16				25.45																																																					



ARTISTREE



담당자 연락처

보고서 작성 책임 : 예술나눔부장 김재중 (02.760.4860) someday3@arko.or.kr

보고서 작성 담당 : 예술나눔부 정구빈 (02.760.4868) bin0505@arko.or.kr